법인소득과세의 이론과 현실
-국내외의 연구성과 개관-

2005. 8

곽 태 원

한국조세연구원

서 언

법인소득에 대한 과세는 자본소득과세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는 자본의 공급자에 대한 과세와 자본의 수요자에 대한 과세로 나눌 수 있는데 법인소득에 대한 과세는 자본 수요자에 대한 과세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법인소득에 대한 과세는 그것이 기업의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경제학자들과 정책입안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어왔고 실제로 정책수단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기도 하였다. 더구나 법인소득에 대한 과세가 다른 조세들보다 더 자원배분의 왜곡을 가져오는 조세라는 사실 때문에 조세 개혁의 대상으로서도 가장 빈번하게 거론되어온 조세였다. 또한 국가간 자본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개방경제하에서의 법인소득 과세의 영향과 이의 최적화에 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 연구는 1960년대 이래로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경제학 분야의 법인소득과세 관련 연구를 개관하고 이러한 연구들이 법인세의 개혁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여 자본소득관련 연구자들이나 정책입안자들에게 기초적인 자료로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졌다.

먼저 법인세의 의의와 경제적인 성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법인세의 변천과 재정에서의 역할을 개관하였다.

다음 법인세의 가장 기초적인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귀착과 초과부담에 관한 연구들을 개관하고 정리하였다. 이론적인 연구들을 먼저 살펴보고 다음 중요한 실증연구들의 결과를 요약하였다. 법인세의 귀착에 관한 연구는 법인세가 자본가의 세부담을 통하여 소득분배를 개선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통념

이 잘못된 것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초과부담에 관한 이론적 및 실증적 연구는 법인세가 다른 조세에 비해 특히 초과부담이 높은 비효율적인 세입수단임을 보여준다.

이어서 자본비용과 유효한계세율에 관한 연구를 개관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법인세가 경제활동에 실제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연구들이며 이 연구들을 통하여 법인세의 개편이나 정책적 이용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지침들이 개발되었다. 자본비용과 유효한계세율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의 재정학 분야에서 가장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진 분야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자본소득세의 개혁논의를 정리하였다. 이러한 논의들을 통해서 앞으로 자본소득세의 변화추이를 짐작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법인세의 장기적 개편방향에 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이 연구가 저자의 의도대로 자본소득에 관한 연구와 정책수립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는 서강대학교의 곽태원 교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저자는 초고를 읽고 유익한 의견을 제시해 준 한국조세연구원의 안종석 박사와 김진수 박사 그리고 중간보고 세미나에 참석해 주었던 연구위원들과 다른 경로를 통해 여러 가지로 유익한 논평을 하여준 재정학계의 여러 동료 학자들, 그리고 출판을 위해서 수고해준 여러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리고 있다.

끝으로 본서의 내용은 저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무관함을 밝혀둔다.

2005년 8월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최 용 선**

<요약 및 정책시사점>

1. 주요 내용 요약

1) 법인세의 의의와 우리나라 재정에서의 역할

법인세의 베이스는 법인부문의 자기자본에 대한 수익이다. 이것은 법인세가 대형세이면서도 베이스가 특정부문의 특정생산요소에 한정되는 부분요소세라는 특징을 나타낸다. 이것은 법인세가 자원배분을 왜곡하는 효과가 매우 클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법인세는 법인기업의 행태 특히 투자 및 자본조달행태에 매우 강력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런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법인세에 다양한 정책기능을 부여하여 사용하여 왔다. 특히 개발연대기간중에는 법인세 감면을 중요한 산업정책수단으로 사용하여 왔다. 법인세의 세율은 꾸준히 하향조정되어 왔으나 1980년대 이후로 법인세 감면의 산업정책적 기능이 축소되면서 법인세의 세수가 증가하여 전체 조세수입에서 법인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상승해 왔다.

2) 법인세의 귀착과 초과부담

법인세의 귀착에 관한 논쟁은 Harberger(1962)의 단순화된 일반균형모형 분석에 의해서 대체로 정리되었다. 이 논문은 현대경제학에서 조세귀착이론의 발전에 기여한 가장 중요한 논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 모형은 McLure와 Mieszkowski

등 여러 경제학자들의 후속연구에 의해서 더욱 발전되었고 뒤에는 Shoven과 Whalley 등의 CGE 모형을 이용한 일반균형 귀착분석의 초석이 되었다. CGE 모형에 의한 귀착분석을 엄밀하게 실증분석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모형을 이용한 연구들로 법인세의 귀착에 관한 보다 현실적인 이해를 갖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법인세의 귀착에 관한 논의에서 매우 중요한 주장은 자본의 국제적 이동성이 노동보다 높다는 점에 비추어 소규모 개방경제의 경우 자본에 대한 과세는 주로 토지나 노동 등 이동성이 낮은 생산요소로 전가될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자본이동이 얼마나 조세변동에 민감한가와 관련된 실증적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아직도 논쟁이 완결되었다고 할 수 없지만 자본이동의 제약이 점점 없어지는 상황에서 자본에 부과하는 조세가 다른 생산요소로 전가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은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받아들이고 있다.

법인세가 자원배분의 왜곡을 가져오는 이유는 다양하다. 부분요소세이기 때문에 생산요소시장에서의 왜곡을 가져오고 또 이자와 배당간의 법인세부담의 차이 등 때문에 기업의 재무행태를 왜곡시킨다. 나아가서 법인세에 의한 국가간 자본이동의 왜곡, 국경조정의 어려움, 저축행태의 왜곡 등은 또 다른 비효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법인세가 자원배분의 왜곡을 가져오는 다양한 원인들을 어렵지 않게 분석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크기가 어느 정도나 될 것인가는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이며 관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초과부담의 실증적 측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여를 한 연구자도 Harberger(1964a, 1964b, 1966)였다. 그는 선형화에 의한 근

사화(linear approximation)를 통해서 법인세의 초과부담 측정을 시도하였는데 이 방법으로 1953~59년의 미국법인세의 초과부담을 측정하여 그것이 법인세 수입의 약 2.4%에서 7.0%에 달한다는 추정결과를 제시하였다. Shoven and Whalley (1972)는 Harberger가 사용한 동일한 자료와 가정하에서 일반균형모형을 풀어 초과부담을 구한 결과 초과부담이 2.2%에서 11.7%에 달한다는 추정결과를 얻었다. 최근에 Jorgenson and Yun(1993)은 1986년 세법개정 직전의 미국 세제와 개정 후 세제의 초과부담을 전체적으로 그리고 주요 세목별로 계산하였는데 법인세를 보면 1985년 당시의 세법으로 한계초과부담이 세수의 84.2%였으나, 1986년 세법개정 후에는 44.8%로 크게 낮아진 것으로 추정되었다.

법인세의 귀착과 초과부담 등에 관한 국내에서의 괄목할 만한 이론적·실증적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3) 자본비용과 한계유효세율

Jorgenson(1963)의 신고전파 투자모형에 관한 연구에서 법인세관련 정책이 기업의 투자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틀이 제시되었다. 이 연구 이후로 소위 자본사용자비용의 개념이 법인세 관련 연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어서 개인에 부과되는 자본소득세 즉 배당소득세와 자본이득세 등을 함께 포함시켜서 기업의 자본비용을 분석한 연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Stiglitz(1973, 1976), King(1974), Miller(1977), Auerbach(1979a, 1979b)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특히 Auerbach(1979b)는 오늘날의 자본비용모형과 그 분

석방법의 초석이 되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개인소득세까지 포함할 경우 자본비용은 자금조달의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Stiglitz(1973)는 한계적인 자금조달의 원천은 차입이라고 주장한 반면 King(1974)이나 Auerbach(1979a, b) 등은 기업들의 한계적인 자금도달원천이 반드시 차입에 한정되지 않게 되는 현실적·이론적 근거들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자본비용모형은 기업의 투자행태와 자본조달행태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수단과 동기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자본비용모형에서 바로 한계유효세율을 도출할 수 있다. 이 개념은 법인세감면정책의 효과를 보다 분명하게 보여주며 특히 국제간 비교를 매우 편리하게 한다. Jorgenson and Sullivan(1981)은 Jorgenson(1963)의 자본비용에서 유효한계법인세율을 도출하였다. 이어서 King and Fullerton(1984)은 법인세뿐 아니라 개인소득세와 자산세 등 자본에 부과되는 모든 세목을 포괄하는 자본소득에 대한 유효한계세율을 측정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고 이것을 이용하여 주요국의 법인세 정책을 비교분석한 바 있다. King and Fullerton(1984)은 자본소득에 관한 한계유효세율 추정에 관한 후속연구의 기본모형이 되고 있다.

자본비용이나 유효세율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 되는 자료가 바로 자산의 경제적 감가상각속도에 관한 정보이다. 이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해 준 연구가 Hulten and Wykoff(1981)이다.

앞에서 언급한 Jorgenson and Sullivan(1981)은 1953~1979년간의 미국의 한계유효법인세율을 자산별, 주요 산업별로 측정하였고 King and Fullerton(1984)은 미국, 영국, 독

일 그리고 스웨덴 등 4개국의 연구자들과 함께 1980년의 이들 국가의 유효한계자본소득세율을 자산별, 산업별, 자금조달원천별 그리고 소유자별로 측정하였다. Jorgenson and Landau (1993)는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스웨덴, 영국, 미국 등 9개국 경제학자들이 King and Fullerton (1984)의 연구를 확장하고 업데이트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곽태원(1985)이 Jorgenson and Sullivan (1981)의 방법으로 1960년에서 1983년까지의 한계유효법인세율을 추정하여 1960~70년대의 법인세 정책을 분석한 바 있고 그 뒤에는 King and Fullerton(1984)의 방식으로 윤건영・임주영(1993), 원윤희(1996), 윤건영・김종웅(1997), 원윤희・현진권(2000), 나성린・안종범・원윤희(2004) 등의 한계유효세율관련 연구가 이루어졌다.

4) 법인기업의 재원조달과 투자

자본소득세와 기업의 재무행태에 관한 현대적 연구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는 Modigliani and Miller(1958)이다. 그 뒤에 Miller and Modigliani(1963), Stiglitz(1973), King(1974, 1977), Miller(1977), Auerbach(1983, 2002) 등에 의한 본격적인 연구가 뒤따른다.

먼저 기업의 외부 차입행태와 관련하여, 기업의 최적부채비율의 조건은 부채조달과 자기자본조달의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세의 비용만 생각한다면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조세제도에 따라 거의 모든 경우에 자기자본이든 차입이든 어느 한 쪽이 유리하게 되어 극단적인 선택이 일어날 것이다. 예를 들면 Stiglitz(1973)는 현 제도하에서는 한계적 투자자금 조달은 100% 차입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

하였다. 그러나 한계자금이 전적으로 부채로 조달된다는 주장은 현실적인 여러 증거들에 의해서 부정되는데 이것은 중요한 비조세적 비용의 존재를 시사한다. 파산비용이라든가 정보의 비대칭 등에 의해서 이러한 현상이 설명되었다.

한편 개인소득세율이 개인의 소득수준이나 개인의 신분(면세대상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최적조건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거나(Miller 균형) 이익의 부족 등으로 이자율의 비용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최적재무구조가 100%부채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기업의 자기자금 조달과 관련하여, 주어진 자본소득세 정책하에서 기업의 한계자기자금원이 신주발행인가 아니면 사내유보인가에 따라 전통적인 견해와 새로운 견해로 나누어진다. 기업의 실제 행태는 세제 이외의 다른 제약 등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대체로 투자 자금의 수요가 많은 기업들은 신주발행에 의존할 확률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법인세가 기업의 투자에 주는 영향을 이론적·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한 연구는 Jorgenson(1963)의 신고전파 투자이론이다. 1960년대에는 이 모형에 근거한 많은 실증연구들이 이루어졌고 법인세 감면을 투자 유인으로 사용하는 정책들의 유효성이 주장되었다. 그러나 이 모형은 (1) 가속도 모형 신봉자들의 비판 (2) 조정비용의 ad hoc한 처리방법에 관한 비판 그리고 (3) 개인소득세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시도는 Summers(1981)의 조세조정 q모형에 의한 실증적 투자함수 추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단순한 신고전파 모형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들어서 투자행위의 구조적인

관계를 실제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좀 더 효과적으로 찾아내려는 시도였다고 말할 수 있다. Summers 이래로 비슷한 모형을 이용한 실증적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으나 추정된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최근 1986년의 세제개혁을 변수로 이용하여 비교적 좋은 추정치를 얻었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인세 변수들이 기업의 재무구조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실증적 연구들이 이루어진 바 있으나 기업의 배당행태(자기자금조달행태)나 투자행태에 관한 실증연구에서 조세변수들이 체계적으로 사용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5) 법인세의 미래

법인세의 개편과 관련하여 논의된 주요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아주 오래되고 근본적인 쟁점은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에 관한 것이다. 또 하나의 쟁점은 법인세 제도 안에 장치된 여러 가지 유인정책의 유효성과 효율성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의 쟁점은 세계경제의 글로벌리제이션과 관련되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자본소득과세 전반에 관한 것이다. 개별국가의 입장에서 자국의 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한 최적 자본소득과세가 무엇인가에 관한 논의와 다국적기업의 탈세나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은 무엇인가 등에 관한 논의 그리고 국가간의 유해한 조세경쟁의 방지와 조세조화에 관한 논의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특히 첫 번째와 세 번째의 쟁점은 법인세의 구조적 개혁에 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법인세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혁논의를 요약하였다.

먼저 법인세와 소득세의 통합에 관련된 논의와 각국의 동향을 개관하였다. 이어서 Cash-Flow 법인세, CBIT(comprehensive business income tax), DIT(dual income tax) 그리고 ACE (allowance for corporate equity)제도 등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이러한 개혁논의의 경향은 법인세의 자본배분 및 재무행태상의 왜곡을 제거하려는 노력과 국제간 자본이동이 활발해지는 데 따르는 조세에 의한 자본유치경쟁과 다국적기업 과세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 등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정책시사점

이 연구는 정책분석에 초점을 둔 연구는 아니기 때문에 연구 자체에서 정책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다만 법인세의 본질을 이해함으로써 법인세 정책의 합리적 방향과 장기적 개편의 시사점은 강하게 부각되었다고 생각된다.

무엇보다도 법인세가 자원배분의 왜곡이 매우 큰 조세이기 때문에 법인세의 세율을 높여서 세수를 확보하려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고 또한 법인세를 통해서 소득분배의 형평을 도모하려는 시도도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판단된다. 특히 법인세의 귀착이론에서 소규모 개방경제의 자본소득세는 자본공급자에게 귀착되지 않고 노동 등 이동성이 낮은 생산요소 공급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사실은 법인세가 효과적인 소득 재분배 수단이 될 수 없음을 잘 보여준다.

선진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인세의 장기적 개편논의는 사실상 법인세의 구조를 거의 완전하게 바꾸어 사실상 법인세를 없애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중장기적으로 법인세는 사실상 퇴출되고 그 자리를 좀 더 일반적인 조세라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종류가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목 차

Ⅰ. 서 론 ····· 19

Ⅱ. 법인세의 의의와 우리나라 재정에서의 역할 ····· 21
1. 법인소득과세의 의의와 성격 ····· 21
가. 자본소득세로서의 법인세 ····· 21
나. 법인소득과세의 연혁 ····· 23
다. 법인소득 과세의 근거 ····· 24
라. 법인세의 성격과 과세베이스 ····· 29
마. 법인소득 과세의 의의 ····· 31
2. 우리나라에서의 법인세의 주요 제도 변화 ····· 33
가. 도 입 ····· 33
나. 세율 변동 ····· 34
다. 감가상각과 자산재평가제도 ····· 36
라. 각종 조세감면과 최저한세제도 ····· 38
마. 기업 재무행태와 관련된 조세제도 ····· 39
3. 우리나라 재정에서 법인세의 역할 ····· 40
가. 재정재원조달 ····· 41
나. 조세유인기능 ····· 43

Ⅲ. 법인세의 귀착과 초과부담 ····· 44
1. 법인세의 귀착 ····· 44
가. 고전적 견해 ····· 44
나. Harberger의 일반균형 모형 ····· 45
다. 실증적 분석 ····· 47

라. 이론모형의 확장 ····· 49
마. CGE 모형을 이용한 귀착분석 ····· 50
바. 최근 논의의 동향 ····· 51
사. 누진법인세와 소득분배 ····· 52
3. 법인세의 초과부담 ····· 53
가. 법인세와 초과부담의 문제 ····· 53
나. 법인세에 의한 비효율의 주요 요인 ····· 54
다. 초과부담의 실증적 측정 ····· 60
4. 법인세의 귀착과 초과부담에 관한 우리나라에서의 연구 ····· 63

Ⅳ. 자본비용과 유효한계세율: 법인세와 경제활동 ····· 66
1. 자본비용과 유효한계세율 ····· 66
가. 자본사용자비용과 자본비용 ····· 66
나. 유효세율 ····· 73
다. 실증분석 ····· 78
라. 우리나라에서의 연구 ····· 81
2. 법인세와 기업의 재무행태 ····· 84
가. 자본소득세와 기업의 재무행태 ····· 84
나. 기업의 자기자본조달 정책 ····· 85
다. 차입정책 ····· 90
라. 실증분석 ····· 93
마. 우리나라에서의 연구 ····· 95
3. 법인세와 투자 ····· 97
가. Jorgenson의 신고전파 투자이론 ····· 97
나. q이론을 이용한 투자분석 ····· 99
다. 실증분석 ····· 101

라. 우리나라에서의 연구 ····· 103

Ⅴ. 법인세의 미래 ····· 106
1. 법인세 정책의 주요 쟁점과 근본적 개편논의 ····· 106
2. 법인세와 소득세의 통합 ····· 108
가. 이중과세 조정 필요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 ····· 108
나. 법인세와 소득세 통합 논의의 연혁 ····· 112
다. 통합의 방법 ····· 112
라. 각국의 통합 현황과 문제점 ····· 118
3. 법인세의 구조적 개편에 관한 논의 ····· 122
가. Cash Flow 법인세 ····· 122
나. 포괄적 법인세(CBIT: Comprehensive Business Income Tax) ····· 125
다. DIT(Dual Income Tax) ····· 127
라. ACE(allowance for corporate equity) 제도 ····· 129
4. 우리나라에서의 개편논의와 외국 경험의 시사점 ····· 132
가. 개관 ····· 132
나. 법인세의 구조적 개편에 관한 논의 ····· 133
다. 우리나라 법인세제 개편에 관한 외국경험의 시사점 ·· 134

Ⅵ. 맺음말 ····· 136

참고문헌 ····· 138

표 목 차

<표 Ⅱ-1> 우리나라 법인세율의 변천 ····· 35
<표 Ⅱ-2> 법인세 수입의 상대적 중요성 ····· 41
<표 Ⅱ-3> 총세수입에서 법인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의 국제비교 ····· 42
<표 Ⅳ-1> 자본소득에 대한 한계유효세율의 국제비교 ····· 80
<표 Ⅳ-2> 총한계유효세율 ····· 83
<표 Ⅳ-3> 우리나라와 주요 외국의 한계유효세율 ····· 84
<표 Ⅳ-4> 기존 실증분석 결과비교 ····· 96
<표 Ⅴ-1> 임퓨테이션 방식의 적용례 ····· 115
<표 Ⅴ-2> EU 국가들의 법인세-소득세 통합 현황 (1996년 현재) ····· 119
<표 Ⅴ-3> 법인기업의 자금 운용표 ····· 123
<표 Ⅴ-4> 전통적 법인세와 CBIT하의 세부담 비교 ····· 126

그 림 목 차

[그림 Ⅱ-1] 자본시장과 자본소득세 ····· 22
[그림 Ⅲ-1] Harberger 모형에서의 법인세의 효과 ····· 56
[그림 Ⅳ-1] 자본비용과 자기자본조달정책 ····· 90

Ⅰ. 서 론

법인소득에 대한 과세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가장 논란이 많은 세목 중 하나이며, 근본적인 개편논의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세목이다. 급격한 세계화로 모든 국가들은 이전과 다른 격심한 경쟁에 노출되었으며,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투자활성화를 통한 자국경제의 활성화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대부분의 국가에서 최우선의 정책과제로 부상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정책수단의 하나로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정책의 개편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단기적인 경제의 회복뿐 아니라 중장기적 시각에서의 성장잠재력 확충과 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도모하여야 한다는 시각에서 법인세 개편에 관한 논의가 꾸준하게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법인세 정책에 관한 방향이 확실하게 설정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법인소득의 과세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는 그동안 축적된 대단히 풍부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에서 지난 반세기 동안 이루어진 법인소득과세와 관련된 이론적 및 실증적 연구성과들을 고찰하고 정리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법인세 관련 연구와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나아가서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중장기적 시각에서 우리나라 법인세제 개편의 방향과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제Ⅱ장에서는 법인세의 의의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법인세 제도를 개관한다. 먼저 자본소득세로서의 법인세의 의의를 정리하고 우리나라에서의 법인세 도입과 주요 제도의 변화 그리고 법

인세제도가 담당해 왔던 경제적·재정적 역할을 개관한다. 통계적으로 우리나라 재정에서 법인세가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살펴보고 주요 선진국의 경우와 비교한다.

제Ⅲ장에서는 법인세의 기초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초과부담과 귀착에 대해서 살펴본다. 먼저 이론적 연구들을 고찰하고 실증적인 연구결과들을 정리한다.

제Ⅳ장에서는 자본비용과 유효한계세율에 관한 연구성과들을 고찰하고 정리한다. 법인소득세를 중심으로 하는 자본소득과세에 관한 연구 중 가장 활발했던 분야가 유효한계세율과 이러한 조세들로 말미암은 자본비용효과에 관한 연구였다. 당연히 매우 풍부한 이론적 및 실증적 연구문헌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자본비용과 유효한계세율의 문제는 법인소득과세가 경제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이 장에서 함께 다룬다. 이 연구에서는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가 기업의 투자와 자본조달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연구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그 밖에 위험부담행위, 저축행위, 그리고 국제간 자본이동 등에 대한 연구들과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서베이는 다른 기회로 미루기로 한다[1].

제Ⅴ장에서는 법인세의 근본적 개편과 관련된 논의를 검토한다. 특히 법인세 개편의 장기적 과제라고 할 수 있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통합 등 구조적 개편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이 장에서는 특히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자본소득세의 구조적 개편안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논의들이 주는 우리나라 법인세 개편에 대한 시사점들을 찾아본다.

마지막으로 제Ⅵ장에 간단한 맺음말을 붙인다.

---

1) 국제간 자본이동에 관한 연구들에 대해서는 전주성(2005)에서 상세하게 논의되고 있고 법인세와 성장에 관한 연구들은 김진수·박형수·안종석(2003)에서 일부 논의되고 있다.

Ⅱ. 법인세의 의의와 우리나라 재정에서의 역할

1. 법인소득과세의 의의와 성격

가. 자본소득세로서의 법인세

법인세를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은 법인세를 자본소득세의 한 부분이라고 보는 것이다. 법인세는 요소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점에서 소득세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요소소득 중에도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이론적인 분석에서 흔히 거론되는 자본소득세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된다. 자본소득의 원천은 자본을 이용한 생산활동이다. 이러한 생산활동의 주역은 현대 자본주의 경제하에서는 법인기업이기 때문에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는 바로 자본소득의 원천에 대한 과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룬다. 그러나 기업은 소득의 최종적 분배대상이 아니다. 기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은 다시 가계로 분배된다. 엄밀한 의미에서 자본소득이란 바로 자본요소의 소유자에게 최종적으로 분배되는 소득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가계로 분배(지급 또는 귀속)되는 자본소득을 진정한 의미의 자본소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법인기업활동에서 벌어들인 자본소득이 가계로 분배되는 대표적인 경로는 이자, 배당 그리고 자본이득 등이며 이러한 분배단계에서 가계에 부과되는 소득세를 자본소득세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가계가 받는 개인소득세전의 자본소득은 이미 법인세제도를 통과한 것이기 때문에 법인단계에서 부담한 자본

소득에 대한 조세도 결국은 개인에게 귀착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자본소득세를 말할 때는 법인세와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그리고 주식 등에 대한 자본이득세 등을 함께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나아가서 실물자본의 보유와 관련된 조세, 예컨대 재산세나 취득세, 등록세 혹은 부유세 등도 자본소득에서 부담되는 것으로 말할 수 있고 따라서 자본소득세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요컨대, 법인세는 자본소득 원천에 대한 가장 중요한 세금이라고 말할 수 있고 자본소득의 분배단계에서 개인에게 부과되는 몇 가지 유형의 개인소득세와 함께 자본소득세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자본시장에서 자본의 수요자에 대한 세금이 법인세이고 자본의 공급자에 대한 세금이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자본이득세 등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간단한 부분균형 모형을 이용하여 자본소득세의 영향을 살펴보면 [그림 Ⅱ-1]과 같다.

[그림 Ⅱ-1] 자본시장과 자본소득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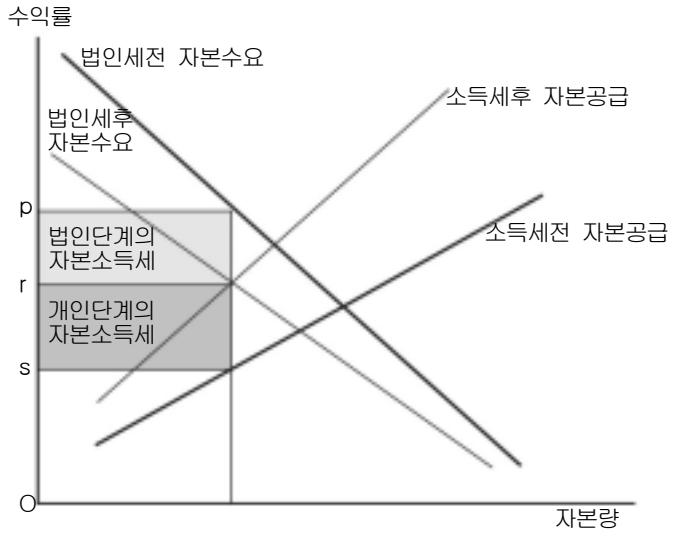

이 그림에서 p는 법인부문의 세전 자본수익률을 나타내며 s는 개인투자자의 세후 자본수익률을 나타낸다. r은 시장균형 이자율이라고 할 수 있고 전체 자본소득세부담을 법인단계 자본소득세와 개인단계 자본소득세로 그림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자본소득세에 포함시킬 수 있는 자산보유세는 법인부문이 보유한 고정자산 등에 부과되는 재산세처럼 법인단계에 속하는 것과 일부 국가에서 주식의 보유에 부과되는 순자산세처럼 개인단계의 자본소득세로 간주할 수 있는 것들로 나눌 수 있다.

나. 법인소득과세의 연혁

법인기업이 국가재정에 기여하기 시작한 것은 거의 법인기업 제도의 탄생과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법인기업의 소득에 대해서 직접 소득세가 과세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근래의 일이다.

법인에 대한 과세는 역사적으로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법인의 생성 역사가 길지 않기 때문에 다른 조세에 비해서 긴 역사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18~19세기 산업의 발달 및 법인기업의 성장 등에 따라 법인기업의 재산이나 소득, 자본, 배당, 부채 등 다양한 지표를 과세대상으로 삼아 이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하였다[2].

그러다가 점차로 당기순이익을 중심으로 과세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에서는 1895년에 소득세가 위헌판결을 받아 폐지된 후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뒤에 과도한 관세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 관

2) Seligman의 19세기중 미국의 법인에 대한 과세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이 기간중 미국의 각 주는 법인에 대해 13가지의 다른 방법으로 과세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는 재산, 자본, 부채, 배당, 조수입, 순이익 등을 어떻게 평가하고 또 어떠한 조합으로 과세하는가에 따라 1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Seligman(1931) pp. 218~220.

세를 낮추는 대신 소득세를 다시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좌절되었다. 이러한 때에 개인소득세의 대안으로 도입된 것이 법인소득에 대해 4%의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1909년에 법인소득세 도입에 성공한 Taft 대통령은 뒤이어서 개헌을 추진하는 데 성공하여 1913에는 누진소득세까지 도입하게 되었다[3]. 영국에서는 1947년에 처음 법인소득세가 도입되었고[4], 프랑스에서는 1948년에 도입되었다[5].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제치하인 1916년에 법인소득에 대해 과세하기 시작하였고, 1934년 일반소득세의 도입과 함께 법인소득은 제1종 소득으로 분류되어 일반소득세의 틀 안에서 과세되다가, 건국 후 1949년에 제정된 법인세법에 의해서 법인세로 과세되기 시작하였다.

다. 법인소득과세의 근거[6]

그러나 법인세의 성격이나 과세근거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어 왔다. 처음에는 법인도 법적으로 하나의 인격을 갖는 실체이기 때문에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생각에서 소득세나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 자연스럽게 포함되었던 것 같다. 물론 법인에 대한 과세가 반드시 이러한 법리적 논거에서만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법인의 소득이란 결국 개인에게 귀속될 것이며 개인에게 이러한 소득이 귀속될 때 다시 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면 법인세가 별도로 존재해야 할 근거는 매우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

3) Webber and Wildavsky(1986), pp. 420~421
4) Kay and King(3rd ed. 1983), p. 162.
5) Webber and Wildavsky(1986), p. 548.
6) 이하의 논의는 주로 Musgrave and Musgrave(1976) pp. 291~295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따라서 법인세의 존립근거에 대한 몇 가지 견해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법인세를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1) 통합주의자(integrationist)의 관점

오늘날의 대표적인 견해는 법인세는 별도로 존재할 근거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법인은 법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닌 것으로 본다. 법인은 그 자체가 주주의 이익을 구현하는 하나의 도관(conduit)에 불과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법인은 실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의제(擬制)라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법인에 별도의 과세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이러한 관점을 갖는 사람들의 결론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법인세가 전혀 불필요한 세금이며 당장 없애야 한다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현재의 법인세는 개인소득세를 보완하는 기능을 갖는다. 법인세가 없이 개인소득세만 부과할 경우 사내유보분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법인세는 유보소득을 과세하는 기능이 있다. 물론 자본이득이 완전히 과세된다면 이러한 우려는 불필요하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관점을 지지하는데 이들은 법인세의 궁극적인 발전방향으로 사실상 법인세를 없애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완전통합을 주장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제도가 어떤 완전한 경제적 논리에만 근거를 두고 존립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불합리한 제도라고 해도 그것이 어떤 이유로 일단 존립하게 된 뒤에는 그 제도의 폐지가 어려워진다. 어떤 경우에라도 경제논리 이외의 다른 많은 변수들을 함께 고려한 뒤에 결정되어야 할 문제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2) 절대주의자의 입장

고전적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절대주의자들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법인은 현실적으로 단순한 도관이 아니다. 소유가 잘 분산된 법인은 주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전문경영인들에 의해서 운영되며 경제적·사회적 의사결정에 있어서 강력한 인자가 되는 법적인 실체요,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법인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므로 주주단계가 아니고 법인단계에서 그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고 통제하는 정책이 필요한데 법인세가 그 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법인세를 별도로 존립시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특히 1950년대 이전에는 법인소득에 대한 과세가 법인기업의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라는 생각에서 그러한 세금은 자원의 배분을 왜곡하지 않아 효율적이며 또 독점이윤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공평하다는 생각을 했던 경제학자들도 상당히 있었던 것 같다[7].

이런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법인이 그 스스로 담세능력을 갖고 있다는 주장은 무리한 견해이다. 또 법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 때문에 법인을 정부가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해도 그 수단이 반드시 법인세여야 한다는 주장은 반드시 옳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법인소득세의 과세베이스인 당기순이익은 법인기업의 경제적 이윤과 특수한 경우 외에는 일치하지 않는다.

3) 수익과세론자들의 주장

위의 두 입장은 법인의 담세력과 관련된 견해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편익의 원칙을 기준으로 하여 보면 소위 수익과세론자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생길 수 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7) Musgrave(1959), pp. 276~282 참조.

법인은 사회로부터 특별한 혜택을 누린다. 특히 유한책임제도는 최소한의 위험부담하에서 대규모의 사업추구를 가능케 하여 주주들에게 커다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법인세는 이러한 혜택에 대한 '사용료 부과'의 의미를 갖는다.

법인이 유한책임제도로부터 커다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의 법인세 구조는 수익원칙을 따른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유한책임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은 거의 없다. 수익세란 비용을 편익에 따라 나누어 부담하는 것인데 비용이 없다면 수익세는 성립하기 어렵다. 다른 기업서비스에 대한 수익세라면 그것은 지방세여야 할지 모른다. 지방정부가 더 많은 기업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베이스도 이윤일 필요는 없다. 오히려 부가가치 같은 것이 더 알맞은 수익의 지표일 수 있다. 또 법인조직을 갖지 않은 기업이 누리는 편익에도 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서비스의 코스트 역시 그리 크지는 않을 것이다.

요컨대 수익과세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현행의 법인세 이외의 다른 형태의 과세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여러 가지 정책목적을 위해서 부과되는 조세라는 견해

법인세는 여러 가지 정책목적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법인세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를 들어, 법인세가 독점규제의 수단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법인세의 과세베이스가 독점이윤을 포함하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독점이윤과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볼 때 법인세를 높인다고 해서 독점이 억제될 것이라고 볼 근거는 매우 취약하다.

법인세는 기업의 지나친 대규모화를 방지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믿어지기도 한다[8]. 그러나 이것이 주목적이라면 법인세는 누진세여야 하며 그 베이스는 이윤이 아닌 다른 규모 지표, 예컨대 매출액 기준 등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윤에 대한 누진세는 효율적 경영에 대한 과세일 수 있다. 거대기업이 방만하게 경영되는 경우 세제는 이들을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경영되는 중견기업에는 벌을 주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초과이득에 대한 과세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전시, 석유파동시 등 특수한 상황에서 특정기업이 지나친 이익을 얻었을 때 이를 흡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법인세가 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윤은 특정한 기업이나 산업에 속한 것이며 반드시 법인조직이 아닌 기업도 이러한 이득을 얻었을 수 있다. 따라서 초과이득의 과세가 주목적이라면 법인만을 과세하는 세목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더 일반적일 것이다.

배당 또는 사내유보의 촉진수단으로 법인세를 활용할 수 있다. 또 특정산업이나 활동(기술개발 등)을 조장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법인세에 장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법인세를 만들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요컨대, 이상의 모든 정책목적은 법인세제를 이용하여 상당히 추구될 수 있으나 그것들로 법인세의 존재이유를 설명하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

---

8) 독점은 상대적 크기와 관련이 있다. 절대적 규모가 작아도 그 산업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으면 독점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규모는 절대적인 것이다. 규모가 너무 커지면 설사 그 산업에서 독점력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면, 단순히 절대규모가 커지는 것을 규제할 필요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라. 법인세의 성격과 과세베이스[9)]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법률상의 공식명칭이지만 그 성격은 흔히 법인소득세(corporation income tax)라고 경제학적으로 분류하는 세목에 속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일정기간 동안에 법인이 획득한 소득이 그 과세대상이 되는 세목이라는 것이다. 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점에서 개인소득세와 유사하지만 개인소득세처럼 그 목적이나 성격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인소득세는 개인의 담세력 또는 개인의 지불능력에 부합하는 세금을 부담시킴으로써 국가의 세입을 공평한 방법으로 조달한다는 중요한 명분이 있는 세목이다. 그러나 법인세의 경우에는 소득세라는 점은 같지만 공평한 과세의 원칙을 실현한다는 점과 관련해서는 개인소득세와 상당한 거리를 갖는다.

법인세를 흔히 법인이윤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이윤이라는 말의 정의 때문에 혼선을 일으키기도 한다. 여기에서의 이윤이란 기업의 당기순이익을 말하는 것이다. 이윤을 경제학적인 의미로 볼 경우의 이윤세는 법인세와 상당히 다르다.

법인세의 경제학적 성격을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과세베이스를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법인세의 과세베이스는 법인기업의 세전 당기순이익인데 이것은 경제적 이윤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데 주의해야 한다.

당기순이익과 경제적 이윤은 다음과 같이 구분해서 표현할 수 있다.

$$\text{당기순이익} = pQ - wL - rB - dK$$

$$\text{경제적 이윤} = pQ - wL - (r+\delta)K$$

---

9) 이 부분은 곽태원(2000) pp. 290~292의 논의를 따른 것이다.

단, pQ=총 부가가치 wL=인건비 rB=지급이자 dK=감가상각비 δ=경제적 감가율(economic depreciation rate)

여기서 만일 B=K(100%차입경영)이고 d=δ 이면 두 개념은 완전히 일치한다. 즉 이 때는 당기순이익에 과세하는 법인(소득)세가 순수한 이윤세가 되는 것이다.

한편, 부가가치의 구성은 다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pQ = wL + rB + \rho E + \delta K$$

단 ρ=자기자본 수익률, E=K-B=자기자본

부가가치 구성을 나타내는 위의 식을 이용하여 당기순이익을 다시 쓰면

$$\text{당기순이익} = wL + rB + \rho E + \delta K - wL - rB - dK = \rho E + (\delta - d)K$$

이 식에서 기업의 세무회계상 감가상각률이 경제적 감가상각률과 같다면 당기순이익은 ρE, 즉 자기자본에 귀속되는 요소소득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감가상각제도에 의한 왜곡이 없다면 ρE가 법인세의 베이스가 된다.

이제 경제적 이윤을 같은 방법으로 쓰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이것은 당기순이익과 다르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 즉 당기순이익에서 자기자본에 대한 정상적 수익(rE)을 뺀 나머지가 경제적 이윤이 되는 것이다[10].

---

10)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경제적 감가율과 세법상의 감가상각률이 같고 100% 차입경영을 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식으로 경제적 이윤을 나타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E가 0이 되어 자기자본에 대한 수익률을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text{경제적 이윤} = pQ - wL - (r+\delta)K = wL + rB + \rho E + \delta K - wL - (r+\delta)K$$
$$= rB + \rho E - rK = rB + \rho E - r(E+B) = (\rho - r)E$$

요컨대 독점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순수한 경제적 이윤을 창출하고 있는 법인기업이 있다면 이러한 이윤은 법인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인세의 과세대상(ρE)은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정상적인 보수(rE)와 경제적 이윤[$(\rho - r)E$]을 합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법인세의 과세베이스가 법인의 자기자본(equity capital)에 대한 수익이라는 점은 결국 법인세가 법인부문의 자기자본에 대한 부분요소세[11](partial factor tax)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준다. 법인세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함의는 바로 법인세가 부분요소세라는 점에서부터 도출할 수 있다.

마. 법인소득과세의 의의

법인소득을 과세하는 의의는 무엇인가?

위에서 간단하게 언급한 여러 가지 견해가 바로 법인소득 과세의 의의에 대한 논의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세금이든지 그 일반적인 목적은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것이다. 재정수입의 확보가 일차적인 목적이 아닌 세금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러한 것은 예외적인 것이며 법인소득과세는 이러한 예외에 속한다고는 볼 수 없다. 실제로 법인소득세는 각국에서 상당히 중요한 정부수입원이 되고 있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중요한 세입원이 되고 있는 국가들도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법인세는 1996년

11) 특정한 산업부문에 고용된 특정한 요소에만 과세되는 세금이란 뜻이다. 법인세는 법인부문에 고용된 자본요소에만 과세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부분요소세라고 볼 수 있다.

국세수입의 16.4%를 차지하여 중요한 세입원으로 자리잡고 있다. 여기에 주민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지방재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며, 또한 국세수입의 일정부분이 지방교부세로서 지방정부로 이전되는 것을 생각하면 지방재정과 관련해서도 법인세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물론 법인세 납부액 중 일부는 그로스업 제도 등 이른바 이중과세 조정장치에 의해 개인소득세 과세단계에서 세액공제되거나 소득공제되기 때문에 법인소득세 징수액이 전부 재정에 대한 기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로스업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법인세 납부액 중 일부는 배당소득세를 계산할 때 세액공제되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가 중요한 재정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 곧 이 세금을 폐지하면 그만큼의 재정수입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현재수준의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인세의 존립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은 논리적인 기반이 매우 약하다는 것이다. 어떤 세목으로 세금을 거두지 않으면 다른 세목으로 세금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세수와 관련된 논의의 중심은 어느 정도의 세수확보가 필요한가가 결정이 되면 그것을 어떤 세목으로 거두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공평한가를 따져보는 것이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세목을 먼저 결정해서 그것으로 얼마의 세수가 걷히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법인세가 세수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인소득 과세의 의의는 그것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그러한 영향은 바람직한 것인가, 어떤 사회적인 비용이나 편익을 가져오는 것인가 등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세금의 기본적인 목적은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공평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더 좋은 과세베이스를 발견할 수 있다면 굳이 법인소득과세를 고집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법인소득 과세의 의의를 평가한다는 것은 다른 과세베이스와의 상대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법인소득을 어떤 방식으로 과세하는가도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일단은 기왕에 채택하고 있는 과세제도를 중심으로 그 효율성이나 공평성을 평가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판단된다.

이 절에서 결론부터 먼저 말하자면 법인세가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부분요소세라는 사실 때문에 자원배분의 효율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성격을 갖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서 그것이 개인의 담세능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성격 때문에 공평한 세금으로 설계하는 것도 쉽지 않다. 요컨대, 현재 각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법인소득과세제도는 효율성이나 공평성 면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제도라는 것이다. 한편 법인세는 기업에 대한 가장 중심적인 과세라는 점에서 오늘날과 같은 범세계화의 경제여건하에서 국가간의 자원 및 부의 이동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가질 수 있다.

2. 우리나라에서의 법인세[12]의 주요 제도 변화

가. 도 입

바로 앞 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법인기업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명시적으로 부과되기 시작한 것은 서양에서도 그렇게 오랜

12) 이 글에서는 법인세(우리나라에서의 공식 명칭)와 법인소득세(corporation income tax, 구미 국가들에서의 일반적인 명칭)라는 두 가지 명칭을 혼용하기로 한다.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 미국에서는 소득세에 앞서 1909년에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가 처음 도입되었고 영국과 프랑스는 이보다 훨씬 뒤인 1947년과 1948년에 비로소 법인소득세가 조세체계에 공식적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법인기업 발달의 역사가 일천한 우리나라에서 법인소득에 대한 과세가 매우 일찍 도입된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제 침략 초기인 1916년에 소득세라는 명목으로 법인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법인소득세가 처음 도입되었다. 일본의 소득세법 중 법인소득에 관한 규정만을 떼어서 한반도에서 시행하였던 것이다[13]. 1930년대에 들어서는 대륙침략을 위한 군비 조달 등을 목적으로 대규모 세제 정비를 추진하였는데 그 일환으로 1934년에 소득세제도 정비되어 이른바 일반소득세라는 세목이 신설되고 그 안에서 제1종 소득으로 법인소득이 과세되었다[14]. 1940년에는 특별법인세가 신설되어 금융조합과 공업조합 그리고 동 연합회 등에 대해서도 과세가 이루어졌다[15]. 해방 뒤 군정하에서도 기본적으로 같은 조세체계가 이어지다가 새로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1949년에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이 분리되어 제정됨으로써 1950년부터 법인세가 독립된 세목으로 도입되었다.

나. 세율 변동

우리나라 법인세 세율의 변천은 <표 Ⅱ-1>에 정리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가장 세율이 높았던 기간은 1960년대 후반의 45%였으나 방위세 등 부가세까지 고려하면 1970년대 후반에 더 높은 최고한계세율이 적용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최근에는 최고한계세율이 27%로 낮아졌다[16].

---

13) 국세청(1996), 236쪽.
14) 곽태원(2000), 127쪽.
15) 현진권(1997), 401쪽.

<표 Ⅱ-1> 우리나라 법인세율의 변천

연도	일반법인	특별법인	연도	일반법인	공개법인	비영리법인
1950	35%	20%	1975	20~40% 3단계누진	20~27% 2단계누진	20~27% 2단계누진
1951	25~45% 5단계 누진	15~35% 5단계 누진	1976	20~40% 2단계	20~27% 2단계	20(학교법인15) ~27% 2단계
1952	15~75% 8단계	상동	1977	20~40% 2단계	20(25)~27(33)% 2단계, ( )내는 대주주지분 35% 초과법인	20(학교법인15) ~27% 2단계
1953	35~70% 8단계	20~55% 8단계	1979	20~40% 2단계	20(25)~32(35)% 2단계, ( )내는 대주주지분 35% 초과법인	20(학교법인15) ~27% 2단계
	일반법인	특별법인, 비영리법인	1981	25~40% 2단계	25~33% 2단계(대주주지분 35% 이하)	20~27% 2단계
1955	35%	30%		일반법인	공개법인	비영리법인 / 공공법인
1957	32%	27%	1982	22~38% 2단계	22~33% 2단계(대주주지분 35% 이하)	20~27% 2단계 / 5%
	일반법인	동족회사		일반법인	비영리법인	공공법인
1959	30%	22%	1983	20~30% 2단계(비상장 대기업 33%)	27%	5%
	비공개법인	공개법인	1989	상동	상동	10~15% 2단계
1961	22%	17%		일반법인	공공법인	
1962	20%	10%	1991	20~34% 2단계	17~25% 2단계	
1963	20~25% 2단계	비공개법인의 1/2	1994	18~32% 2단계	18~25% 2단계	
1964	25~30% 2단계		1995	18~30% 2단계	18~25% 2단계	
1966	20~35% 3단계		1996	16~28% 2단계	16~25% 2단계	
1968	25~45% 3단계	20~35% 3단계		모든 과세대상 법인	조합법인	
	일반법인	공개법인 / 비영리법인	1999	16~28% 2단계	12%	
1969	25~45% 3단계	15~25% 3단계 / 20~35% 3단계	2002	15~27% 2단계	12%	
1972	20~40% 3단계	16~27% 3단계 / 20~35% 3단계				

주 : 일반법인의 최고한계세율 적용하한 소득은 1963년 100만원, 1966년 500만원, 1981년 5000만원, 1989년 8000만원, 1991년 1억원 등으로 변함.
자료 : 현진권(2000), 재정경제부, 『조세개요』, 각 연도.

16) 여기에 주민세 10%가 부가 과세된다.

세율구조를 보면 5단계 누진세율까지 적용된 적이 있지만 1970년대 중반 이래로 2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왔다. 이러한 세율구조는 누진세율구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세율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리고 1961년에서 1982년 기간 동안 공개법인과 비공개법인을 차등과세하여 기업의 공개를 장려했던 것도 특기할 만하다. 1969년에서 1998년 기간 동안 비영리법인과 공공법인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최근에는 비영리법인에는 수익사업 소득에 대해서만 일반법인과 같은 세율로 과세하고 공공법인은 별도로 구분하지 않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단순화하였다. 1999년부터 조합법인 등에 대해서는 12%의 감면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다. 감가상각과 자산재평가 제도

법인세의 과세베이스는 당기순이익이므로 자기자본에 대한 수익이 바로 과세베이스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세법상의 감가상각제도에 따라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의 감가상각제도는 우선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상각의 방법을 정액법, 정률법 그리고 생산량비례법 등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자산별 내용연수를 규정함으로써 구체적인 상각의 속도를 정해 놓고 있다. 1995년 이전까지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을 상당히 자세하게 분류하여 실제 내용연수를 가능한 한 반영한다는 취지에서 세법상의 내용연수를 정해 놓고 있었다. 이른바 경제적 감가상각에 가깝게 자본비용을 회수하도록 하려는 시도였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잔존가액을 10%로 규정하여 이것은 감가상각비로 계상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실제 자본투입액을 전부 비용으로 회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

특히 인플레이션이 심했던 개발연대 기간중 이러한 감가상각제도는 매우 근본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원가주의 회계원칙을 고수하면서 실제의 물리적인 내용연수에 가까운 기간에 걸쳐서 그것도 투자액 전액이 아닌 90%만을 비용으로 회수하게 한다면 고정자산에 투자한 비용이 충분히 비용으로 회수되지 못함으로써 세부담이 부당하게 늘어나고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부분적으로 대응한 것이 이른바 특별감가상각제도라는 것이었지만 이것은 선택적으로 적용되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등에 대한 대응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문제에 보다 직접적으로 대응하여 취해진 조치가 소위 자산재평가제도의 도입이었다. 1958년에 2년 한시법으로 자산재평가법이 제정되어 강제적으로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한 적이 있고, 1962년에 다시 자산재평가임시조치법이라는 한시법이 제정되어 2년간 임의로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뒤 1965년에 영구법으로 자산재평가법이 제정되어 일정한 조건하에서 임의로 자산을 재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산재평가제도는 높은 인플레이션하에서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시가변동에 맞추어 조정해 줌으로써 감가상각을 통한 투자비용의 회수를 합리화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법인세제도상의 감가상각제도가 가져오는 기업투자의 왜곡을 줄이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보다는 토지 등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많이 오용되었다[17].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다가 물가의 안정과, 1995년에 세법상 고정자산

17) 자산의 평가차익에 대해서는 3%(1965년 이후)의 자산재평가세만을 부담하였고 재평가한 자산을 처분할 경우 재평가 이후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회피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었다.

내용연수의 조정이 이루어지고 나서 2000년 말 기준으로 재평가 제도 자체를 폐지하였다.

전술한 것처럼 1995년 감가상각 대상 자산의 분류를 대폭 단순화하고 내용연수를 상당히 단축하였을 뿐 아니라 규정된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상하 25%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잔존가액도 폐지하여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비용이 충분하게 그리고 조기에 회수될 수 있게 되었다.

라. 각종 조세감면과 최저한세 제도

법인세는 법인기업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직접세이기 때문에 이 세금의 감면 등을 통해 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믿어져 왔다. 이러한 인식에 근거하여 여러 나라에서 법인세의 감면을 여러 가지 목적의 정책수단으로 사용해 왔다. 기업에 대한 간섭을 선진국들보다 더 많이 해왔던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세의 감면은 더욱 적극적으로 다양한 정책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법인세법 제정 당시부터 이른바 중요산업에 대한 조세감면이 규정되었으며 1960년대에는 외화획득사업에 대한 파격적인 조세지원이 규정되었다. 1965년에 조세감면규제법이 제정되어 이 법에서 중요한 조세지원제도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였다.

1970년대 초에는 수출 등에 대한 지원이 현저히 약화되는 대신 중화학공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었고 1980년대 초에는 시장에 대한 간섭을 줄인다는 취지에서 조세감면제도가 상당한 폭으로 정비되었다. 특히 주요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조세지원과 수출지원은 대폭 정비되는 대신 기술 및 인력개발, 중소기업 활성화 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었다.

한편, 방위세는 조세감면액에 대해서는 할증부가(割增附加)되

었는데 방위세가 폐지됨에 따라 감면혜택이 급격히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를 막기 위해서 이른바 최저한세제도가 1990년에 도입되었다.

1990년대 중반의 WTO 출범과 함께 이 규범에 따른 지원제도의 정비와 조정이 이루어졌다.

조세감면규제법은 처음부터 한시법으로 제정되어 여러 차례 그 시한이 연장되는 개정이 반복되었으나 1998년의 시한만료와 함께 그 내용을 대폭적으로 손질한 뒤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명칭을 바꾸어 다시 시행하였다. 새로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그 법 자체에는 시한을 두지 않되 지원 내용별로 일몰시한을 규정하도록 하였다.

마. 기업 재무행태와 관련된 조세제도[18)]

법인세는 기업의 자금조달 행태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준다. 차입에 의한 자금조달을 증자에 의한 자금조달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한다. 증권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과세가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보다 가벼울 경우 사내유보를 통한 재원조달이 신주발행에 의한 자금조달보다 더 비용이 낮아지게 만든다. 이러한 요인이나 또는 다른 이유들 때문에 발생하는 기업 재무행태의 왜곡을 시정하기 위해서 법인세 또는 소득세와 관련된 수단들이 활용되었다.

우선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지급이자를 손비로 인정하지 못하도록 하여 기업의 재무구조 건전화를 도모하였다. 1981년부터 부채비율이 일정수준 이상인 법인이 타회사 주식을

18) 손원익(1996)은 기업의 재무구조와 관련된 법인세제도의 변천을 잘 정리하고 그 정책효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였다.

취득할 경우 지급이자의 손비인정을 제한하는 규정을 시행였고, 1986년에는 이러한 규정이 비업무용부동산에까지 확대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증자에 의한 자금조달을 장려하기 위하여 증자액의 일정비율을 소득공제해 주는 이른바 증자소득공제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1972년 소위 8·3긴급조치를 통해 한시적인 제도로 처음 도입되었는데 그 뒤 빈번한 개정을 거쳐 오다가 1996년부터는 완전히 폐지되었다.

배당과 관련한 세제도 기업의 재무행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부담을 완화하고 사내유보를 통한 세부담 회피를 막기 위하여 배당세액공제제도와 지상배당세제도가 1967년에 도입되었다. 배당세액공제제도는 배당소득의 일정비율(도입 당시에는 배당소득에 법인세율을 곱해서 구한 금액)을 개인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해 줌으로써 이중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이고, 지상배당세제도는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유보분에 대해서는 배당된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지상배당세제도는 사내유보에 의한 기업저축을 저해한다는 비판에 따라 1985년에 폐지되었고 배당세액공제제도는 1991년부터 좀 더 세련된 임퓨테이션제도로 전환되었다. 법인세의 낮은 세율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을 개인소득에 그로스업하고 이를 다시 세액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3. 우리나라 재정에서 법인세의 역할

앞에서 우리는 법인세의 도입과 중요한 변천 등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본절에서는 법인세가 우리 재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 왔는가를 세수와 조세유인 등 두 가지 측면에서 간략하게 논의하기로 한다.

가. 재정재원조달

법인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매우 안정적이며 중요한 재정수입원 노릇을 해 왔다는 것이다. <표 Ⅱ-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전체 조세수입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1960년대에서 1980년대 말까지 약 7~9%의 비중을 보여 왔다. 그러다가 1990년대 들어서부터 그 비중이 늘기 시작해서 최근에는 전체 조세수입 중 13~15%를 차지하는 더 중요한 세목이 되었다. GDP에 대한 비율로 보면 1965년에는 0.7% 수준이었으나 1970~80년대를 통해서 1% 대를 유지해 왔고 최근에는 3%대의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꾸준히 늘어왔는데 법인세도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데 일조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표 II-2> 법인세 수입의 상대적 중요성

(단위 : %)

연 도	법인세 수입/조세수입	법인세 수입/GDP
1965	8.1	0.7
1970	10.6	1.5
1975	8.4	1.3
1980	7.4	1.3
1985	8.3	1.4
1990	9.7	1.8
1995	12.0	2.3
2000	15.7	3.4
2001	13.9	3.1

주 : 1. 조세수입은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포함함.
2. GDP는 구계열(1995년 기준)을 사용함.

<표 II-3> 총세수입에서 법인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의 국제비교

(단위: %)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6	2000
캐나다	14.9	11.3	13.6	11.6	8.2	7.0	8.8	11.1
프랑스	5.3	6.3	5.2	5.1	4.5	5.3	5.2	7.0
독일	7.8	5.7	4.4	5.5	6.1	4.8	3.8	4.8
일본	22.2	26.3	20.6	21.8	21.0	21.6	16.4	13.5
뉴질랜드	20.7	17.8	11.8	7.8	8.3	6.4	9.8	11.7
영국	7.1	9.1	6.7	8.3	12.5	10.8	10.7	9.8
미국	16.4	13.2	11.4	10.8	7.5	7.7	9.6	8.5
OECD	8.9	8.7	7.5	7.5	7.8	7.6	8.3	9.7

자료: OECD(2002).

법인세의 비중이 분명하게 높아져온 추세는 선진국과는 대조를 이룬다. <표 Ⅱ-3>에서 보면 영국과 프랑스를 제외한 모든 주요 국가들에서 전체 조세수입 중 법인세의 비중이 뚜렷하게 줄어들거나 적어도 우리나라처럼 늘어나지는 않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국가에서 최근에 다시 법인세 비중이 다소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는 있으나 긴 추세를 보면 법인세 비중의 축소경향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미국, 일본 그리고 뉴질랜드 등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19].

19) 최준욱(2002)은 선진국들의 법인세 비중이 개방화에도 불구하고 뚜렷이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위의 <표 Ⅱ-3>에서도 OECD 평균을 보면 이와 같은 견해가 타당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나라처럼 법인세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며, 법인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나라들에서는 그 비중이 빠르게 감소하였다는 점이 우리나라의 경험과 강한 대비를 이룬다고 말할 수 있다.

나. 조세유인기능

정부주도형의 경제개발정책을 추진해 오면서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은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다. 경제개발 초기단계에서는 수입대체산업을 육성하는 수단으로 그리고 뒤이어 수출 등 외화획득 활동을 지원하거나 외자도입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법인세의 감면을 활용해 왔다. 법인세 감면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기간은 1970년대의 이른바 중화학공업화 정책이 추진되던 기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기간중에는 산업별 조세지원이 일반적으로 활용되던 산업정책 수단이었다. 1980년대 들어와서 정부의 과도한 간섭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고 무역마찰 가능성 등이 제기되면서 산업별 지원이 줄어들기 시작하였고 WTO 체제의 출범 이후에는 조세지원이 인력 및 기술개발이나 중소기업창업지원, 환경관련 지원 등에 국한되는 등 법인세의 조세유인 수단기능은 대폭 축소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에 동원된 수단들은 조세의 직접감면, 특정기간 조세감면(tax holidays), 특별감가상각, 투자세액공제 그리고 각종 준비금 제도 등이었다.

일부 선진국에서처럼 임시투자세액공제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투자활성화와 이를 통한 경기회복을 도모하는 정책도 수시로 사용되어 왔다.

Ⅲ. 법인세의 귀착과 초과부담

1. 법인세의 귀착

가. 고전적 견해

조세에 대한 경제분석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귀착분석이다. 초기에는 법인세의 성격에 대한 오해 때문에 법인세의 귀착에 대한 생각도 많은 혼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Musgrave(1959)는 법인세가 단기적으로는 전가될 수 없다는 것이 당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의 생각이었지만 업계의 사람들은 법인세를 가격에 전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함으로써 법인세의 전가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였다[20]. 법인세가 전가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다수 경제학자들의 생각은 법인세는 경제적 이윤에 대한 조세라는 생각에 근거를 두고 있다[21]. 경제적 이윤에 대한 조세는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기업의 행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모두 기업에 귀착되며 자원배분의 왜곡도 초래하지 않는다.

---

20) Musgrave(1959)가 제시하는 reference는 F.Y. Edgeworth, A. Cournot, I. Fisher, Knut Wicksell, E.R. Seligman, H. Dalton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중 일부는 법인세가 도입되기 전의 문헌이며 이러한 문헌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윤세(profit tax)를 법인소득세와 같은 개념으로 인식한 데서 혼란이 발생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21) Musgrave(1959)는 p. 277에서 이윤극대화 기업이 이윤에 대해서 과세할 경우 세후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세전이익을 극대화해야 하므로 이윤세가 부과되어도 가격이나 산출량을 변화시킬 필요가 없다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이것은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그러나 전가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Musgrave(1959)는 세 가지 경우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로 운전자본에 대한 정상이윤이 감안되지 않은 경우 이런 법인세가 전가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법인세가 순수한 경제적 이윤세가 아닐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러한 취지의 논의를 한 문헌으로 Brown(1954), Shoup(1948), Boulding(1944) 등을 들고 있다. 그 밖에 기업이 이윤극대화를 목표로 하지 않거나 시장이 완전경쟁적이 아닐 경우 그리고 단체교섭 등으로 임금이 결정될 경우 등에는 법인세가 제품가격이나 임금 등에 영향을 줌으로써 전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나. Harberger의 일반균형 모형

이러한 이론적 논쟁은 Harberger(1962)에 의해서 대체로 정리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논문은 현대경제학에서 조세귀착이론의 발전에 기여한 가장 중요한 논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우선 법인세를 법인부문의 자본에 대한 부분요소세(T_{XK} : X부문의 K요소에 대한 조세)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법인소득세가 경제적 이윤에 대한 조세가 아님을 분명히 한 것 한 가지만으로도 법인세의 전가가 예외적인 경우라고 생각했던 앞의 오류를 바로잡기에 충분하였다. Harberger의 모형은 당시 국제경제학자들이 사용하던 일반균형모형을 조세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응용한 것이었다. 완전경쟁을 가정하고 두 개의 부문과 두 개의 생산요소가 있는 경제를 상정하여 그 중 한 부문에 고용된 두 가지 생산요소 중 한 가지에 과세할 경우의 상대가격 변화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법인세의 귀착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두 부문에 대한 여러 가지 탄력성과 생산요소의 공급과 고용 등

에 대한 가정에 따라 다른 결과를 얻게 되는데, Harberger는 여러 파라미터들을 '그럴듯한' 값으로 가정하여 분석한 결과 법인세는 대체로 자본의 소유주에게 귀착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Harberger의 이 연구는 법인세 귀착과 관련한 어떤 결론보다도 일반균형 상황에서 법인세나 기타 조세를 분석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하고 유용한 분석의 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기여가 컸다고 말할 수 있다[22].

Harberger가 사용한 모형은 X와 Y의 두 개의 부문이 있고 각각은 K와 L이라는 두 가지의 생산요소를 고용하며 모든 경제주체들은 가격수취자이고 생산요소의 총공급은 고정되어 있으며 가격이 유연하여 완전고용이 보장되는 단순한 정태모형이었다. 이러한 모형에서 아무런 조세가 없는 상태에서 법인부문(예를 들면 X부문)의 자본에 아주 작은 조세를 도입하는 경우에 생산요소의 상대가격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분석함으로써 자본과 노동간의 법인세 귀착에 관한 함의를 찾아내려고 하였던 것이다. 이 때 조세가 가계의 수요에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가정들을 도입하였다.

조세의 도입은 X부문의 자본비용에 영향을 주고 따라서 이 부문의 상대가격을 상승시킨다. 이 부문의 산출량은 줄어들고 다른 부문의 산출량은 늘어난다. 그러므로 X부문에서는 생산요소가 해고되고 Y부문에서는 새로운 고용이 일어나게 된다. 한편 X부문에서 자본비용의 상승은 자본과 노동의 결합비율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영향이 종합적으로 생산요소시장에서 자본과 노동의 상대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같은 조세의 영향을 결정

22) 조세등가관계(tax equivalence relation)에서 부분요소세는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이기 때문에 부분요소세를 분석할 수 있다면 어떤 조세라도 분석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조세등가관계에 대해서는 곽태원(2000) p. 63 참조.

하는 중요한 파라미터들은 각 부문의 수요탄력성, 각 부분의 요소집약도 그리고 각 부문에서의 자본과 노동의 대체탄력성 등이다. 구체적으로 이 모형을 풀어서 조세가 어떤 특정한 귀착의 모양을 가질 조건들을 찾아낼 수 있고 혹은 위에서 말한 파라미터 값들을 가정하여 조세귀착의 패턴을 분석할 수도 있다. Harberger의 일반균형 귀착모형과 그 확장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설명을 원하는 독자는 Atkinson and Stiglitz(1980) Lecture 6을 참조하면 좋을 것이다. Atkinson(1994)도 이 모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Harberger의 모형은 McLure와 Mieszkowski 등 여러 경제학자들의 후속연구에 의해서 더욱 발전되었고 뒤에는 Shoven과 Whalley 등의 CGE 모형을 이용한 일반균형 귀착분석의 초석이 되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Harberger의 모형은 이론적인 분석을 위한 하나의 틀일 뿐 그 자체가 법인세의 귀착에 관한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모형에서 채택한 가정을 어떻게 완화시키는가, 그리고 중요한 구조적 파라미터들을 어떻게 가정하는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법인세의 실제 귀착이 어떤 모습인가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하든가 또는 Harberger 모형을 좀 더 현실적인 모형으로 발전시키고 파라미터들의 추정을 보다 정확하게 하는 것이다.

다. 실증적 분석

계량경제학적인 방법으로 법인세의 실증적 분석을 시도한 중요한 연구로 Krzyzaniak and Musgrave(1963)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제조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100% 또는 그 이상이 해

당 재화의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계량경제학적 증거를 찾았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주장은 많은 논쟁을 불러왔는데 이러한 논란이 계량경제학적인 방법으로 법인세의 귀착을 분석하기 위한 모형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계량경제학적인 시도도 법인세 귀착에 관한 어떤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하였다[23].

귀착에 관한 실증적인 증거를 찾으려는 시도는 거시적인 자료를 이용한 계량경제학적인 접근에서 미시적인 자료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고 이와 같은 접근법을 통해서 중요한 실증적 귀착분석의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Pechman and Okner(1974), Browning and Johnson(1979) 그리고 Pechman(1985) 등이 이러한 접근을 시도했던 중요한 연구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접근방법은 대체로 각종 조세나 정부지출이 어떻게 전가되고 귀착되는지를 먼저 가정한 뒤 미시적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각 집단별로 가정에 따른 조세부담을 계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예를 들면 Pechman and Okner(1974)는 법인세에 관해서 법인세는 법인부문뿐 아니라 비법인부문의 자본수익률도 낮추어 주며 자본수익률은 자본의 공급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가정하였다[24]. 이러한 가정에 근거해서 법인세는 전부 자본에 귀착된다고 보았고 법인세가 소비 쪽에 주는 영향은 무시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오늘날의 실증적 귀착분석에서도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다. 매우 방대한 미시자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계층별 세부담을 매우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용한 자료가 방대하다는 점과 결과가 구체적으로 제시된다는 점 때문에 일반인들로부터 쉽게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의 결정적인 결함은 상당히 단순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조세의

23) Break(1974) p. 139 참조.
24) Pechman and Okner(1974) p. 31 참조.

전가와 귀착에 관한 가정이 현실에서 그대로 혹은 적어도 그러한 가정에 꽤 근사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은 대체로 부분균형분석에 입각한 이론적 결과들을 원용한 것이지만 부분균형분석에서 도출되는 이론의 시사점도 충분히 반영시키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25].

라. 이론모형의 확장

이론적인 모형이 현실을 더 잘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그 모형을 통해 현실적인 귀착의 시사점을 찾으려는 시도는 Harberger 모형의 여러 가지 가정을 완화하거나 변경시켜서 그 함의를 찾아내려는 시도로 구체화되었다[26]. 예를 들면 McLure(1971)는 생산요소의 완전한 이동성이라는 가정을 완화시키는 시도를 하였고 Bruno(1970)는 완전경쟁의 가정이 완화될 경우를 생각하였다. Feldstein(1974a, 1974b)은 지금까지의 정태적 모형에 동태적인 요소를 도입하였다.

Mieszkowski(1967)는 법인세의 귀착을 산출효과(output effect)와 요소대체효과(factor substitution effect)로 나누어서 설명함으로써 경쟁적인 일반균형모형에서 부분요소세의 귀착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들을 잘 설명하고 있다. 산출효과는 과세되는 부문의 수요탄력성과 관련을 가지며 요소대체효과는 과세되는 부문과 그렇지 않은 부문간의 요소집약도의 차이, 생산요소

---

25) 예를 들면 부분균형 귀착모형에서도 전가의 정도는 탄력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고 탄력성은 산업에 따라, 계층에 따라 그리고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러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모두 정확하게 적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26) Atkinson and Stiglitz(1980) Lecture 6에 이 Harberger 모형과 그 확장에 대한 설명이 잘 정리되어 있다.

의 이동성 그리고 생산요소들 간의 대체탄력성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가정 여하에 따라서 법인세가 법인부문의 자본에만 귀착되거나 비법인부문의 자본에까지 동일하게 귀착될 수 있고 혹은 노동이나 다른 생산요소로 전가될 수도 있다. Bradford(1978)는 생산요소 특히 자본의 공급이 고정되어 있다는 가정을 완화하여 개방경제에서의 자본소득과세 귀착함의를 도출하였는데 특히 완전경쟁 상황하에서 자본공급이 완전히 탄력적인 소규모 개방경제의 경우에는 자본에 대한 과세는 전적으로 다른 생산요소로 전가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마. CGE 모형을 이용한 귀착분석

Harberger의 정태적 일반균형모형을 하나의 이론적인 분석도구에서 실증적인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Shoven and Whalley(1975)에 의한 컴퓨터시뮬레이션 방법의 도입이다. Harberger의 모형이 극단적인 단순화 가정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일반균형모형을 대수적으로 풀어서 의미 있는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었다. 컴퓨터의 계산능력을 이용하여 일반균형모형을 푸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현실경제의 구조를 보다 잘 묘사하는 대형의 다부문모형을 만들고, 이 모형의 파라미터들을 현실경제에서의 실증적인 통계자료를 근거로 추정하여 현실경제를 보다 가깝게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된 것이다. 특히 종전의 I-O모형처럼 상대가격이 고정된 모형이 아니고 상대가격이 내생화된 시뮬레이션 모형을 개발함으로써 법인세 혹은 다른 다양한 형태의 조세가 가져다 주는 상대가격효과 즉 귀착효과를 분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바. 최근 논의의 동향

Harberger의 모형이 법인세의 귀착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자본의 공급이 고정되어 있다는 가정과 함께 법인세의 부담이 주로 자본에 귀착된다는 생각이 1960년대의 주류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1970년대에 와서 특히 자본의 국제적 이동성이 노동보다 높다는 점에 비추어 소규모 개방경제의 경우 자본에 대한 과세는 주로 토지나 노동 등 이동성이 낮은 생산요소로 전가될 것이라는 생각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27].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Feldstein and Horioka(1980) 등 현실적으로 자본의 이동성이 높지 않다는 반론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법인세의 부담이 주로 자본에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던 Harberger(1995)마저 법인세의 부담이 노동에 100% 이상 전가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Gravelle and Smetters (2001) 등 최근에는 법인세가 노동이나 토지로 전가되기보다는 자본이 부담하든지 아니면 해외로 수출될 수 있다는 주장들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지금까지 이러한 분석의 기본적인 틀을 제공했던 Harberger의 단순화된 신고전파적 모형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자본의 국제적 이동이 생각처럼 완전하지 못하며, 시장도 완전경쟁적이라고 말할 수 없어서 법인세에 독점이윤세적인 성격이 있고, 나아가서 다국적기업들이 이전가격이나 소득유형의 전환 등을 통해 법인세를 피할 수 있는 수단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론과 다른 현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28].

---

27) Bradford(1978), Kotlikoff and Summers(1987), Mutti and Grubert(1985) 등에 이런 관점이 잘 나타나 있다.

28)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는 Gordon and Mackie-Mason(1995) 등 참조.

사. 누진법인세와 소득분배

법인세가 어떻게 전가되고 어떤 계층에게 귀착되는가에 관심을 갖는 매우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그것이 소득분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기 위한 것이다. 법인세는 기업에 대한 조세이며 자본가가 부담하는 조세라는 생각에서 정의로운 조세이며 분배를 개선하는 조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 단순히 그것이 직접세이기 때문에 분배를 개선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까지 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누진적인 법인세율이 분배정책적인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인이 담세능력을 갖는 것이 아니고 주주가 담세능력을 갖는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법인세의 누진세율이 공평을 위한 것인가에 대해 회의를 갖지 않을 수 없다. 법인세의 다양한 전가 가능성을 차치하더라도 법인에 누진적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반드시 주주들의 소득에 누진적인 세부담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29]. 작은 기업의 주주들은 가난하고 큰 기업의 주주들은 더 부자라는 관계가 일반적으로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가계소득의 재분배라는 관점에서 누진법인세가 합리화될 수 없다면 이것은 중소기업 지원이나 대기업의 규제 등 다른 차원의 정책목표로 합리화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정책목표가 타당한 목표인가와 누진법인세율이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가장 바람직한 수단인가의 두 가지 관점에서 모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

29) Musgrave and Musgrave(1976) p. 390 참조.

3. 법인세의 초과부담

가. 법인세와 초과부담의 문제

일반적으로 법인세는 매우 비효율적인 조세로 알려져 있다. 초과부담이 크게 발생하는 조세라는 것이다. 1950년대 미시경제학 이론의 획기적인 발전과 함께 초과부담에 관한 이론도 크게 발전하였고 그것은 1970년대 전반의 최적조세이론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최적조세이론은 상품세와 일반요소세인 개인소득세를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나 법인세의 최적화에 관한 논의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그것은 아마 법인세가 야기하는 자원배분 왜곡의 원천이 다양하여 최적화를 위한 모형개발이 쉽지 않다는 점과 법인세를 최적화해서 유지하는 것보다는 다른 조세로 대체하거나 개인소득세와 통합하여 법인세 자체를 없애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 때문일 수 있다.

어떤 조세변화가 생산물의 상대가격을 왜곡시켜 야기하는 초과부담은 이러한 조세변화로 말미암은 등가변화(equivalent variation) 또는 보상변화(compensating variation)에서 조세변화로부터 얻어진 조세수입의 증가분을 공제한 것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러한 초과부담의 정의는 개별소비자 단위로 이루어진다. 한편, 법인세의 변화는 생산물 시장에서 상대가격의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생산요소 시장에서의 상대가격의 변화를 가져오고 따라서 소득의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초과부담의 분석이 좀 더 복잡해진다. 나아가서 조세정책의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개인보다는 사회 전체 집계수준의 후생손실을 측정해야 한다. 이것은 개인 효용함수의 가중합계 즉 사회후생함수에 관한 정보를 요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론적인 초과부담의 정의(수식에 의한 초과부담의 표현)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진다

고 말할 수 있다. 개념적으로는 조세변화 전후의 사회후생의 변화를 화폐단위로 측정한 것에서 세수입의 변화를 공제한 것이 초과부담이라고 말할 수 있다. 조세의 초과부담에 관한 개념을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측정의 문제까지 논의한 서베이 문헌으로 Auerbach(1985)와 Auerbach and Hines(2002)를 들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조세의 초과부담에 대한 자세한 이론적 논의는 생략하기로 한다. 대신에 법인세에 의한 비효율의 주요 요인들을 정리한 다음 실증적으로 법인세의 초과부담을 측정한 연구들을 살펴본다.

나. 법인세에 의한 비효율의 주요 요인

1) 기업의 재무행태 왜곡[30]

법인기업은 대체로 투자재원의 조달수단으로 신주발행, 차입, 사내유보 등의 대안들을 갖는데, 법인세는 법인기업들의 이러한 자금원천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그것이 경제 전체의 효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면 지급이자는 법인기업의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반면 지급배당은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관행 때문에 차입에 의한 재원조달이 더 유리해질 수 있다. 차입의존으로 기업의 부채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지게 되면 기업의 행태가 왜곡되거나 사회 전체의 리스크가 과도하게 높아질 수 있다.

2) 산출물효과와 요소대체효과

Harberger(1962)의 모형은 법인세의 귀착분석뿐 아니라 자원배분 왜곡효과를 분석하는 데도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법인소득 과세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어온 전통적인 문제

30)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V장에서 보다 상세하게 논의한다.

의 하나는 바로 법인부문과 비법인부문간의 자본배분의 왜곡문제이다. 경제를 법인부문과 비법인부문 등 두 개로 나눈다면 법인세는 법인부문에만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와 같은 왜곡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것을 Mieszkouwski(1967)는 산출물효과(output effect)라고 불렀다. 수요자 쪽에서의 한계대체율과 공급자 쪽의 한계변형률의 차이 때문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현상을 좀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어떤 기업이 그 조직형태로서 법인형태를 취할 것인가 또는 비법인형태를 취할 것인가의 선택이 법인세로 말미암아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다[31].

법인세는 법인부문의 자본에 대한 과세이다. 따라서 법인세는 법인부문과 비법인부문간이 실제로 부담하는 자본과 노동의 상대가격을 달라지게 한다. 이것은 요소집약도의 선택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 효과를 Mieszkouwski는 요소대체효과(factor substitution effect)라고 불렀다.

이 두 가지 효과가 부분요소세인 법인세가 야기하는 가장 중심적인 왜곡요인이다. [그림 Ⅲ-1]은 이 두 가지 효과를 잘 설명할 수 있는 Harberger 모형을 나타내고 있다. 이 그림에서 K와 L은 각각 자본과 노동을 나타내고 X는 법인부문 그리고 Y는 비법인부문을 나타낸다. t는 법인세율, 그리고 r과 w는 각각 자본과 노동의 가격을 나타낸다.

아무런 왜곡이 없을 경우 E점에서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산출물효과는 X부문에 대한 법인세의 부과로 X의 가격이 높아져서 이 재화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줄어든 효과를 나타낸다. 만일 이 효과만 있다면 균형은 아마도 E″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법인세 때문에 두 부문의 기술적 한계대체율이 다르

31) Gordon and Mackie-Mason(1994, 1997), Goolsbee(1997) 등 참조.

게 되어 계약곡선으로부터 벗어난 곳(E′)에서 균형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것이 요소대체효과이다. 부분요소세라는 성격 때문에 법인세는 생산물시장과 생산요소시장 모두에서 왜곡을 가져온다는 것이다[32].

[그림 III-1] Harberger 모형에서의 법인세의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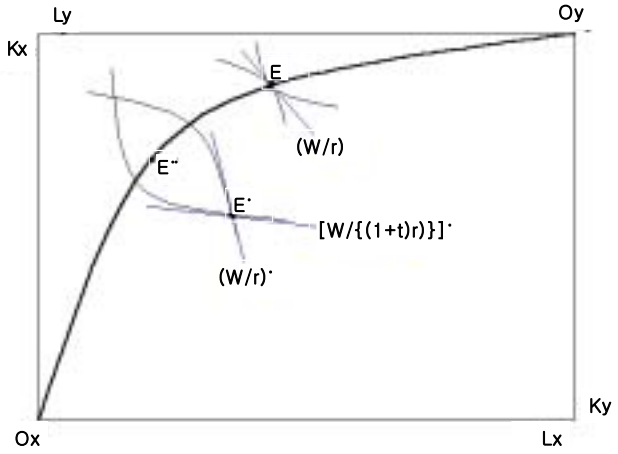

이러한 분석에 반론을 제기한 것은 Stiglitz(1973, 1976)였다. 그는 Harberger 등의 분석은 한계와 평균을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주장하고, 중요한 것은 한계투자자금의 조달과 관련된 왜곡의 문제인데 정상적인 기업들이 차입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면 당연히 한계적인 투자자금의 조달은 차입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신고전학파적 관점을 전제로 하고, 거기에다 감가상각이 진정한 경제적 감가상각을 반영하는 것으로 가정한다면 법인세는 기업의 투자자금 조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지급이자를 비용

32) 왜곡의 가짓수가 더 많다는 것이 반드시 초과부담의 크기의 합이 더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으로 공제해 주는 제도 때문에 차입자금의 자본비용은 결국 법인세율과 상관없이 항상 시장의 균형이자율과 같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법인세가 럼섬세처럼 전혀 왜곡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주장한다[33].

기업이 100% 차입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감가상각은 경제적 감가상각률로 이루어진다면 평균적으로도 법인세의 과세베이스는 경제적 이윤이 되기 때문에 럼섬세가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업이 100% 차입자금으로 운영되지 않으며 한계적으로도 기업의 재원조달이 차입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서 감가상각이 경제적 감가상각과 같다는 보장도 없으며 그 밖에 투자세액공제 등 다양한 조세유인들이 법인세의 왜곡을 초래한다. Stiglitz의 주장에 대해서는 King(1975)의 반박이 바로 뒤따랐고 뒤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실증분석에서도 법인세의 왜곡이 여러 세목들 중에서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3) 소비와 저축

앞의 분석은 주로 정태적인 관점에서 사회적인 후생손실을 분석한 것이다. 법인세는 결국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이므로 동태적으로 보면 소비와 저축간의 선택, 즉 자본형성에도 영향을 준다. 저축이 자본에 대한 수익률에 영향을 받는가의 문제는 아직도 실증적으로 결론이 명확하게 나지 않은 문제로 잘 알려져 있다[34]. 이론적으로 보면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가 저축을 줄일 수 있지만 증가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자본소득에 대한 과

33) 이러한 주장은 귀착분석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법인세가 럼섬세라면 다른 주체에게로 전가되지도 않는다.

34) Boskin(1978)은 저축의 이자탄력성이 상당히 높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발표하였고 그 전의 분석가들이나 Howrey and Hyman(1978)은 그렇지 않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Kotlikoff(1984)의 서베이를 참고하면 저축과 조세에 관한 논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세가 저축을 증가시키는지 또는 감소시키는지의 문제는 경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경험적으로 이자율의 변동이 저축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분리해 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문제는 그것이 저축의 수준을 높이는가 아니면 줄이는가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저축과 소비에 대한 의사결정이 영향을 받아 왜곡되지 않은 최적 상태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데 있다.

일반소비세는 적어도 현재소비와 미래소비간에 왜곡을 가져오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서 저축과 소비의 왜곡을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일반소득세, 즉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에 모두 과세하는 세금의 경우에도 현재소비와 미래소비간의 왜곡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일정한 세수를 전제로 한다면 과세베이스의 확대로 세율은 낮아질 것이고, 따라서 그만큼 왜곡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4) 국가간의 자본이동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이미 자본의 이동은 사실상 국경의 제약을 거의 받지 않은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생산요소의 이동이 국경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세계적인 관점에서 자본배분의 왜곡이 줄어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국가간의 자본소득과세가 완벽하게 조화되지 못한다면 세계화된 경제에서도 자본의 배분은 왜곡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국가경제의 관점에서 보면 법인세가 그 나라가 달성할 수 있는 후생의 극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5) 국경조정

법인세의 경우 그 세금의 국경조정을 정확하게 하는 것은 쉽

지 않다. 조세의 국경조정이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재화나 용역의 교역이 왜곡된다. 법인세를, 동일한 세수를 가져다 주면서 국경조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조세, 예컨대 부가가치세로 대체한다면 이와 같은 왜곡이 개선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도 법인세에 의한 자원배분의 왜곡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6) 법인세와 조세유인

WTO 체제하에서 많은 종류의 조세감면이 금지보조금으로 분류되고 있어서 법인세를 통한 조세유인정책의 중요성은 훨씬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지만, 아직도 기술개발이라든가 환경보전 등 특정한 활동의 지원을 위해서 그러한 정책수단들을 사용할 필요성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므로 법인세가 존재한다면 정책적 비과세 및 감면도 여전히 남아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간섭이 자원의 배분을 효율화했는가 아니면 비효율적이 되게 했는가의 문제는 이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법인세의 도입 자체가 자원의 배분을 왜곡한 것인데 거기에 다시 추가적인 왜곡을 도입하는 것이 자원배분의 왜곡을 심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이론적인 문제 이외에도 법인세를 통한 시장에의 간섭이 시장실패를 다루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어떠한 결론을 내리기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초과부담의 크기에 어떤 영향을 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7) 다른 요인들

법인세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세수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대형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나 부가가치세에 비해서 그 베이스가 작을 수밖에 없다. 베이스가 작다는 것은 동일한 세수를 얻기 위해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세수 단위당 초과부담이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만일 법인세가 비법인부문의 상대적 비대화를 가져온다면 그 부문은 성격상 영세서비스업이 중심을 이루기 때문에 조세제도 운영상의 어려움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그것이 동일한 과세베이스에 중복하여 과세하는 성격을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납세의무자의 납부비용이나 징수비용이 더 커질 수 있다. 특히 기업의 회계원칙과 세무회계원칙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런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

그러나 회계와 관련하여 이러한 단순한 관리비용의 문제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여야 할 것은 기업의 당기순이익이 과세베이스가 됨으로써 당기순이익의 계산을 왜곡시키려는 근본적인 인센티브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것은 결국 해당 기업에 관한 회계정보를 왜곡함으로써 그 기업과 관련된 기업 내 또는 기업 외의 의사결정을 왜곡시켜 경제 전체의 효율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측면은 불확실성과 위험부담행위에 관한 것이다. Gordon(1985)에 따르면 법인부분에 대한 높은 세율이 법인부문 자본의 세후 평균수익률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지만 이 부문의 위험을 줄여주는 효과 때문에 앞의 효과는 상쇄되며 따라서 법인세의 존재가 자원배분을 거의 왜곡시키지 않거나 오히려 효율을 개선하는 효과가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 초과부담의 실증적 측정

초과부담의 실증적 측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여를 한 연구자는 Harberger(1964a, 1964b, 1966)였다. 이 연구들에서 그는 선형화를 통한 근사화(linear approximation) 방법으로 조세의 초

과부담 실측을 시도하였고 이른바 Harberger의 삼각형이라는 표현을 탄생시켰다. 이 방법으로 Harberger(1966)는 1953~1959년의 법인세 초과부담을 측정하여 법인세 수입의 약 2.4%에서 7.0%에 달한다는 추정결과를 얻었다.

Shoven and Whalley(1972)는 Harberger가 사용한 동일한 자료와 가정하에서 일반균형모형을 풀어 초과부담을 구한 결과 초과부담이 2.2%에서 11.7%에 달한다는 추정결과를 얻었다.

조세의 초과부담 크기를 대형의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연구하려는 시도는 Ballard, Shoven and Whalley (1985)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세금을 1달러 더 거두어서 정부지출을 그만큼 늘릴 경우의 초과부담을 CGE(computaional general equilibrium)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이 모형은 매년의 정태적 균형을 계산하는 다부문 모형인데 5년 간격의 동태적 연결장치를 통해 동태적 성격을 부여하고 100년간의 시뮬레이션(20회의 균형해를 구함)을 실시하여 정상상태(steady state)에 근접한 해를 얻는 방법으로 한계초과부담(marginal excess burden)을 주요 세목별로 계산하였다. 1986년 세제개편이 있기 전의 미국조세 전체에 대해서 이들이 추정한 한계초과부담은 노동공급탄력성과 저축탄력성이 각각 0에서 0.15와 0.4까지 올라감에 따라 17.0%에서 33.2%까지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에 해당하는 자본소득세는 두 탄력성이 모두 0일 때는 18.1%로 추정되었고, 노동공급탄력성이 0.15 그리고 저축탄력성이 0.4로 가정되었을 때는 46.3%인 것으로 추정되어 여러 세목들 중에서 가장 초과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Jorgenson and Yun(1993)은 가격과 수익률이 주어진 상태에서 불확실성이 없는 무한의 시계(time horizon)를 가지고 동태적인 예산제약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대표적인 소비자를 가정하여 다음과 같은 후생함수를 설정한다.

$$V=\frac{1}{(1-\sigma)}\sum_{t=0}^{\infty}\left(\frac{1+n}{1+\gamma}\right)^{t}U_t^{1-\sigma}$$

이 식에서 n은 인구 성장률이고 σ는 시간간 대체탄력성의 역수이며 γ는 주관적인 시간선호율을 나타낸다. 그리고 U는 개인의 매기의 효용을 나타내는 함수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U_t=F_t(1+\mu)^t$$

이 식에서 F는 개인의 총소비(full consumption)를 나타내며 μ는 Harrod 중립적인 생산성 증가율을 나타낸다. 이렇게 설정된 후생함수를 예산제약하에서 극대화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사회적 지출함수를 구한다.

$$W(PF, D, V)=PF_0[\frac{(1-\sigma)V}{D^{\sigma}}]^{\frac{1}{1-\sigma}}$$

여기서 PF는 일인당 소비의 가격을 나타내며 V는 극대화된 후생을 각각 나타낸다. 그리고 D는 다음과 같이 표현되는 미래 가격변수들의 함수이다.

$$D=\sum_{t=0}^{\infty}\left[\frac{1+n}{(1+\gamma)^{\frac{1}{\sigma}}}\right]^{t}\prod_{s=0}^{t}(1+r_s)^{\frac{1-\sigma}{\sigma}}$$

위와 같이 구해진 사회적 지출함수에서 등가변화(equivalent variation)에 해당하는 후생변화를 구하는 식을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다.

$$\Delta W = W(PF_0, D_0, V_1) - W(PF_0, D_0, V_0) = W(PF_0, D_0, V_1) - W_0$$

여기서 물론 V_1은 측정하고자 하는 조세정책 실시 후의 후생을 나타낸다. 위와 같이 정의한 후생변화를 럼섬세로 재정을 조달하는 경우와 비교해서 조세의 초과부담을 계산하였다.

Jorgenson and Yun(1993)은 이러한 방법으로 1986년 세법개정 직전의 미국 세제와 개정 후 세제의 초과부담을 전체적으로 그리고 주요 세목별로 계산하였는데, 법인세를 보면 1985년 당시의 세법으로 한계초과부담이 세수의 84.2%였으나, 1986년 세법개정 후에는 44.8%로 크게 낮아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세율의 대폭인하를 주 내용으로 하는 1986년의 세법개정으로 법인세의 초과부담이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법인세로 1달러를 더 거두려고 하면 44.8센트의 사회적인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은 결코 작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들의 연구에서도 법인세가 다른 세목에 비해 초과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세의 초과부담은 세법개정 전에는 47.2%에서 세법개정 후에는 39.1%로 추정되어 법인세의 초과부담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으나 세법개정의 효과는 세율이 크게 낮아진 법인세 쪽에서 매우 강하게 나타났음을 보여주고 있다.

4. 법인세의 귀착과 초과부담에 관한 우리나라에서의 연구

국내에서 법인세에 관한 경제학적 연구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의 일이고, 법인세의 귀착과 초과부담에 대한 이론적 연구들은 외국에서는 이미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거의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제에 대한 국내에서의 이론적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국내 학자의 절대적인 숫자가 부족했던 것이 중요한 이유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조세의 귀착에 관한 실증연구가 많지 않지만 이나마도 대부분은 가계소비 또는 소득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할 수 있는 소비세나 소득세의 귀착분석에 관한 것이고 법인세의 귀착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심상달・박인원(1989)은 우리나라의 재정지출과 조세 전반을 포괄하는 재정귀착의 실증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중에 법인세의 계층별 부담 추정치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법인세 귀착의 이론적 근거에 바탕을 둔 실증분석이라고는 볼 수 없는 계층별 부담의 배분이며 이 문제가 그 연구의 중심 주제도 아니기 때문에 법인세 귀착에 관한 실증분석 논문이라고 거론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전영준(2003)과 김성태・이인실・안종범・이상돈(2003)은 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모형을 이용하여 법인세 정책의 여러 가지 효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분배효과를 같이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들에서는 법인세의 귀착분석 자체가 중심적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세의 귀착에 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법인세의 귀착분석이 일반균형분석을 불가피하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CGE모형을 법인세 효과분석에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되며 모형의 발전과 각종 탄력성 등 우리 경제를 나타내는 기본적 파라미터의 추정치 개선에 따라 더 안정된 귀착분석 결과가 산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35].

---

35) 김성태 등(2003)에서는 법인세를 다른 조세로 대체할 경우의 계층간 소득분배 효과를 분석하였다. 법인세를 소득세로 대체할 경우에는 지니계수가 하락하고 법인세를 부가가치세로 대체할 경우에는 지니계수가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석은 법인세의 소득계층간 귀착에 대한 사전적 가정에 주로 의존하는 것이다. CGE

한편, 법인세의 초과부담 관련 실증분석은 더욱 희귀한 실정이다. 윤건영・김종웅(1995)은 Jorgenson and Yun(1993)에서 사용했던 기법을 우리나라에 적용한 시도였다. 우리나라에서 조세의 자원배분 왜곡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거의 유일한 연구라고 할 수 있으나 Jorgenson and Yun(1993)에서 사용했던 것과 같이 잘 다듬어진 계량경제학적 일반균형모형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연구이기 때문에 방법론의 소개라는 의미가 더 중요하게 부각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법인세의 한계효율비용은 별도로 추정하지 않고 자본소득세와 근로소득세의 한계효율비용만을 추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개인 자본소득세의 세수 1원당 한계효율비용(초과부담)은 1.021원이고 근로소득세의 한계효율비용은 0.371로 추정되고 있다. Jorgenson and Yun(1993)에서 1986년 기준 개인자본소득세의 초과부담은 1.017이고 근로소득세의 초과부담이 0.376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추정치는 이 수치와 매우 유사한 수준이다.

위에서 인용한 김성태・이인실・안종범・이상돈(2003)도 법인세를 바꿀 때의 후생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모형을 이용한 연구는 아직 시작단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의미 있는 분석결과들이 도출될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36].

모형은 기능적 분배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에 더 적합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분석결과가 제시되지 않은 것이 다소 아쉽다.

36) 김성태 등(2003)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하면 법인세와 소득세의 완전통합,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하는 경우 등에 오히려 후생의 감소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의 법인세 정책방향을 시사한다기보다는 모형을 보다 정교하게 개선할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IV. 자본비용과 유효한계세율: 법인세와 경제활동

1. 자본비용과 유효한계세율

가. 자본사용자비용과 자본비용

법인세는 자본에 관한 과세이기 때문에 자본비용에 영향을 주고 그것을 통해서 경제주체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자본비용은 자본의 수요자의 입장에서 법인세의 영향을 파악하는 지표라고 말할 수 있으며 따라서 기업의 자금조달이나 투자 등의 행동을 분석하는 데 유용한 지표로 활용되어 왔다.

자본비용(cost of capital)이라는 용어와 자본사용자비용(user cost of capital)이라는 용어를 먼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자본비용이란 한계적인 투자자금 조달의 비용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은 세금을 고려한 한계적 차입이자율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여기에 대해서 자본사용자비용이란 자본재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비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본재를 임대해 주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면 그가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임대료는 자본재를 구입하는 데 들어간 자금의 기회비용 즉, 그 자금의 자본비용에다가 자본재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합한 금액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자본재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경제적 감가상각액으로 단순화해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므로 쉽게 말하면 자본사용자 비용은 자본비용에 경제적 감가상각을 합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법인세가 자본비용을 통해서 기업의 자금조달 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Modigliani and Miller(1958)에 의해서 촉발되어 지금까지 활발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고 법인세가 자본사용자비용을 통해서 실물투자에 미친 영향을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증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Jorgenson(1963)의 신고전파 투자이론에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의 실물투자와 자금조달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자본비용과 자본 사용자 비용도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다. 나아가서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자본소득에 대한 유효세율이라는 개념도 자본비용과 밀접한 관련하에서 정의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절에서는 자본비용과 유효세율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자본소득에 대한 조세를 분석하는 일반적인 방법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고 자금조달 행태와 투자에 대한 연구들은 뒤따르는 절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먼저 자본사용자비용의 기본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Jorgenson (1963)의 모형을 살펴본다. 이 모형에서는 미래에 대한 완전한 예측가능성하에서 미래이윤의 현재가치를 극대화하는 투자자를 상정하여 자본시장의 균형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q(t) = \int_t^{\infty} e^{-r(s-t)} c(s) e^{-\delta(s-t)} ds$$
$$= \int_t^{\infty} e^{-(r+\delta)(s-t)} c(s) ds$$

이 식에서 $q(t)$는 t기의 자본재의 가격을 나타내며 $c(s)$는 s기에서의 자본의 임대료(implicit rental value)를 나타낸다. r과 δ는 각각 할인율과 경제적 감가상각률을 나타낸다. 이 식을 t에 관해서 미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자본단위당 자본사용자비용을 얻을 수 있다[37].

$$c = (r+\delta)q - \dot{q}(t)$$

위의 식의 양변을 자본재가격으로 나누면 자본 1원당 자본사용자 비용을 나타내는 식을 얻는다.

$$\frac{c}{q} = (r+\delta) - \frac{\dot{q}(t)}{q}$$

Jorgenson(1963)은 이 모형에 법인세와 법인세제 내의 관련제도들을 도입하여 다음과 같은 자본사용자비용 모형을 도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법인세법상의 투자유인들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frac{c}{q} = \frac{(r+\delta)(1-k-\tau z)}{1-\tau}$$

위의 식에서 τ는 법인세율, k는 투자세액공제율, 그리고 z는 자본재 1원을 구입할 때 그것에 대하여 앞으로 계상할 수 있는 세법상 감가상각의 현재가치를 나타낸다.

이상의 모형은 법인이 부담하는 자본소득세만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단순하지만 현실에 있어서의 자본소득과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대로 분석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부문의 자본소득은 결국 개인에게 돌아가는데 그 과정에서 배당소득세나 자본이득세 등을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기업의 재원조달행위나 투자행위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법인부문의 세부담만을 보는 것으로

37) 이 식과 다음 식의 우변 맨 마지막 항은 실물자본의 가격상승(appreciation)을 나타내며 인플레이션을 나타내는 항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개인에 부과되는 자본소득세, 즉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와 자본이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등을 함께 포함시켜서 기업의 자본비용을 분석하기 시작한 연구들은 Stiglitz(1973, 1976), King(1974), Miller(1977), Auerbach 1979a, 1979b) 등이 있는데 이 중 Auerbach(1979b)는 자본비용에 관한 오늘날의 자본비용모형과 그 분석방법의 초석이 되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Auerbach(1979b)는 기업의 행동은 현재주주들의 부(wealth)의 극대화에 있다고 보고 불연속시간 모형을 이용하여 법인세, 배당소득세 그리고 자본이득세 등이 존재하는 경우의 기업의 자금조달 행태와 그에 따른 자본비용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의 중요한 결론은 부의 극대화가 기업의 시장가치 극대화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불확실성이 없는 경제에서도 자기자본에 의한 자금조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자본비용은 자금조달의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다시 말해서 자금조달의 한계적인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Stiglitz(1973)는 한계적인 자금조달의 원천은 차입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King(1974)이나 Auerbach(1979a, b) 등은 기업들이 한계적인 자금도달 원천이 반드시 차입에 한정되지 않게 되는 현실적·이론적 근거들을 제시한 바 있다.

최적재무구조가 존재하고 기업의 한계적인 자금조달은 이 비율을 유지하면서 이루어진다고 가정한다면 법인세뿐 아니라 개인소득세까지 있는 경우의 자본비용모형을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기자본 조달방식에 대한 가정이 필요한데 먼저 자기자금의 한계 원천은 신주발행이라는 “전통적인 견해”를 가정하고 분석을 전개한다[38].

우선 자산시장의 균형조건을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39].

$$(1-\theta)D_t+(1-c)\left(\frac{dV_t}{dt}-S_t\right)=rV_t$$

V는 회사의 시장가치, D는 배당, S는 신주발행액, θ는 대표적인 개인의 배당소득세율, c는 자본이득세율 그리고 r은 자본시장의 명목세후균형수익률을 각각 나타낸다. 주식보유의 기회비용과 그 주식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세후배당수입 및 자본이득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의 식을 V_t에 관해서 풀면 $\lim_{t\to\infty} V_t e^{-r(t-t_0)/(1-c)}=0$ 이라는 조건하에서 다음 식을 얻는다.

$$V_t=\int_t^{\infty}\left[\frac{1-\theta}{1-c}D_s-S_s\right]e^{-r(s-t)/(1-c)}ds$$

이 식은 t기의 주주들의 부를 나타내며 이것을 극대화하는 투자 및 재무정책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재무정책에 관해서는 앞에서 가정한 것처럼 전통적인 견해, 즉 배당성향이 정해져 있어서 새로운 투자를 자기자금으로 조달할 때의 원천은 신주발행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따른다.

V_t를 다음 조건들하에서 극대화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이다.

(i) 캐시플로우 균형방정식

$$D+B(1-\tau)i+(1-k-\tau z)q(I+\delta K)=(1-\tau)pF(K)+b+S$$

단, I는 순투자, B는 부채잔액, i는 차입이자율 그리고 b는 신규차입(부채발행)을 각각 나타낸다.

---

38) 이하의 논의는 윤건영(1988)에 크게 의존함.

39) 만일 자본이득과세에서 물가상승분이 공제되고 과세된다면 이 식의 우변에 $c\pi V_t$ 항이 더해져야 할 것이다. 여기서 π는 물론 물가상승률을 나타낸다.

(ii) $\dot{K}=I$

(iii) $\dot{B}=b$

(iv) $B=(1-k-\tau z)\beta qK$

여기서 $(1-k-\tau z)qK$는 대체투자비용(replacement cost) 즉, $(1-k-\tau z)q$로 평가한 총자본가액을 나타낸다. β는 총자산 중 부채비율을 나타낸다. 이것은 적정비율이라고 가정하며 기업은 이 비율을 유지한다.

(v)
$$\begin{aligned}\dot{B} &= (1-k-\tau z)\beta(\dot{q}K+q\dot{K}) \\ &= (1-k-\tau z)\beta\frac{\dot{q}}{q}Kq+(1-k-\tau z)\beta qK \\ &= \pi B+(1-k-\tau z)\beta qI = b\end{aligned}$$

위의 식에서 π는 물가상승률, πB는 적정부채자산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인플레에 의한 명목부채 총액의 증가분만큼 차입을 증대시킴을 나타낸다.

(vi) 정해진 것으로 가정된(전통적 견해) 배당성향을 γ라고 하면

$D=\gamma[(1-\tau)pF(K)-B((1-\tau)i-\pi)-(1-k-\tau z)q\delta K]$이 된다.

이 문제를 Maximum Principle을 이용하여 풀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자본사용자비용의 식을 얻는다.

$$\frac{pF'}{q}=\frac{1-k-\tau z}{1-\tau}(\rho^1+\delta)$$

단, 여기서

$$\rho^1 \equiv (1-\beta)\frac{r-\pi(1-c)}{1-[\gamma\theta+(1-\gamma)c]}+\beta[(1-\tau)i-\pi]$$

ρ^1은 신주발행이 자기자본조달의 한계적 원천이 된다는 전통적인 견해하에서 법인세 후 투자수익의 할인율을 나타낸다. 이 식에서 우변의 첫째 항은 개인소득세전 명목수익률을 자기자본비중 $(1-\beta)$으로 가중한 것이며 두 번 째의 항은 지급이자의 법인소득공제제도하에서 실질시장(차입)이자율을 최적부채비율(β)로 가중한 것이다. 즉 자기자본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후 명목수익률 r을 지급하고 차입금에 대해서는 시장이자율 i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자본의 사회적 총명목수익률이 ρ^1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자본사용자비용에서 경제적 감가상각률을 빼면 자본비용이 된다.

한편 Auerbach(1979a,b)는 배당에 대한 제약이 없어서 사내유보가 자기자금조달의 한계적 원천이 된다는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고 그러한 견해의 이론적 그리고 현실적 타당성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견해하에서는 위의 제약식 중에서 배당과 관련된 제약식 (vi)이 없어지는 대신 투자가 신주발행과 무관하다는 다음과 같은 제약식이 들어오게 된다.

(vi′) $\frac{\partial S}{\partial I}=0$

이 제약식을 이용하여 위의 문제를 풀면 다음과 같은 새로운 견해하에서의 자본사용자비용 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frac{pF'}{q}=\frac{1-k-\tau z}{1-\tau}(\rho^2+\delta)$$

단, 여기서

$$\rho^2 = (1-\beta)\frac{r-\pi(1-c)}{1-c} + \beta[(1-\tau)i-\pi]$$

나. 유효세율

위의 자본사용자비용에서 자금의 기회비용인 자본비용을 도출할 수 있고 이것은 자본에 대한 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 다시 자본소득의 유효세율(effective tax rate)이라는 개념을 도출할 수 있다. 자본소득에 대한 조세가 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유효세율이라는 개념으로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인세 등 자본소득세가 경제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자본비용(또는 자본사용자비용)이라는 지표를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유효세율이라는 개념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이들 지표 모두 복잡한 자본소득조세제도를 매우 간단하고 투명하게 요약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유효세율은 국가간, 시점간 그리고 프로젝트간의 자본소득세제도 등의 차이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도 한다.

Jorgenson(1963)의 자본사용자비용 모형에서 Jorgenson and Sullivan(1981)은 유효한계법인세율 개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자본의 사회적 수익률을 ρ^*, 유효한계세율을 e라고 표시하면 유효한계세율과 세법상 한계세율간에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1-e)\rho^* = (1-\tau)r$$

이 식을 다시 쓰면 다음과 같은 관계를 얻는다.

$$e\rho^* = (\rho^* - r) + \tau r$$

유효세부담(위 식의 좌변)은 수익률의 왜곡에 의한 초과부담

($(\rho^* - r)$과 실제의 세금납부액(τr)을 합한 것과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자본의 사회적 임대비용을 c^*라고 한다면 이것과 ρ^*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c^* = q(\rho^* + \delta) \qquad \text{또는} \quad \rho^* = \frac{c^*}{q} - \delta$$

이 ρ^*가 바로 자본비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앞에서 도출한 자본사용자비용의 식에서 이 식이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rho^* = \frac{1 - k - \tau z}{1 - \tau}[r(1 - \tau) + \delta] - \delta$$

그러므로 유효한계법인세율의 식은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다.

$$e = 1 - \frac{1}{\rho^*}(1 - \tau)r \;=\; 1 - \frac{(1 - \tau)r}{\frac{1 - k - \tau z}{1 - \tau}[r(1 - \tau) + \delta] - \delta}$$

관찰된 실제 수익률과 세율 그리고 경제적 감가상각률만 있으면 유효한계세율이 계산될 수 있는 것이다.

자본이 부담하는 세금을 분석하거나 비교 평가할 때 법인세 이외에도 개인단계의 소득세를 고려해야 하고 자산의 보유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그러한 세금(재산세, 고정자산세 또는 순자산세 등)도 함께 분석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러한 세금들을 함께 고려할 때 기업이나 개인의 재무행태가 영향을 받으며 그러한 선택이 결과적으로 자본비용과 유효한계세율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자본소득에 대한 조세를 포괄하여 유효한계세율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러한 개념을 따라 주요국의 자본소득과세를 비교하는 연구를 주도한 King and Fullerton(1984)의 기여는 특기할 만하다. 그들의 연구에서 채택된 기본적인 한계유효

세율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우선 그들은 세부담(tax wedge, w)을 한계투자의 세전실질수익률(p)과 저축자에게 돌아가는 세후의 실질수익률(s)의 차이로 나타낸다.

$$w = p - s$$

그리고 한계세율을 다음과 같이 세포함가격세율과 세후가격세율로 정의한다.

$$t = \frac{w}{p}$$

$$t_e = \frac{w}{s}$$

한편 명목이자율(i)에서 인플레이션율(π)을 뺀 실질이자율을 r이라고 하면 세전수익률 p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p = c(r)$$

여기서 $c(r)$은 자본비용함수로서 조세제도의 여러 가지 특성 등을 반영한다. 그리고 개인저축자에 대한 세후 실질수익률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s = (1-m)(r+\pi) - \pi - w_p$$

이 식에서 m은 명목이자소득에 부과되는 개인의 한계소득세율이고 w_p는 부에 대한 개인의 한계세율을 나타낸다. 세금이 없다면 당연히 $p = s = r$이 될 것이다.

한편, 한계투자의 조수익률을 MRR이라고 하면 p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p = MRR - \delta$$

이제 이러한 프로젝트(조수익률이 MRR인 사업에 1원을 투자하는)의 현재가치는 다음 식으로 쓸 수 있다.

$$V = \int_0^{\infty} (1-\tau) MRR \; e^{-(\rho+\delta-\pi)u} du \; = \; \frac{(1-\tau)MRR}{\rho+\delta-\pi}$$

위의 식에서 τ는 법인세율을, 그리고 ρ는 회사가 캐시플로우를 할인하는 명목할인율을 나타낸다.

최초 투자액이 1원이지만 세제상의 투자유인 등 프로젝트의 비용을 낮추어주는 제도적 요인(투자세액공제나 가속상각 등)이 있는 경우 그러한 유인의 총가치가 A라면 투자의 비용 C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40].

$$C = 1 - A$$

위에서 제시한 프로젝트의 가치 V가 프로젝트의 코스트 C와 일치할 수 있게 해주는 MRR은 이 프로젝트가 채택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수익률이다. 만일 MRR이 외생적으로 주어진 것이라면 V와 C가 일치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할인율(이 경우 내부수익률) ρ는 이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조달을 위해서 이 회사가 부담할 수 있는 최대의 세후(net of tax) 이자율이라고 할 수 있다.

V와 C가 같다고 하면 위의 식들에서 다음과 같이 p를 나타내는 식을 구할 수 있다.

$$p = \frac{(1-A)}{(1-\tau)}(\rho+\delta-\pi) - \delta$$

---

40) 예를 들어, 투자세액공제와 가속감가상각만 있는 경우 $A = k + \tau z$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것이 세전실질수익률을 나타내는 기본모형이다. 실제 조세제도, 특히 세법상 감가상각제도 등에 따라 A의 값을 계산해서 대입할 수 있고 자금조달에 대한 가정에 따라 적절한 ρ값을 주면 바로 w와 유효한계세율을 계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지급이자를 법인세 베이스에서 공제할 수 있는 제도하에서 차입에 의한 자본조달의 경우 할인율은 다음과 같아진다.

$$\rho = i(1-\tau)$$

자기자본에 의한 조달의 경우 전통적 견해를 따르는가 아니면 새로운 견해를 따르는가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진다[41].

Jorgenson(1993)은 한계자본소득세부담을 법인부문의 부담과 개인부문의 부담으로 다음과 같이 나누고 한계유효세율도 두 단계로 나누는 방법을 제시하여 실증분석에 이용하였다[42].

$$w = w_c + w_p$$
$$w_c = p - q$$
$$w_p = q - s$$

단, 여기서 q는 법인세후, 그러나 개인소득세전의 수익률을 나타낸다. 지급이자를 법인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경우 이 수익률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을 것이다.

$$q = (1-\tau)i - \pi$$

그러면 법인부문의 한계유효세율 t_c와 개인부문의 한계유효세율 t_p는 각각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

41) 자본비용에 관한 앞절에서의 논의 참조.
42) 이 방법은 Jorgenson and Yun(1991)에서도 이용되었다.

$$t_c = \frac{w_c}{p} = \frac{p-q}{p}$$

$$t_p = \frac{w_p}{q} = \frac{q-s}{q}$$

다. 실증분석

자본비용과 관련된 실증분석은 국가간의 자본소득에 대한 한계적 세부담을 비교분석하거나 중요한 세제개편을 전후해서 그러한 개편의 효과를 측정하려는 목적으로 주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자본비용 그 자체보다는 한계유효세율을 측정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자본비용이나 유효세율에 관한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의 하나가 경제적 감가상각률(δ)인데 Hulten and Wykoff(1981)의 연구가 이 문제를 해결하여 자본소득세에 관한 실증연구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자본소득세와 관련된 거의 모든 연구는 데이터나 방법론에서 이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

Jorgenson and Sullivan(1981)은 이 절의 앞 부분에서 살펴보았던 유효한계법인세율 모형을 이용하여 미국의 한계유효법인세율을 자산별, 주요 산업별로 1953, 1957, 1960, 1966, 1973, 1979년에 대해서 측정하였다.

King and Fullerton(1984)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개인소득세를 포함하는 유효한계자본소득세율을 측정할 수 있는 실제적인 모형을 개발하였고 이 모형을 이용하여 미국, 영국, 독일 그리고 스웨덴 등 4개국의 연구자들과 함께 1980년의 이들 국가의 유효한계자본소득세율을 자산별, 산업별, 자금조달원천별 그리고 소유자별[43]로 측정하였다.

OECD(1991)는 OECD 회원국의 제조업 부문 한계유효세율을

자산형태 및 자본조달 형태별로 추정하였다. 이 연구는 특히 자본소득세의 국제조세관련 장치들을 King and Fullerton(1984) 모형에 도입하여 그 모형을 확장하였다.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1992)는 OECD(1991)에서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1991년 1월 현재의 EU 회원국의 유효한계세율을 추정하였다.

Jorgenson and Yun(1991)은 기본적으로 King과 Fullerton의 접근방법을 사용하면서 법인부문의 유효세율과 개인부문의 유효세율을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미국의 유효한계자본소득세율을 추정하였다. 1947년부터 1986년까지의 유효세율 시계열을 법인부문과 비법인부문 그리고 가계부문 등으로 나누어 자산형태별로 추정하였다. 비법인기업과 가계의 실물자산투자에 대한 유효한계세율을 추정한 것은 종전의 다른 연구들과 차별화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연구는 1980년대 초에 이루어졌던 다양한 조세지원조치들의 효과를 분석하였고 특히 1985년에 제시되었던 여러 세제개혁의 대안들(1986년 세제개편에 대한)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였다.

Jorgenson and Landau(1993)는 Jorgenson을 중심으로 하는 9개국 경제학자들이 King and Fullerton(1984)의 연구를 확장하고 업데이트하는 연구를 수행한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스웨덴, 영국, 미국 등 9개국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산별, 산업별, 재원조달별 그리고 소유자의 유형별로 1986년 세제개혁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수 있도록 1980~1990년간의 기간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자본소득에 대한 조세를 Jorgenson and Yun(1991)에서처럼 법인단계와 개인단계로 나누어 한계유효세율을 계산하고 있으며 비법인부문의 투자까지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

43) 자본의 소유자를 가계, 면세기관 그리고 보험회사 등으로 분류함.

<표 Ⅳ-1> 자본소득에 대한 한계유효세율의 국제비교

(단위 : %)

구분		호주	카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스웨덴	영국	미국
		1980								
자산	기계	42.8	24.8	57.9	43.0	14.1	17.9	-1.1	-7.0	13.3
	건물	59.2	42.9	57.9	37.1	20.6	16.2	32.2	38.8	37.4
산업	제조업	55.1	28.2	65.6	43.9	18.4	21.5	18.4	-1.3	48.2
	기타	47.6	39.3	70.2	49.2	23.4	9.6	44.6	12.8	12.8
자금조달	차입	13.6	21.4	43.7	12.5	-16.6	-31.9	0.3	114.7	-10.4
	신주	79.1	50.5	75.9	61.8	85.8	65.9	68.9	20.5	75.1
	유보	59.7	49.3	85.0	87.3	47.1	60.5	49.9	12.7	55.5
법인전체		55.4	33.5	66.6	43.1	20.5	18.2	23.9	8.9	33.7
		1985								
자산	기계	8.2	28.6	50.5	39.4	11.7	17.6	24.9	16.8	3.8
	건물	40.5	44.7	63.9	30.5	23.4	14.5	36.2	51.7	28.7
산업	제조업	29.6	29.9	65.5	39.2	17.5	17.0	31.3	30.2	40.3
	기타	17.3	42.1	71.4	44.1	24.2	16.6	60.1	30.1	6.4
자금조달	차입	-6.1	27.1	40.1	4.6	-30.2	-39.4	9.9	49.1	-18.8
	신주	64.3	50.9	104.8	56.6	78.9	67.7	71.6	25.5	68.2
	유보	45.6	49.8	87.4	85.1	50.1	65.5	58.7	41.0	50.2
법인전체		32.5	35.9	67.0	38.3	21.3	16.7	33.9	34.9	26.2
		1990								
자산	기계	33.9	32.9	43.0	36.7	18.2	29.4	19.4	23.0	34.1
	건물	36.1	47.2	44.7	29.7	38.8	25.3	28.7	55.2	39.6
산업	제조업	39.0	38.5	51.0	32.3	23.3	27.8	n.a.	35.5	46.4
	기타	34.9	42.1	53.9	40.9	25.7	28.2	n.a	32.7	28.8
자금조달	차입	21.7	33.7	34.3	-1.4	-28.0	-8.3	16.0	35.1	8.8
	신주	31.2	60.3	93.1	50.6	81.4	76.7	46.2	25.5	64.1
	유보	59.0	49.6	97.5	76.3	59.2	66.2	43.3	43.8	53.3
법인전체		38.6	40.2	53.8	31.9	27.8	27.7	28.5	37.9	38.5

자료: Jorgenson and Landau(1993) pp. 18~21에서 발췌 작성

<표 Ⅳ-1>에 이 추정작업의 주요 결과가 요약되어 있다. 국가별로 자본소득과세제도의 차이가 상당히 큰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1980년대 중반의 세계적인 세제개혁을 통해서 현저히 완화되는 추세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본조달방식에 따른 자본소득세 부담의 차이는 여전히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나타나고 있다.

라. 우리나라에서의 연구

우리나라에서 법인세의 자본비용과 유효세율에 관한 연구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곽태원(1985)에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Jorgenson(1963)의 자본사용자비용을 우리나라의 제도와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Jorgenson and Sullivan(1981)에서 도출한 한계유효법인세율을 우리나라의 자료로 계산하였다. 1960년에서 1983년까지의 기간을 포괄하기 때문에 특히 공업화의 초기와 중화학공업화 과정에서의 조세유인정책을 분석하는 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소득세까지 포함한 종합적 접근이 아니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산업별 및 자산 형태별로 경제적 감가상각률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내었다는 점과 우리나라의 감가상각제도, 각종 준비금제도, 조세휴일(특정기간 조세감면), 자산재평가제도 등 여러 가지 제도를 자본사용자비용을 나타내는 식에 반영시켰다는 점이다. 이 방법에 의한 사용자비용과 유효세율의 추정은 그 뒤의 기간으로 연장되지 않았지만 이 연구의 결과는 특히 중화학공업화 과정의 산업정책분석에 다양하게 활용되었다[44].

---

44) 곽태원(1986), Kwack(1990), Kwack and Choi(1990), 유정호(1995), Kwack and You(2000)등 참조.

그 뒤의 유효세율에 관한 실증연구는 모두 기본적으로 King and Fullerton(1984)의 방식을 따르고 있다. 윤건영(1988)은 소득세를 포함한 자본비용식의 도출방법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자본비용과 유효세율을 추정하는 연구의 교두보를 제공한다. 그 뒤로 윤건영・임주영(1993), 원윤희(1996), 윤건영・김종웅(1997), 원윤희・현진권(2000), 나성린・안종범・원윤희(2004) 등 비교적 풍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윤건영・임주영(1993)은 우리나라의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에서 자본비용의 분석방법을 원용한 것이므로 자본비용이나 유효세율의 추정이 주목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원윤희(1996)는 1983~1995년간의 그리고 윤건영・김종웅(1997)은 1982~1997년간의 주요 연도의 한계유효세율을 추정하였다.

특히 주목할 만한 연구는 원윤희・현진권(2000)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그동안 연구에서 누적된 자료와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1960년에서부터 1998년까지 매년의 한계유효세율을 기업규모별로, 재원조달방법별로 그리고 투자자산별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특기할 만한 것은 Jorgenson and Landau(1993)방식으로 법인단계와 개인단계의 유효세율로 분해하여 추정하였다는 점이다. 이들의 연구결과는 우리나라의 법인소득에 대한 유효한계세율이 1970년대 후반에 가장 낮았으며 OECD 주요국들과 비교할 때도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표 Ⅳ-3>참조). 원윤희・현진권(2000)의 추정결과는 <표 Ⅳ-2>에 정리되어 있다.

가장 최근의 연구로 나성린・안종범・원윤희(2004)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법인세 유효세율을 분석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조세지원의 효과평가를 시도하였다.

<표 Ⅳ-2> 총한계유효세율

(단위 : %)

	한계유효세율	대기업	중소기업	재원조달			재원운용		
				차입	증자	유보	건물	기계	기타
1960	0.332	0.325	0.373	0.290	0.575	0.246	0.328	0.389	0.319
1961	0.046	0.039	0.089	-0.015	0.243	0.177	0.046	0.093	0.034
1962	0.154	0.151	0.171	0.134	0.271	0.104	0.152	0.176	0.148
1963	0.150	0.147	0.171	0.123	0.289	0.125	0.149	0.178	0.143
1964	0.146	0.142	0.174	0.109	0.312	0.151	0.146	0.181	0.138
1965	0.146	0.142	0.174	0.109	0.312	0.151	0.146	0.181	0.138
1966	0.141	0.137	0.171	0.097	0.325	0.167	0.142	0.180	0.131
1967	0.134	0.134	0.129	0.092	0.317	0.141	0.158	0.038	0.148
1968	0.051	0.035	0.157	-0.108	0.562	0.404	0.110	0.017	0.038
1969	0.051	0.035	0.157	-0.108	0.562	0.404	0.110	0.017	0.038
1970	-0.005	-0.027	0.177	-0.107	0.566	0.449	0.020	-0.057	-0.004
1971	-0.033	-0.054	0.195	-0.115	0.565	0.232	-0.010	-0.088	-0.029
1972	0.250	0.240	0.341	0.039	0.587	0.396	0.262	0.182	0.256
1973	0.173	0.164	0.257	0.037	0.617	0.394	0.189	0.085	0.179
1974	0.134	0.123	0.259	0.032	0.618	0.368	0.154	0.048	0.140
1975	-0.268	-0.289	-0.009	-0.432	0.533	0.478	-0.214	-0.510	-0.243
1976	-0.271	-0.289	-0.055	-0.460	0.523	0.476	-0.189	-0.479	-0.218
1977	-0.281	-0.300	-0.055	-0.475	0.534	0.487	-0.198	-0.486	-0.229
1978	-0.255	-0.295	-0.044	-0.436	0.534	0.435	-0.196	-0.479	-0.208
1979	-0.337	-0.383	-0.061	-0.445	0.449	0.462	-0.266	-0.568	-0.292
1980	-0.357	-0.394	-0.051	-0.436	0.531	0.239	-0.301	-0.608	-0.335
1981	-0.153	-0.204	-0.009	-0.288	0.583	0.396	-0.071	-0.356	-0.137
1982	-0.160	-0.194	0.014	-0.273	0.545	0.489	-0.099	-0.385	-0.134
1983	0.032	0.028	0.059	-0.127	0.490	0.374	0.057	-0.217	0.045
1984	-0.003	-0.014	0.053	-0.136	0.482	0.347	0.038	-0.240	0.019
1985	-0.033	-0.050	0.053	-0.147	0.474	0.339	0.007	-0.274	0.004
1986	-0.025	-0.045	0.056	-0.163	0.458	0.329	0.031	-0.302	0.031
1987	0.009	-0.002	0.057	-0.152	0.473	0.330	0.044	-0.268	0.050
1988	0.105	0.118	0.061	-0.141	0.464	0.342	0.145	-0.148	0.146
1989	0.046	0.048	0.040	-0.143	0.480	0.357	0.076	-0.230	0.079
1990	-0.051	-0.075	0.039	-0.138	0.453	0.336	-0.017	-0.354	-0.021
1991	0.138	0.130	0.179	0.084	0.551	0.327	0.167	-0.164	0.171
1992	0.154	0.146	0.206	0.080	0.564	0.338	0.181	-0.125	0.188
1993	0.190	0.185	0.203	0.098	0.552	0.310	0.220	-0.089	0.226
1994	0.171	0.160	0.209	0.110	0.533	0.296	0.194	-0.112	0.202
1995	0.167	0.157	0.219	0.106	0.524	0.276	0.174	0.094	0.210
1996	0.040	0.018	0.169	-0.001	0.433	0.234	0.012	-0.237	0.114
1997	0.073	0.058	0.167	0.052	0.440	0.269	0.003	-0.071	0.098
1998	0.261	0.266	0.245	0.203	0.547	0.308	0.202	0.028	0.261

자료 : 원윤희 · 현진권(2000)

<표 Ⅳ-3> 우리나라와 주요 외국의 한계유효세율

(단위: %)

	한계유효세율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스웨덴	영국	미국	한국
1980	tc	41.4	10.3	-30.3	16.2	-94.4	7.6	-19.7	-53.3	33.8	-46.3
	tp	23.4	20.0	73.6	33.0	58.0	15.0	31.8	33.9	21.8	7.2
	t	55.1	28.2	65.6	43.9	18.4	21.5	18.4	-1.3	48.2	-35.7
1985	tc	13.6	11.2	-35.3	11.1	-100.3	1.0	-0.9	14.7	27.5	-20.2
	tp	18.5	21.2	74.5	31.6	58.8	16.2	31.9	18.2	17.7	14.1
	t	29.6	30.0	65.5	39.2	17.5	17.0	31.3	30.2	40.3	-3.3
1990	tc	15.0	24.5	-37.3	5.2	-78.4	6.7	-	24.8	34.0	-22.5
	tp	28.2	18.5	64.3	28.6	57.0	22.6	-	14.2	18.8	14.2
	t	39.0	38.5	51.0	32.3	23.3	27.8	-	35.5	46.4	-5.1
1995	tc	-	-	-	-	-	-	-	-	-	-11.2
	tp	-	-	-	-	-	-	-	-	-	25.1
	t	-	-	-	-	-	-	-	-	-	16.7

자료 : 한국을 제외하고 Jorgenson and Landau(1993), 원윤희・현진권(2000)에서 재인용.

2. 법인세와 기업의 재무행태[45]

가. 자본소득세와 기업의 재무행태

자본소득에 대한 조세는 기업의 자본비용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다시 기업의 재무행태에 영향을 준다. 기업의 재무행태에 관한 경제학적 연구에 불을 붙인 것은 Modigliani and Miller(1958)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자본조달의 구성은, 조세와 거래비용 그리고 파산비용 등이 없고 자본시장이 완전한 경제에서는,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이른바 Modigliani-Miller theorem을 주장하였다. 그 뒤에 Miller and Modigliani (1963), Stiglitz(1973), King(1974, 1977), Miller(1977) 등 많은

45) 이 부분은 Auerbach(1983a, 2002)에 크게 의존하였다.

연구들이 자본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때문에 생기는 기업 재무행태의 변화를 연구하였다. 재무행태에 영향을 주는 자본소득세의 특성 중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문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1)법인소득세에서 이자지급은 비용으로 공제되는 데 비해서 배당은 그렇지 않다는 점과 (2)배당소득에 대한 세율과 자본이득에 대한 세율에 차등이 있고 특히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이 자본이득에 대한 세율보다 높다는 점 그리고 (3)개인소득세율이 누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첫 번째의 문제는 기업의 차입정책에 강력한 영향을 준다. 다른 제약이 없다면 기업은 부채로 모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유리하다. 두 번째의 문제는 기업의 자기자본조달 정책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신주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것인가 아니면 사내유보로 자금을 조달할 것인가의 문제 즉 배당지급의 문제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좀 더 현실적으로 기업의 차입정책이나 자기자본조달정책의 여러 가지 행태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된 이론적인 연구는 앞에서 살펴본 자본비용에 관한 연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자본비용과 재무정책에 대한 대표적 서베이 논문이라고 할 수 있는 Auerbach(1983, 2002)의 접근을 따라 자기자본정책과 차입정책 등으로 나누어 이론적인 연구성과를 정리한다.

나. 기업의 자기자본조달 정책

앞에서 사용했던 가정들과 부호(notation)들을 그대로 사용한다. 먼저 앞에서 사용했던 자산시장의 균형조건을 다음과 같이 다시 쓴다.

$$(1-\theta)D_t+(1-c)\left(\frac{dV_t}{dt}-S_t\right)=rV_t$$

여기서 r은 (개인)투자자의 세후 균형수익률이다. 이 방정식을 풀어서 다음과 같은 기업가치의 식을 구했었다.

$$V_t=\int_t^{\infty}\left[\frac{1-\theta}{1-c}D_s-S_s\right]e^{-r(s-t)/(1-c)}ds$$

이 식은 어떤 배당정책이나 신주발행정책에라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기업의 자기자본정책을 분석하는 기본모형으로 사용할 수 있다.

기업의 자기자본정책과 관련된 몇 가지 제약조건을 생각한다. 우선 가장 일반적인 조건으로 캐시플로우를 나타내는 식을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이 식에서 G_t는 기업활동을 통한 해당기간 동안의 순수입이다.

$$G_t\equiv D_t-S_t$$

그리고 배당과 관련된 제약을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D_t\geq\gamma(D_t+\tilde{V}_t-S_t)$$

앞에서는 γ를 정해진 배당성향을 나타내는 파라미터로 사용했지만 여기서는 최소한의 배당성향이라고 해석한다. 다시 말해서 실제로 선택된 배당성향은 이것보다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주발행이 마이너스가 될 수 없다는 가정, 다시 말해서 기업의 자사주 매입이 제한된다는 가정을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S_t\geq 0$$

위의 세 가지 제약식을 반영하는 Lagrangean을 만들고 이 식에 포함된 $\dot{V_s}$를 소거하여 정리하면 다음 결과를 얻는다.[46]

$$V_t = \int_t^{\infty} e^{-\int_t^s \frac{r}{(1-c)(1-\lambda_v\gamma)}dv} \frac{1}{1-\lambda_s\gamma}[G_s(1-\lambda_s\gamma-\mu_s) + D_s\left(\frac{1-\theta}{1-c}-1+\lambda_s+\mu_s\right)]ds$$

이 식에서 λ는 배당과 관련된 제약조건의 라그랑지 승수이고 μ는 신주발행과 관련된 제약식의 라그랑지 승수이다. 위의 식을 D에 관해서 극대화하기 위한 1계의 조건은 $\lambda_s+\mu_s=1-(1-\theta)/(1-c)$이므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가치의 식은 다음과 같이 다시 쓸 수 있다.

$$V_t = \int_t^{\infty} e^{-\int_t^s \frac{r}{(1-c)(1-\lambda_v\gamma)}dv}\left(1-\frac{\mu_s}{1-\lambda_s\gamma}\right)G_s ds$$

1계의 조건 $\lambda_s+\mu_s=1-(1-\theta)/(1-c)$에서 $\theta>c$라면 λ와 μ 중에서 적어도 하나의 승수는 영이 아니어야 한다. 앞의 Lagrangean에서 G는 주어져 있는데 D를 증가시키려면 S를 증가시켜야 하며 이와 같이 배당을 늘리기 위해 신주를 발행하게 되면 세부담이 더 커지게 되고 기업가치는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기업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신주발행과 배당을 함께 줄여가는 것이 필요한데 신주발행과 배당에 관한 제약 중 어떤 제약이든지 먼저 저촉되게 되면 이러한 과정은 그치게 된다. 따라서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자기자본정책을 $\mu=0$이고 $\lambda>0$인 경우와 $\lambda=0$이고 $\mu>0$인 경우 그리고 두 파라미터 모두 영보다 큰 경우 등 세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

46) Auerbach(2002) p. 1257 참조.

먼저 $\mu=0$이고 $\lambda>0$인 경우에는 기업의 가치를 나타내는 식은 다음과 같아진다.

$$V_t=\int_t^{\infty} e^{-\int_t^s \frac{r}{(1-c)(1-\lambda_v\gamma)}dv} G_s ds$$

이 식에서 $\lambda=1-(1-\theta)/(1-c)$를 이용하면 기업의 할인율은 $r/[1-(1-\gamma)c-\gamma\theta]$가 된다. 이러한 경우를 Poterba and Summers(1985)는 "전통적 견해"라고 불렀는데 이 경우가 기업은 1원의 투자가 1원의 가치를 가질 때까지 투자하며 또 배당소득세나 자본이득세의 인상은 기업의 할인율이 올라가게 할 것이라는 전통적인 생각을 잘 반영하기 때문이다.

한편 $\lambda=0$이고 $\mu>0$인 경우에는 기업의 가치를 나타내는 식은 다음과 같아진다.

$$V_t=\int_t^{\infty} e^{-\frac{r}{(1-c)}(s-t)}\left(\frac{1-\theta}{1-c}\right)G_s ds$$

이러한 경우는 King(1974), Auerbach(1979a), Bradford(1981) 등에 의해서 연구되었는데 특히 Auerbach(1981)에 의해서 "새로운 견해(new view)"라고 불려졌다. 새로운 견해를 나타내는 위의 식의 특징은 첫째로 기업의 할인율은 배당소득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과 둘째로 기업의 순현금흐름은 1보다 작은 값 $[(1-\theta)/(1-c)]$으로 곱해진다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는 기업은 신주발행을 하지 않을 것이며 한계적인 자기자금조달원천은 사내유보가 될 것이다. 그리고 1원투자의 가치는 균형에서 1보다 작아지는 결과, 즉 토빈의 q가 균형에서 1보다 작아지는 결과 $[q=(1-\theta)/(1-c)<1]$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배당소득세는 자본비용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따라서 투자에도 영향을 주지 않지만 그 세금을 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에 자본화되어 기업의 가치를 낮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두 가지 제약이 모두 유효한 경우, 즉 두 승수가 모두 0보다 큰 경우에는 기업은 최소한의 배당만을 지급하며 신주는 발행하지 않을 것이다. 자본비용과 기업의 가치는 위의 두 경우의 사이에서 결정될 것이다.

Auerbach(1983a, 2002)는 기업의 자기자본조달정책 선택을 [그림 Ⅳ-1]로 설명한다. 자기자본의 공급곡선은 배당소득세와 자본이득세율의 차이 때문에 그림에서처럼 계단모양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자금의 수요가 많은 기업(DH)은 전통적인 견해의 영역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으므로 높은 자본비용을 부담하고 자금수요가 낮은 기업(DL)은 새로운 견해의 영역에서 보다 자본비용이 낮은 사내유보로 한계투자재원을 조달할 것이다. 그리고 그 두 경우의 중간영역이 존재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자금수요가 높은 기업은 아직 성장단계에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 자금수요가 낮은 기업은 보다 성숙한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Sinn(1991)은 기업들이 전통적 견해의 영역에서 시작해서 새로운 견해의 영역으로 이동해 간다는 소위 “핵 이론(nucleus theory)”를 제시하였고 Judd and Peterson(1986)이 배당소득과 자본이득에 대한 차등세율정책이 신규기업의 진입을 저해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림 Ⅳ-1] 자본비용과 자기자본조달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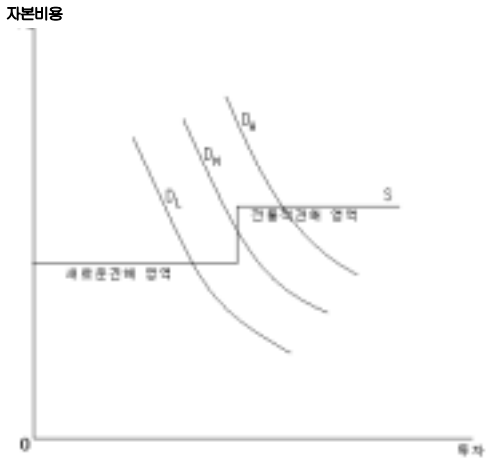

다. 차입정책

최적부채비율의 조건은 부채조달과 자기자본조달의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최적재무구조의 조건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1-\tau)(1-\phi)=(1-\psi)$

이 식에서 ϕ는 법인세후 당기순이익이 주주에게 배분될 때 부담하는 세율($=[1-(1-c)(1-\lambda\gamma)]$이며 여기서 λ는 새로운 견해의 경우에는 0이고 전통적인 견해의 경우에는 $1-(1-\theta)/(1-c)$가 된다. 그러므로 ϕ는 c와 $(1-\gamma)c+\gamma\theta$ 사이의 값을 갖게 된다. 한편 ψ는 이자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율을 나타낸다. 만일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이 개인단계에서 동일하게 과세될 경우 $\psi=\theta$가 성립할 것이다.

세율들은 정부정책에 의해서 이 모형에서는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 조건이 충족되기 어렵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100% 차입이나 100% 자기자본 조달 중 한쪽을 선택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Stiglitz(1973)는 한계적 투자자금 조달은 100% 차입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주장을 한 대표적인 논문의 하나이다.

그러나 한계자금이 전적으로 부채로 조달된다는 주장은 현실적인 여러 증거들에 의해서 뒷받침되지 않는다. 위의 단순한 최적화 조건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거론될 수 있는 것이 비조세적 비용의 존재를 상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용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파산비용이다. 부채비율이 높아질수록 파산의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부채에 의한 자금조달은 파산비용을 수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채비율이 100%가 되기 전에 최적점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다(Feldstein, Green and Sheshinski, 1979 등).

한편 정보의 비대칭을 가지고 세제상의 유인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에 의한 조달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하는 이론들도 있다. 첫째로 대부자가 대출 프로젝트의 위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모든 대출에 대해서 높은 위험 프리미엄을 부과할 경우 리스크가 높은 프로젝트만 차입으로 조달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역선택 현상으로 자기자금에 의한 재원조달을 설명한 연구로 Stiglitz and Weiss(1981)를 들 수 있다. 다음으로 도덕적 해이현상도 이 문제를 설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차입으로 조달한 자금을 이용해서 투자하는 기업은 고위험 사업(분산이 큰 사업)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위험을 대부자에게 떠넘기고 낮은 위험과 높은 수익을 즐길 수 있다. 차입자의 이러한 행동을 분별할 수 있는 정보를 갖지 못하는 대부자는 이와 같은 위험부담의 비용을 대출가격에 전가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은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 때문에 추가적 비조세적 차입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Myers(1977)]. 세번째로, Jensen(1986)은 높은 파산의 위험이 경영자로 하여금 파산을 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인의 입장에 있는 주주들은 차입을 선호하는 경향을 갖지만 대리인인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반대의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으므로 자기자본에 의한 자금조달을 하게 된다는 주장을 하였다.

세제 자체를 가지고 위에서 제시한 최적 재무구조의 조건이 100% 차입에 의한 자금조달을 시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한 연구들도 있다.

Miller(1977)는 개인소득세율이 개인의 소득수준이나 개인의 신분(면세대상 등)에 따라 다름에 착안하여 앞에서 말한 $(1-\tau)(1-\phi)=(1-\psi)$의 조건이 만족되는 소득수준이 존재함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상태를 Miller 균형이라고 말하며 Miller의 이 모형을 고객모형(clientele model) 혹은 고객효과(clientele effect)라고 부른다. 이 모형에 의하면 주주의 한계세율에 따라서 부채를 더 선호할 수도 있고 혹은 자기자본을 더 선호할 수도 있다[47]. 그러므로 기업의 최적 재무구조는 그 기업의 주주들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전적으로 차입에 의해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당기순이익이 없거나 작아서 지급이자를 전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월공제 등이 가능하지만 이월공제에 제약이 있고 이자 이외의 다른 소득공제 항목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차입에 의한 조달이 유리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을 시도한 중요한 연구로는 DeAngelo and Masulis(1980),

47) 이 효과는 소위 dividend puzzle을 설명하는 데도 사용되었다. Auerbach(1983b)나 Allen, Bernardo and Welch(2000) 등 참조.

Sinn(1987) 그리고 Kanniainen and Södersten(1994) 등을 들 수 있다.

라. 실증분석

기업의 재무행위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무수히 많이 이루어져 왔다. 그 중에서 본고에서는 앞에서 논의한 자기자금 조달행태와 차입행태에 관한 기본적인 가설들과 관련된 몇 가지 연구결과만을 논의하기로 한다.

먼저 자기자본 조달행태와 관련하여 전통적 견해와 새로운 견해를 실증적인 자료로써 엄밀하게 테스트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전통적인 견해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연구로 Poterba and Summers(1985)를 들 수 있다. 이들은 소위 q이론으로 투자함수를 추정하였는데 $I=f(q/q^*)$라고 할 때(q는 자본의 시장가격이고 q^*는 자본의 장기 균형가격) 전통적 견해하에서는 $q^*=1$이 되어야 하고 새로운 견해하에서는 $q^*=(1-\theta)/(1-c)$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q^*=1$이라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통계적인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Auerbach(2002)는 Poterba and Summers(1985)에서 사용된 θ는 평균한계세율인데 이것이 이 모형에서 적용될 수 있는 한계세율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과 q이론 모형자체의 여러 가정들(예를 들면 조정비용이 볼록함수여야 한다든가 자본이 동질적이어야 하며 생산함수는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이어야 한다는 등)이 충족되어야 위의 테스트가 의미가 있다는 점을 들어 앞의 연구를 비판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미시데이터를 이용한 Auerbach(1984)의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견해나 새로운 견해 중 한 가지가 모든 기업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신주를 발행하는 기업들의 투자에 대한 수익률이 더 높았다는 점을 발견하였

다. 이것은 앞 절의 그림에서 시사하는 것처럼 전통적 견해로 설명될 수 있게 행동하는 기업들은 자본비용이 더 높다는 주장과 일치하여 새로운 견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Bond and Meghir(1994)는 영국자료를 이용하여 배당이 낮거나 없는 기업들의 투자는 내부자금의 가용성에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기업의 차입행태 또는 재무구조와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법인기업의 지급이자를 법인세 계산시 손비처리해 주는 데서 발생하는 편익이 얼마나 유효한가에 관한 것과 다양한 차입유인에 기업이 어떻게 반응하며 그 중 조세유인에 대한 반응의 상대적 강도는 어떠한가를 분석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차입이자의 손비처리제도가 얼마나 유효한가에 관한 연구는 주로 당기순이익의 부족 때문에 발생하는 차입이자 손비처리의 제약과 관련한 것이다. 차입의사결정 당시 앞으로의 당기순이익이 손비처리를 받기에 충분할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점과 당기순이익이 부족할 경우 차입이자 손비처리를 전방향이나 후방향으로 이월할 수 있게 해주는 경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고려하면서 차입이자 손비처리 규정의 유효성 혹은 그 가치를 평가하는 실증적 연구들이 Auerbach and Poterba (1987), Altshuler and Auerbach(1990) 그리고 Graham(1996) 등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차입과 관련한 기업의 행태를 모형화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한계차입에 대한 세율(실제 세부담 경감혜택)이 위에서 말한 것처럼 복잡한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되며 기업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율은 차입에 따라 영향을 받는 내생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 부채의 종류가 다양하고 차입조달의 상대적 이익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개인세율을 측정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극복해야 한다.

내생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Titman and Wessels (1988)는 미국의 1977~1979년간 평균치인 횡단면자료를 이용하여 자기자본조달시의 조세적 편익을 감가상각액이나 투자세액공제 등의 관측치의 선형함수로 정의하고 요소분석(factor analysis) 기법을 적용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 측정된 계수들은 방향은 이론과 부합하지만 유의하지는 못한 결과를 얻었다. Auerbach (1985)는 1969~1977년간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기업들의 다른 여러 가지 특성에 기인한 횡단면적인 차입성향의 차이를 조정하고 부채비율의 수준이 아니라 그 차분을 모형화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 차입과 장기차입에서는 올바른 방향의 유의한 계수를 얻었고 단기차입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계수를 얻었다.

Graham(1999)은 개인소득세에 관한 적절한 가정을 통해서 앞에서 논의되었던 부채의 조세상 이익 $(1-\phi)-(1-\tau)(1-\phi)$을 계산하고 이를 모형에 포함시켜서 횡단면적으로는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 적어도 횡단면 분석에서는 기업들이 자신의 재무구조 선택에 있어서 조세유인에 반응한다는 결론을 얻은 셈이다.

마. 우리나라에서의 연구

우리나라에서는 조세가 기업의 재무행태에 주는 영향을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절대적으로는 많지 않은 편이며 주로 재무구조에 집중되어 있다. 남상우(1984), 최 광·하태형(1984), 이영기(1986), 최 광(1986) 등이 초기의 연구들이다.

최 광·하태형(1984)은 바로 법인세,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등을 변수로 사용하여 재무구조를 나타내는 방정식을 추정하였고 남상우(1984)는 파산비용을 도입하여 최적재무구조 모형을 도출하고 최적재무구조에 조세변수가 주는 영향을 거시적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계량경제학적으로 추정하였다. 남상우가 사용한 조세변수는 자기자본의 조세부담과 이자의 조세부담의 차이를 나타내는 변수이다.

<표 Ⅳ-4> 기존 실증분석 결과비교

	최 광 · 하태형 (1961~83)	남상우 (1962~83)	곽태원 (1962~1987)	곽태원 · 정승태	
				(1963~1987)	(1963~1995)
상수	-62.322	-98.6 (2.61)	-0.527(1.92)	17.869 (0.35)	39.634 (0.66)
tc	13.5659 (5.567)				
ti	-5.5881 (1.94)				
io	-4.4756 (1.41)				
I	0.3448 (1.75)				
t(-1)*		7.33 (5.92)			
Do		5.94 (4.23)		6.556 (6.82)	5.399 (4.54)
D_{72}		-79.0 (2.17)			
Vn		-5.48 (3.80)			
Em/b		0.58 (3.80)			
Rb-Re			25.272 (7.83)	19.347 (5.58)	14.077 (3.21)
D1			1.43 (9.55)	76.813 (4.76)	74.823 (2.97)
Lp			0.46 (1.27)	0.980 (3.31)	0.77 (2.44)
Vm(-1)			-0.019 (2.42)		
S(-1)				-8.488 (-2.95)	-7.461 (-2.07)
D/E (-1)				0.362 (1.25)	0.793 (5.39)
	R^2=0.856 D-W=1.42	R^2=0.946 D-W=1.96	R^2=0.98 (Adj-R^2=0.97) D-W=2.20	R^2=0.98 (Adj-R^2=0.97) D-W=1.92	R^2=0.95 (Adj-R^2=0.93) D-W=1.88

주 : 1) tc, ti, td 등은 각각 법인세율, 이자소득세율 그리고 배당소득세율 등을 나타냄.
2) t* = tc+0.35td(1-tc/100)-ti
3) Vn = 비농림어업부문 부가가치성장률
4) I = GNP 디플레이터
5) Do, D1, D72는 각각 공금융 차입비율, 1980년 더미 및 72년 더미 변수 등임.
6) Em/b = 주식의 시장가치/장부가치 비율
7) Rb-Re = 차입의 비용-자기자본의 비용
8) Lp =지가 상승율
9) Vm = 제조업 부가가치성장률
10) S = 매출액 경상 이익률
11) D/E(-1) = lagged dependent variable (부채자기자본 비율)

자료 : 곽태원 · 정승태(1998)에서 재인용.

그 뒤에 곽태원(1988)과 곽태원·정승태(1998)에서는 남상우(1984)의 기본모형에 조세변수를 좀 더 정교하게 개선하여 거시적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재무구조 방정식을 추정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의 주요 결과는 <표 Ⅳ-4>에 정리되어 있다. 모든 추정식이 법인세 관련 변수가 재무구조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1960년대와 1970년대중에는 재무구조에 조세정책보다는 금리정책 등이 더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조세변수도 유의한 영향을 주는 하나의 요소였다는 점이 실증적으로 뒷받침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밖에 윤건영(1994), 주만수(1994, 1996) 등은 증자소득공제 등 재무구조와 관련된 유인정책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3. 법인세와 투자

가. Jorgenson의 신고전파 투자이론

Clark(1917)는 기업의 투자는 산출량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여 가속도이론의 입장을 지지하였음에 비해 Fisher(1930)는 한계투자 한 단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과 투자에 들어가는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의 비교를 통해서 투자의 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신고전파 투자이론의 입장을 보였다.

Jorgenson(1963)은 신고전학파적인 접근으로 투자모형을 정형화한 획기적인 연구로 평가되고 있다. 불확실성이 없는 완전경쟁시장 모형에서 기업의 동태적인 이윤극대화 혹은 가치극대화문제를 풀면 기업의 자본사용자비용을 나타내는 식을 구할 수 있다(본장 제1절 참조). 기업의 생산함수를 가정하면 이윤극대화의 조건을 만족하는 자본수요의 표현을 얻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Jorgenson은 Cobb-Douglas 생산함수를 가정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윤극대화의 조건에서 투자행위를 분석할 수 있는 관계를 얻어내었다.

우선 다음과 같은 생산함수를 가정한다.

$$Q = AK^{\alpha}L^{\beta}$$

자본사용자 비용을 c로 표시하고 산출물의 가격을 p라고 하면 이 생산함수에서 다음 관계를 얻을 수 있다.

$$c = p \cdot \frac{\partial Q}{\partial K} = p \cdot \frac{\alpha Q}{K}$$

이 식을 K에 관해서 풀면 그 값이 이윤극대화의 조건을 만족하는 자본스톡의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것을 Jorgenson은 소망자본스특(desired capital stock)이라고 불렀다. 소망자본스톡의 식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K^{*} = \alpha \frac{pQ}{c}$$

본장 제1절에서 구한 c를 위의 식에 대입하면 소망자본스톡과 여러 가지 법인세 관련 변수들 간의 관계를 얻을 수 있다. 현재의 자본스톡 수준과 소망자본스톡 수준간의 차이가 이론적으로 요구되는 투자수요액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바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로 투자행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소망투자 수준이 실제투자로 연결되는 메커니즘을 정식화하는 문제가 남는다.

Hall and Jorgenson(1967)은 이 문제를 계량경제학적인 추정에서 시차분포모형(distributed lag model)을 적용하여 실증적으로 소망투자수요가 실제투자로 실현되어가는 과정을 관찰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였다.

나. q이론을 이용한 투자분석

Jorgenson 등의 접근은 실증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비판을 받았다. 한 가지 비판은 그의 소망투자스톡은 산출량과 자본비용의 비율로 측정되는데 이 변수를 이용한 투자의 실증적 분석결과는 자본비용이 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한 것이 아니라 주로 가속도효과를 측정한 것이며 자본사용자비용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이었다. [Eisner(1969,1970), Eisner and Nadri(1968), Chirinko and Eisner(1983) 등 참조]. 뿐만 아니라 실증분석에서 소망자본스톡이 실제투자로 실현되는 과정을 시차분포모형이라는 일반성이 없는 방법으로 처리한 것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소망자본스톡이 바로 실현되지 못하는 것은 자본스톡의 수준을 원하는 수준으로 빠르게 조정하는 것이 서서히 조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자본스톡의 조정비용을 모형에 명시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Eisner and Strotz(1963)에 의해 제기되었고 조정비용을 투자모형에 도입한 연구들은 Lucas(1967), Gould(1968), Treadway(1970), Uzawa(1969), Abel(1980) 그리고 Hayashi(1982) 등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Jorgenson의 모형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약점은 그것이 법인세 변수만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본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도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것이 무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시도가 Summers(1981)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조정비용함수를 명시적으로 도입하고 개인소득세를 포함한 기업가치 극대화 모형을 풀어서 다음과 같은 최적화의 조건을 구하였다[48].

---

48) 볼록함수로 가정한 조정비용함수를 cashflow balance equation에 명시적으로 도입한 것 외에는 앞에서 자본비용을 도출한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신주발행이나 감자(repurchase)는 없고 부채비율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가정을 하였다.

$$\left(\phi + \frac{I}{K}\phi'\right) = \frac{\frac{\lambda}{p}\left(\frac{1-c}{1-\theta}\right) - 1 + k + z + \beta}{(1-\tau)}$$

이 식에서 p는 재화의 가격을 나타내고 ϕ는 조정비용함수를 나타낸다. λ는 기업가치 극대화 문제를 풀기 위해 만들어진 Hamiltonian의 costate variable을 할인인자로 나누어준 값으로 한계투자의 잠재가격 즉 단위투자에서 얻을 수 있는 미래 생산물 흐름의 현재가치를 나타낸다. 그리고 β는 기업이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된 부채비율(부채/총자본)을 나타낸다.

이 식을 $\frac{I}{K}$에 관해서 풀면 다음과 같은 q이론에 의한 투자모형을 얻게 된다.

$$\frac{I}{K} = h(Q)$$

여기서 $h(\cdot) = (\phi + (I/K)\phi')^{-1}$ 이며 $Q = \frac{\frac{\lambda}{p}\left(\frac{1-c}{1-\theta}\right) - 1 + k + z + \beta}{(1-\tau)}$ 이다. 이 Q는 조세변수를 반영한 토빈의 q(tax adjusted q)라고 말할 수 있다.

Tobin(1969)의 q를 이용한 위의 투자모형도 기업의 최적화 행동에 기초를 둔 신고전파적 접근이다. Jorgenson의 접근과 같이 자본비용을 기업의 투자행위를 설명하는 기본적인 변수로 삼고 있는 셈이다.

그 뒤에 투자의 불가역성과 불확실성의 문제 등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투자의 불가역성 문제는 일단 자본이 설치되면 그것을 다시 현금화하는 것이 어렵다는 투자이론의 전통적 문제와 관련된 것이고 불확실성의 문제는 신고전파적인 기본변수들의 미래 값들에 대한 불확실성의 영향에 관한 것인데 주로 조정비용함수의 구체적인 형태의 선택과 관련해서 접근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주요 연구결과의 서베이는 Dixit and

Pindyck(1994)과 Caballero(1999)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신고전파 투자모형의 실증적 연구결과들이 투자에 대한 조세변수의 영향을 만족스럽게 포착해 내지 못한다는 사실에서 자극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불가역성이나 불확실성의 문제는 신고전파적인 기본변수들의 변화에 대한 투자의 민감도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다. 실증분석[49]

Jorgenson의 모형은 1960년대의 거시적인 시계열자료를 이용한 실증적인 투자분석에서 가장 대표적인 모형이었다고 말할 수 있으나 Chirinko and Eisner(1983) 등이 비판한 것처럼 대체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투자는 산출량의 시차변수와는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나 이자율이나 조세변수 등의 추가적인 설명력은 대체로 미미하였다. 신고전파 모형이 투자행태를 분석하는 이론적인 틀은 획기적으로 발전시켰다고 할 수 있으나 계량경제학적인 적용에서는 별로 성공적이지 못하였던 것이다.

Summers(1981)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단순한 신고전파 모형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들어서 투자행위의 구조적인 관계를 실제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좀 더 효과적으로 찾아내려는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 절에서 보여준 Q를 투자함수의 추정에 실제로 이용하는 데는 극복해야 할 중요한 장애가 있었다. Q를 나타내는 식에 관찰될 수 없는 잠재가격 변수 λ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

49) 이 부분은 Hassett and Hubbard(2002)를 많이 참조하였음.

이 문제를 해결한 연구가 Hayashi(1982)였다. 이 연구에 따라 λ를 관찰 가능한 변수로 대체하여 Q를 다음과 같이 다시 쓰고 2차식의 조정비용함수를 가정하여 도출한 선형투자함수를 개별기업 자료를 이용하여 계량경제학적으로 추정하였다.

$$Q = \frac{\frac{V-B}{pK}\left(\frac{1-c}{1-\theta}\right)-1+k+z+\beta}{(1-\tau)}$$

이 식에서 V와 B는 각각 기업의 시장가치와 부채의 시장가치를 나타내며 K는 기업자본의 대체가치를 나타낸다.

비슷한 모형을 이용한 실증적 연구들이 1980년대에 많이 이루어졌으나 추정된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하였다[50]. 추정된 Q의 계수가 매우 낮은 값이 나오는데 그것은 투자유인들에 대한 반응이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연구의 추정치는 조정비용이 자본의 구입비용보다도 더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해석되기도 하였다. q-이론 접근을 시계열자료에 적용한 연구들은 Jorgenson 모형과 마찬가지로 가속도 이론과 비교되는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였다.

신고전파적 접근이 실증분석에서 성공적이지 못한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는 바로 simultaneous equation 문제 때문에 구조변수의 계수가 식별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 문제는 보통 도구변수를 이용하여 해결될 수 있는데 투자함수 추정에서는 이 방법이 별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대폭적인 세제개혁이 있는 경우에는 자본비용이나 조세효과가 반영된 q값 등에 외생적인 횡단면적 변화가 현저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 점에 착안하여 Auerbach and Hassett(1991), Cummins,

50) Summers(1981)외에 중요한 연구로 Salinger and Summers(1983), Fazzari, Hubbard and Peterson(1988) 등을 들 수 있다.

Hassett and Hubbard(1994) 등은 매우 의미 있는 추정결과를 얻었다. 예를 들면, 주요 세제개편이 있을 당시의 조세변수들을 도구변수로 사용함으로써 Cummins, Hassett and Hubbard (1994)은 Q에 대한 계수 추정치로서 0.65라는 값을 얻었는데 이것은 종래 방법으로 추정된 이 계수의 추정치 0.048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이처럼 새로운 방법으로 조세변수들이 투자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것이 이론적으로 뿐 아니라 실증적으로도 상당히 뒷받침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투자모형의 실증 분석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1) Q나 자본비용의 측정에 있어서 심각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것이 추정계수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 (2) 조정비용의 정식화가 잘못되었을 가능성 그리고 (3) 자본스톡을 구성하고 있는 자본형태의 이질성이 중요한 왜곡요인이 될 가능성 등을 들 수 있다. 1990년대 초반 이후 Gilchrist and Himmelberg (1995, 1998), Caballero, Engel and Haltiwagner(1995), 그리고 Goolsbee(2000, 2004) 등에 의해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공략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최근의 연구들을 종합할 때 미국에서 기업투자의 조세변수를 반영한 자본비용에 대한 탄성치는 대체로 -0.5에서 -1.0 사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것은 매우 강력한 것이며 1980년대까지 얻어진 실증적 결과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51].

라. 우리나라에서의 연구

법인세와 투자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매우 빈약하다. Kwack

51) Hasset and Hubbard(2002) 1325쪽 참조. 그러나 이들은 또한 이러한 미시적인 관계가 거시적인 투자변수의 예측에 바로 사용되기는 어렵다는 점에 유의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1985)은 Jorgenson(1963)의 신고전파 투자모형을 우리나라 데이터에 적용하여 산업별로 투자함수를 추정한 바 있다. 곽태원(1986)은 이러한 방식으로 추정한 산업부문별 투자함수를 CGE 모형의 산업별 자본배분에 이용하였다. 곽태원의 연구는 자본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매우 컸던 기간에 신고전파적인 이론을 투자행태 분석에 사용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Kwack(1985)에서는 사채시장과 제도금융시장간의 금리차이 효과와 자본배급 현상의 모형화를 시도하였다.

윤건영(1988), 김준영(1996), 김유찬(2003) 등은 각각 자본비용을 이용하여 투자유인효과를 분석하고 있으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기업의 실제 투자행태를 분석한 부분은 미미하다. 전영준(2003)과 김성태・이인실・안종범・이상돈(2003) 등은 CGE 모형을 이용하여 법인세제 변동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였는데 이것도 기업이 자본비용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실증적인 탄성치를 추정하는 연구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최근 김진수・박형수・안종석(2003)은 1980~2002년간의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오차수정모형의 방법으로 투자의 한계유효세율에 대한 장기 탄성치를 추정한 바 있다. 이들이 사용한 모형은 설명변수로 법인세지표(법정세율, 평균세부담, 한계유효세율1, 한계유효세율2 중 한 가지), 실질GDP, 실질환율, 실질금리 등을 사용한 일종의 혼합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한계유효세율1은 자기자금을 투자재원으로 하는 경우이고 한계유효세율2는 차입자본을 투자재원으로 사용하는 경우인데 추정된 장기 탄성치는 각각 0.74 및 0.03이었다. 이러한 접근에서의 문제는 한계투자자금조달이 무엇인가에 과한 논의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주로 신주발행인가 아니면 사내유보인가에 관한 것인데 한계유효세율1은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있고 또 우리나

라 산업 전체로 보면 자기자본과 차입자본이 한계투자에 함께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임에도 실제 방정식의 추정에서는 한계유효세율1과 한계유효세율2를 따로따로 방정식에 대입하여 추정을 시도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접근에서 한계유효세율을 계산하면서 개인소득세를 포함시키지 못했다는 점은 중요한 한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소득세정책이 투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중요한 시도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V. 법인세의 미래

1. 법인세 정책의 주요 쟁점과 근본적 개편논의

법인세는 자본소득에 대한 조세의 중요한 한 부분이다. 자본소득세는 자본소득을 원천에서 즉 자본의 수요자에게 과세하는 방법과, 소득의 분배단계 즉 자본의 공급자에게 과세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법인세는 전자에 속하는 것이지만 이 세목의 개편과 관련된 논의는 자본소득세 전반에 관한 고찰과 분석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복잡하게 발달되고 세계화된 자본시장의 구조 때문에 두 가지 과세방법의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 등으로 법인과세에 한정하여 논의하는 것으로 한다.

법인세의 정책과 관련하여 논의되어온 주요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아주 오래된 쟁점은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법인세의 구조적 결함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인세를 절대적인 것으로 보는 고전적 관점에 대한 반론은 오래 전에 제기되었고 이와 함께 이중과세의 불공평성이나 비효율성이 구체적으로 논의되면서 이의 해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방안들이 다양한 형태로 여러 나라에서 법인세제에 반영되기에 이르렀지만 이러한 방향의 개혁은 아직도 완전하게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없으며 따라서 지금도 개혁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쟁점은 법인세 제도 안에 장치된 여러 가지 유인정책의 유효성과 효율성에 관한 것이다. 가속감가상각제도나 투자

세액공제 등 다양한 투자유인 장치들이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경기조절수단으로 혹은 산업정책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되었으나 이러한 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논쟁은 앞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최근까지 지속되어 왔다. 특히 이러한 유인정책들이 1980년대 초에 과도하게 사용되어 여러 가지 부작용과 왜곡을 가져왔다는 반성이 제기되었고 1980년대 후반의 세제개혁은 이러한 반성을 대폭적으로 수용한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세 번째의 쟁점은 세계경제의 글로벌리제이션과 관련되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자본소득과세 전반에 관한 것이다. 개별국가의 입장에서 자국의 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한 최적 자본소득과세가 무엇인가에 관한 논의와 다국적기업의 탈세나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은 무엇인가 등에 관한 논의 그리고 국가간의 유해한 조세경쟁의 방지와 조세조화에 관한 논의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지난 198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이른바 근본적 세제개편 논의도 위의 쟁점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 논의의 큰 흐름은 포괄적 소득세를 지향할 것인가 아니면 소비베이스의 세금을 지향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누진세율의 획기적 완화(flat화)의 추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다. 1980년대 중반 이후의 선진국 세제개편은 누진세율의 괄목할 만한 완화를 이룩하였고 소득베이스를 선택할 것인가 소비베이스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할 수 없지만 베이스를 넓히려는 노력과 소득베이스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의지는 상당히 분명하게 나타내었다고 볼 수 있다.

소득베이스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소비베이스를 지지하는 사람들 모두 법인세를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 내용은 사실상 법인세를 궁극적으로

없애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1980년대 후반의 개편에서 법인세의 근본적 개편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편이었다고 볼 수 있다[52].

본고에서는 위에서 정리한 세 가지 쟁점 중 첫 번째 쟁점, 즉 이중과세와 관련된 문제에만 집중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법인세의 근본적 개편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것이고 장기적으로 법인세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가의 문제는 결국 이 문제가 어떠한 방법으로 극복되는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 이론적인 부분은 앞 장에서 대부분 다루었다고 말할 수 있고 실제 개편과 관련된 각국의 정책경험은 여기서 다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글로벌리제이션과 관련된 쟁점들은 국제조세부분에서 다루어질 것이다[53].

먼저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 문제에 대한 지금까지의 대응을 정리한다. 다음으로 전통적인 통합방안보다 더 근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다른 대안들에 대해서 논의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의 개편 경험과 논의를 간단히 정리한다.

2. 법인세와 소득세의 통합

가. 이중과세 조정 필요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자원배분측면의 고려

법인세가 자원배분을 왜곡시켜 커다란 초과부담을 가져온다는 것은 제Ⅲ장에서 충분히 논의하였다. 법인세와 소득세의 통합논

52) Zodrow and Mieszkowski(2002)는 미국의 근본적 세제개편의 중심적 이슈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세를 어떤 형태의 소비 베이스의 조세로 대체할 것인가”라고 말하고 있다.

53) 전주성(2004)에서 다루고 있다.

의는 이와 같은 비효율을 줄이는 것을 중심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이중과세를 없애면 우선 법인부문과 비법인부문간의 자본배분의 왜곡이 해소된다. 경쟁적인 자본시장을 가정하면 법인부문과 비법인부문 자본의 세후수익률은 동일해야 한다. 그런데 법인세 때문에 법인부문에 투입된 자본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면 세전의 자본수익률은 법인부문 쪽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비법인부문에서 법인부문으로 자본을 이동시키는 것이 경제 전체적인 효율을 증진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법인세의 과세는 기업의 조직형태 선택을 조세가 불합리하게 왜곡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는데 이중과세의 해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결과를 가져다 준다. Harberger(1966)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발생하는 초과부담이 국민소득의 약 0.5%에 이른다는 추정치를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추정치는 뒤의 연구들에 의하면 초과부담을 상당히 저평가한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법인세의 부과는 전체적인 세후 자본수익률을 낮게 함으로써 가계의 저축행위를 왜곡시킨다. 흔히 이것은 가계의 저축률을 떨어뜨리고 따라서 성장을 둔화시켜서 장기적인 국민후생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주장되고 있고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크지만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본수익률의 저하로 저축이 반드시 줄어든다고만 말할 수는 없다. 저축이 오히려 늘어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설사 법인세부담으로 가계저축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효율적인 상태를 벗어나는 것이며 국민후생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Feldstein(1975)는 이러한 이유로 발생하는 초과부담의 크기는 대체로 법인부문과 비법인부문간의 왜곡 때문에 발생하는 초과부담과 비슷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법인세의 부담은 자본비용을 높게 하고 이것은 자본의 수요에

도 영향을 준다. 즉, 기업의 투자를 왜곡한다는 것이다. 제Ⅳ장에서 자본비용이 기업의 투자에 유효한 영향을 준다는 것이 최근의 실증적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음을 언급한 바 있는데 자본비용이 투자행위를 왜곡한다는 것은 자본과 노동간의 결합비율을 왜곡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자본에 대한 세부담을 높이는 것은 세계화된 경제에서 자본의 국외유출을 초래하고 이것은 국내의 투자 감소에 따른 성장의 둔화와 후생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

법인세는 이상과 같이 실물부문의 생산요소시장의 왜곡을 가져올 뿐 아니라 금융부문에서의 자본시장 왜곡을 가져오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차입에 의한 자본조달을 자기자본에 의한 조달보다 유리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를 좀더 부채 의존적으로 바꾸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기업의 부채비율을 적정한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은 개별기업의 파산위험을 높게 할 뿐 아니라 경제 전체의 위험도를 높임으로써 자원배분을 왜곡하고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반드시 법인세의 탓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배당소득과 자본이득에 대한 세부담의 차등은 기업의 배당행위를 왜곡할 수 있다.

자본소득세의 과도한 부담은 기업의 자본소득세 회피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기업의 대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기타 주주이면서 종업원인 사람들에게 배당 대신 임금을 더 주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를 할 수도 있다[54].

---

54) Sorensen(2003)은 반대의 경우 즉 DIT 때문에 자본소득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 주주인 종업원이나 경영진의 근로소득을 자본소득 형태로 전환하여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2) 소득분배 측면의 고려

한편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는 자본소득에 대한 무거운 세금부과를 의미하며 이것은 고소득 자본소득자들의 세후소득을 줄임으로써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알려져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일부 국가에서는 법인세에도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것도 분배적 형평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

법인세의 귀착에 대한 논의는 이미 제Ⅲ장에서 충분히 이루어졌지만 법인세가 소득분배를 개선한다는 이론적 혹은 실증적 증거는 찾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오히려 소득분배와 관련하여 법인세가 야기하는 수평적 불공평의 침해는 사실 매우 심각한 것일 수 있다(Break, 1978 참조). 이자소득을 받는 사람과 배당소득으로 받는 사람간의 격차라든가 같은 소득을 자본이득으로 받는 경우의 차이 등이 수평적 불공평을 야기할 수 있다. 나아가서 근로소득과 자본소득간의 수평적 불공평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배당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의 경우 법인세 때문에 실제로 터무니없이 높은 한계세율을 적용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은 수평적 불공평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수직적 불공평의 문제도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분배 측면의 효과들은 이미 자본환원(capitalize)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법인세와 소득세의 통합 등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면 특정계층에 자본이득을 가져다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것이 오히려 불공평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소위 舊稅가 名稅(old tax is good tax)라는 상황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조세효과가 자본환원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특히 자본환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제도상의 수평적 불공평을 항상 시정하는 결과를 가져다주는 것

도 아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은 높은 배당소득세율 때문에 주식에 투자하는 대안 자체를 배제하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저소득층에게 자본이득을 가져다준다고 하더라도 공평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나. 법인세와 소득세 통합 논의의 연혁

법인세의 이상과 같은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제Ⅲ장에서 논의했던 것처럼 1960년대 이후의 일이다. 이러한 논의가 법인세와 소득세의 통합이라는 구체적인 개혁방안에 관한 논의로 발전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한 것은 1966년에 발표된 캐나다의 Carter위원회 보고서였다. 이 보고서의 발표 뒤에 1960년대 후반에 통합 문제에 대한 많은 연구와 논의가 있었고 그 뒤로도 법인세 개혁이 거론될 때마다 법인세와 소득세의 통합문제가 거론되어 왔다.

다. 통합의 방법

엄밀하게 말하면 통합이란 법인세나 소득세 중 한 가지로만 과세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법인세를 폐지하거나 존치시키더라도 개인에게 법인소득이 분배될 때에는 법인세 부담 부분을 완전히 원상복귀시킨다든지 법인세를 부담한 소득은 개인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게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완전한 통합의 의미이다. 그러나 법인세와 소득세를 그대로 두고 중복해서 과세되는 경우보다 세부담이 실제적으로 낮아지게 하는 조치들도 통합의 방향을 지향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통합이라는 주제하에 이러한 모든 조치들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Pechman(1977)은 이와 같은 통합의 유형을 (1) 개인소

득단계에서 수입배당의 일정비율을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해 주는 방법 (2) 법인단계에서 지급배당을 법인세 베이스에서 소득공제해 주는 방법 (3) 배당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차등 법인세율 방법(split-rate system) (4) 법인세를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세의 원천징수로 간주하는 방법 (5) 개인소득단계에서 배당소득을 소득공제해주는 방법 그리고 (6) 법인세를 폐지하고 파트너십 과세방법처럼 모든 법인소득을 주주의 개인소득으로 귀속시켜 개인소득세를 과세하는 방법 등으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각국에서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했던 경험이 있는 방법들인데 특히 1966년에 캐나다의 Carter위원회 보고서가 발표된 뒤로는 위의 네 번째 방법에 관심이 집중되었다고 할 수 있다[55]. 이 방법은 두 세제를 모두 그대로 두고 법인단계에서 법인세를 부과하되 개인단계에서는 법인세 부담을 포함한 개인의 귀속소득(gross-up된 소득)을 과세베이스에 포함하여 개인소득세액을 계산한 뒤 법인세 부담액은 세액공제해 주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을 흔히 임퓨테이션(imputation) 방법 혹은 그로스업 방법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방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완전한 통합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부분적인 통합에서 그칠 수도 있다. 흔히 배당된 소득에만 이 방법을 적용하면 배당소득은 개인소득세율에 따라 과세되고 유보소득은 법인세+증권양도소득세의 세율로 과세된다고 말할 수 있다. 또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이 방법이 적용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법인세의 낮은 세율기준으로 그로스 업과 세액공제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기업에 대해서는 배

55) 임퓨테이션방법은 1803년부터 1965년 영국에 법인세가 독립된 세목으로 도입되기 전까지 160여년 동안 영국 소득세제의 기본 틀을 형성하고 있었다. Pechman(1977) p. 174 참조.

당소득의 일부에 대해서만 이중과세를 조정해 주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표 Ⅴ-1>로 임퓨테이션 방식의 적용을 예를 들어 설명한다. 표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개인소득세의 최고한계세율이 40%이고 법인세율이 30%인 경우 이중과세의 조정이 없다면 법인세 때문에 배당소득에 대해서 부담하는 세금은 한계세율이 낮은 사람일수록 더 높아진다. 소득세 면세점 이하의 사람은 개인소득세만 부담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서 아무런 세금도 부담할 필요가 없으나 법인세는 부담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법인세 부담액이 그대로 추가적인 세부담액이 된다. 한편 한계세율이 40%인 사람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모두 부담할 경우 58%{=30%+(1-0.3)*40%}이므로 법인세 때문에 추가되는 세부담은 18%가 된다. 100% 그로스업의 경우 모든 법인세 납부액(30)은 배당 소득세의 원천징수로 간주된다. 이 금액만큼 개인소득세 베이스에 더해지므로(배당소득이 그로스업됨) 이 부분에 대한 소득세액은 30에 소득세율을 곱해준 값이 된다. 법인세 납부액이 전부 세액공제되지만 여기서 그로스업된 금액 때문에 개인소득세가 늘어나는 부분은 다시 공제해주어야 하므로 그 남는 금액이 순세액공제액이 된다. 100%그로스업의 경우 이 순세액공제 금액은 법인세 때문에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액과 같아지므로 적어도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이중과세가 조정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만일 50%만 원천징수로 간주하여 법인세 납부액의 50%를 그로스업해 준다면 이중과세의 조정도 50%만 되는 것을 표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사내에 유보되는 부분까지를 포함한 완전한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배당 여부와 상관없이 법인의 세후소득을 모두 주주들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일단 법인세를 납부하였지만 세전소득을 주주들에게 지분에 따라 귀속시키고 법인세 납부분도

세액공제액으로 지분에 따라 주주들에게 나누어 준다[56]. 이렇게 하면 모든 법인소득은 주주들에게 귀속되어 각자의 한계세율에 따라 개인소득세만 납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한편 배당으로 지급되지 않고 사내에 유보된 소득은 주가의 상승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뒤에 증권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배당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주주의 비율에 따라 양도소득 계산의 기준이 되는 주식의 베이시스(취득가격)를 그 만큼 상향 조정해 주어야한다[57].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Ⅴ-1> 임퓨테이션 방식의 적용례

(단위 : %)

기본조건			100% 그로스 업(30/70)				50% 그로스 업(15/70)			
개인소득세율	법인세율	조정이 없는 경우 법인세에 의한 추가부담	법인세 중 원천징수로 간주되는 부분	그로스 업된 부분에 대한 개인소득세	순 세액공제액	조정비율	법인세 중 원천징수로 간주되는 부분	그로스 업된 부분에 대한 개인소득세	순 세액공제액	조정비율
0	30	30	30	0	30	100	15	0.0	15.0	50
10	30	27	30	3	27	100	15	1.5	13.5	50
20	30	24	30	6	24	100	15	3.0	12.0	50
30	30	21	30	9	21	100	15	4.5	10.5	50
40	30	18	30	12	18	100	15	6.0	9.0	50

어떤 회사의 세전소득이 1,000원이라고 하자. 법인세율이 30%라고 하면 법인세후 소득은 700원이 될 것이다. 이 중 200원은 배당으로 지급하고 500원은 사내에 유보하기로 주주총회에서 의결되었다. 이 회사의 지분을 10% 가지고 있는 주주가 있다고 하자. 이 주주는 20원의 배당금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 주주의

56) 이를 파트너십 과세제도 혹은 조합과세제도라고 부른다.
57) Office of Tax Policy(US,1992) Part Ⅱ의 설명을 따른 것임.

과세소득은 전체 세전법인소득의 10%인 100원만큼 늘어나게 된다. 만일 이 사람의 한계세율이 35%라고 하면 개인소득세는 35원만큼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한편 법인세 납부액 300원의 10%인 30원은 이 사람이 세액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실제로 주식의 보유와 관련해서 납부하는 소득세액은 5원이 된다. 한편 사내에 유보된 세후소득 500원의 10%인 50원만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베이시스를 올려준다. 이것은 이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사내유보에 해당하는 세금을 포함시키지 않으려는 것이다. 사내에 유보된 소득도 이미 개인에게 귀속되어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실제로 주식을 팔 때 이 사람의 주식이 50원 이상 올랐다면 5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이런 조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법인부문에 투입된 자본이 개인에게 이자소득으로 지급되건 배당소득으로 지급되건 또는 사내에 유보되어 자본이득의 형태로 배분되건 상관없이 모두 똑같이 그 개인의 소득세율에 따라 과세되는 결과가 나타나며 따라서 법인세의 효과는 완전히 없어지게 된다. 법인세는 단순히 원천징수의 기능만을 담당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58].

미 재무성의 Office of Tax Policy(1992)가 제안하는 미국세제의 개편안에서는 배당제외법(dividend exclusion)이 추천되고 있다. 이것은 위의 분류에 의하면 수입배당의 소득공제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법인기업의 순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정상적으로 과세되지만 세후의 법인소득이 개인에게 배당되는 경우에는 개인단계에서는 소득세가 전혀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

58) 법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정책에 의해서 법인세가 감면된 부분은 개인에게 귀속시키지 않음으로써 법인기업에 대한 유인이 유효하게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실제로 법인기업이 법정세율보다 낮은 비율의 법인세를 부담했다고 해도 개인에게 임퓨테이션시킬 때는 법정세율만큼의 세액공제를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배당소득은 개인의 과세소득베이스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기 때문이다. 한편 기업은 개인소득세 비과세소득으로 배당할 수 있는 재원을 별도로 관리하는 계정(EDA, excludable distributions account)을 유지해야 한다. 법인세를 면제받은 법인소득은 EDA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것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소득세를 면제받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법인세를 내지 않은 소득은 개인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하에서는 이중과세 조정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배당된 소득은 최종적으로 법인세(τ)만을 부담한다. 사내에 유보된 소득은 법인세와 자본이득세[$\tau+(1-\tau)c$]를 부담한다. 이자를 비롯한 기타의 자본소득은 개인소득세(θ)만을 부담한다. 따라서 배당보다는 사내유보가 불리하고 자기자본조달에 의한 배당형태와 차입에 의한 이자형태의 소득은 개인의 한계세율에 따라 어느 쪽이 더 유리할지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 한계세율이 낮은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배당으로 받는 소득이 자신의 한계세율보다 훨씬 높은 법인세율로 세금을 부담하는 결과가 된다.

특히 배당이 사내유보보다 세부담 면에서 더 유리하다는 것은 기업의 배당성향을 지나치게 높일 수 있다는 우려를 야기할 수 있다[59]. 이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미국재무성의 1992년 제안은 DRIP(dividend reinvestment plan)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이것은 사내유보된 부분을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EDA에서 공제하고 대신에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주식의 베이시스를 사내유보된 금액만큼 높여준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사내유보

59) 사내유보를 통한 재원조달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고려가 요구된다. 사내유보는 기업의 저축증가를 통해 더 높은 투자와 더 빠른 경제성장을 가져올 수 있으며 또 기업의 재무구조를 안정시키는 효과까지 있으므로 바람직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반면 기업 경영자의 입장에서 내부자금에 해당되므로 방만하게 투자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된 소득도 법인세만 부담하고 양도소득세는 부담하지 않게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면 만일 한 주당 100원의 법인소득이 발생했을 때 30%의 법인세를 부담했다면 세후소득 70원은 이 기업의 EDA에 계상된다. 이 중에서 20원을 배당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물론 이때 EDA에서는 20원이 빠지게 된다. 그런데 사내유보된 50원에 대해서도 마치 배당되었다가 재투자된 것처럼 EDA에서 빼주고 주주의 투자원본에 더해주는 방식으로 자본이득세를 부담하지 않게 해준다는 것이다. 이 회사 주식 1주를 기초에 1,000원에 매입했던 사람은 20원의 배당을 받고 소득세는 내지 않을 것이며 DRIP가 적용되는 경우 주식의 매입가격이 1,050원으로 조정되어 만일 이 주식을 1,050원에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는 전혀 물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1,050원 이상에 팔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이렇게 해줌으로써 사내유보와 배당간의 조세왜곡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라. 각국의 통합 현황과 문제점

대부분의 국가들은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를 완화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표 Ⅴ-2>는 1996년 현재로 EU국가들의 법인세-소득세 통합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아일랜드, 영국 등은 모두 임퓨테이션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배당되는 법인소득에 대해서는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이른바 split-rate 제도를 병용하고 있으나 주된 조정제도는 임퓨테이션제도이다.

<표 Ⅴ-2> EU 국가들의 법인세-소득세 통합 현황(1996년 현재)

(단위 : %)

통합제도별 국가	사내 유보에 대한 법인세율	배당완화		정상적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	배당 소득에 대한 총 세부담률	이자 소득에 대한 최고세율	자본이득에 대한 최고세율	
		내용	고전적 법인세 부담에 대비한 비율				소액주주	대주주
임퓨테이션								
핀란드	28		100	57.5	28	28**	28	28
프랑스	36 2/3		91	60.2	61.5	19.4*	19.4	19.4
독일	56		59	57	64.4	57*	-	rr
아일랜드	38		49	48	58.1	42*	40	40
이탈리아	53.2		66	51	58.7	12.5**	15	25
영국	33		51	40	49.8	40*	40	40
세액공제								
포르투갈	39.6		91	40	42.2	20**	-	-
스페인	36		71	56	60.6	56*	rr	rr
배당세율우대		우대세율						
오스트리아	34	22	109	50	48.5	22**	-	PT/2
벨기에	40.2	25	135	60.6	55.1	15**	-	-
덴마크	34	40	105	61	60.4	61	40	40
그리스	35	0	152	45	35	15**	-	-
룩셈부르크	40.3	PT/2	62	51.3	55.6	51.3	-	25.6
스웨덴	28	30	152	56	49.6	30	30	30
고전적 법인세								
네덜란드	35		0	60	74	60	-	20

주 : 1. CT는 법인세율, PT는 개인소득세율, rr은 reduced rate 등을 나타냄.
2. 법인세율은 지방세 포함
3. 고전적 법인세 부담에 대한 (배당세부담 완화의) 비율=(CT+PT without relief -Actual CT+PT)/(CT+PT without relief - CT+PT with full relief)
4. 배당소득에 대한 총 세부담률 = CT+(1-CT)*PT-tax credits
5. 이자소득세율에서 *는 원천징수제도가 있음을 나타내며 **는 원천분리과세를 나타냄.
6. 스페인의 주식양도세율의 경우 reduced rate는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짐.

자료: Cnossen(1998) pp. 224~225에서 발췌 인용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포르투갈의 경우 법인세 부담의 60%를 개인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할 수 있으나 임퓨테이션의 경우처럼 개인소득세 베이스를 그로스업하지는 않는다. 포르투갈에서는 다른 과세방법을 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배당에 대해서 12.5%의 낮은 개인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스페인의 경우 순배당의 40%를 개인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여 준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그리스, 룩셈부르크, 그리고 스웨덴 등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낮은 개인소득세율을 적용한다. 이중 오스트리아, 벨기에, 그리고 룩셈부르크 등에서는 발행하는 신주 매입에 지출한 금액을 개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EU국가 중 예외적으로 고전적 법인세제도, 즉 이중과세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법인세-개인소득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네덜란드이다.

비EU국가 중 주요국가들 중에서 캐나다와 호주는 임퓨테이션 제도를 도입하였고 일본은 부분적인 배당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은 고전적인 법인세를 고수해 오고 있으나 부분적인 조정제도는 오래전부터 도입되었다가 폐지되는 일들이 있었고 정부의 세제개혁안에 통합을 지향하는 제안들이 자주 등장하였다. 특히 1979년의 Blueprints(미국 재무성안)에서는 완전한 통합을 주장하였고 1992년의 Office of Tax Policy안에서도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배당제외법(dividend exclusion)을 주장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배당세액공제제도 등 부분적인 이중과세 완화제도가 사용되다가 1991년에 임퓨테이션제도(50% 그로스업제도)가 도입되어 약간의 변화를 거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고 내년에는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도입이 예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소득세와 법인세 이중과세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그것을 극복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지만 아직도 몇가지 불만이 남아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로 아직도 이중과세가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다. 법인세를 폐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완전한 통합을 달성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완전하지 못한 이중과세조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제도 자체는 복잡해지면서 부분적인 비효율이나 불공평은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다.

이 문제는 바로 완전한 통합이 매우 제도를 복잡하게 한다는 문제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 완전한 임퓨테이션이 이론상으로는 가능해도 이것을 정확하게 시행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엄청난 코스트를 요구한다. 경제활동의 세계화와 경제구조의 복잡화는 이러한 경향을 가속적으로 심화시킨다. 이런 이유 때문에 좀 더 단순하면서도 이중과세의 근본적인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지속되어 왔다.

세원의 잠식문제도 제기된다.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를 완화한다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상당한 세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이를 통한 자원배분의 왜곡 해소가 조세베이스의 성장을 가져와 세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완전한 통합은 법인세를 사실상 폐지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며 이것은 상당한 세수의 감소를 의미할 수 있다. 물론 세원의 잠식문제는 통합의 직접적인 문제뿐 아니라 이른바 유해한 조세경쟁의 심화 때문에 야기되는 부분도 매우 크다.

EU에서는 직접적으로 조세조화의 문제가 제기되었다[60]. 국경조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법인세와 소득세의 세율이나 제도 내

60) Cnosssen(1998) 등 참조.

용의 차이는 국가간 자원이동을 왜곡시킬 수 있는 데다가 이중과세 조정제도의 차이는 이러한 문제를 더 복잡하게 할 수 있다. 더구나 다국적기업의 과세 문제까지 문제를 어렵게 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좀 더 효율적이면서 왜곡이 적은 방식으로 법인세와 소득세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불만이나 필요 때문에 좀 더 근본적인 제도개선방안이 모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선을 모색하는 노력은 법인세의 성격 자체를 구조적으로 바꾸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들을 고안해 내게 하였다. 이러한 제안들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네 가지 안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3. 법인세의 구조적 개편에 관한 논의

가. Cash Flow 법인세

Cash Flow 법인세의 아이디어는 일찍이 Brown(1948)에 의해서 제안되었고 이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King(1975), Kay and King(1978) 등에서 논의하였고 공식적으로 영국의 Meade 위원회 보고서(1978)에서 법인세를 이러한 방향으로 개편할 것이 제안되었다. 그 뒤 Aaron and Galper(1985)에서도 이 제안이 논의되었고 King(1987)에서 이 제도의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함께 기대효과가 분석되었다. 이 제도는 소득세를 지출세 혹은 개인소비세로의 개편하려는 방향과 맥을 같이하는 법인세의 구조적인 개편안이다. King(1987)에 따라 이 세제의 내용을 설명하기로 한다.

법인기업의 자금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V-3>에서 물론 원천과 사용의 합계는 일치한다. King

(1987)은 캐시플로우 법인세의 베이스로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TB_1 = R - I$$
$$TB_2 = D - S$$

<표 Ⅴ-3> 법인기업의 자금 운용표

원 천	사 용
R : 재화와 용역의 매출 수입(인건비, 원재료 및 서비스 구입비용 공제)	I : 투자지출(총투자-자산매각수입)
B : 순차입(신규차입-차입금 상환)	P : 순이자지급(수취이자 공제)
S : 신주발행(자사주 매입소각 공제), 타회사의 주식순매각 포함	D : 순배당지급(수취배당 공제)
	T : 조세납부

자료 : King(1987)

첫 번째 베이스는 실물경제활동의 결과로 발생하는 현금흐름에서 조세의 베이스를 측정한 것이고 두 번째의 베이스는 배당과 신주발행의 차이로 자기자본에 대한 순분배(net equity distribution)를 측정한 것이다. 첫 번째 베이스는 캐시플로우 베이스라고 말할 수 있고 두 번째 베이스는 자기자본에 대한 순분배 베이스라고 부를 수 있는데 자금수지 균형조건으로부터 두 베이스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TB_1 + (B - P) = TB_2 + T$$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윤을 무시한다면 순차입의 현재가치는 지급이자의 현재가치와 같아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TB_1과 TB_2의 차이는 조세가 포함되어 있는가 아닌가뿐이라고 할 수 있

다. 이런 차이를 갖는 베이스에 대한 세금들은 세율만 조정하면 동일한 세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캐시플로우 베이스에 $(B-P)$가 포함되도록 수정할 수 있다. 이 베이스는 어떤 경우에도 자기자본에 대한 순분배 베이스에 세금을 포함한 것과 동일하다. 만일 캐시플로우 베이스에 대한 세율을 t_1이라고 하고 두 번째 베이스에 대한 세율을 t_2라고 한다면 두 세율의 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두 세금은 완전히 동등하다.

$$t_2 = \frac{t_1}{1-t_1}$$

세율이 위와 같다면 수정된 캐시플로우 베이스에 대한 세금은 자기자본에 대한 순배분을 베이스로 하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이 수정된 캐시플로우에 대한 세금을 캐시플로우 법인세라고 한다면 이것은 현재의 법인세에서 감가상각공제를 없애는 대신에 투자지출은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회계기간중 순차입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과 같다. 물론 이자지급은 현재와 같이 과세베이스에서 공제한다.

그러므로 캐시플로우 법인세의 베이스를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TB_1 = 당기순이익 + 감가상각 − 기간중 투자지출 + 기간중 순차입

위의 식에서 당기순이익이란 지급이자를 손비로 처리한 지금의 법인세 베이스와 같은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투자세액공제나 가속감가상각 같은 제도는 없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제도하에서 증권양도차익에 대한 실제세율이 일반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율과 일치한다면 신주발행이나 사내유보는 무차

별하게 되고 나아가서 자기자본에 의한 자금조달과 차입에 의한 자금조달도 무차별하게 된다. 또 경제적 감가상각을 계산할 필요가 없어지며 인플레이션 때문에 감가상각회계가 왜곡되어 투자유인을 왜곡시키는 문제도 해소된다[61]. King(1987)은 새로운 제도하에서의 세수는 전통적 법인세하에서의 세수와 유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법인세에 의한 기업 재무행태의 왜곡을 해소하고 투자유인제도의 문제점들을 없애주는 것이기는 하나 법인과 비법인부문간의 자본배분의 왜곡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으며 자본소득의 무거운 세부담이 국내자본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게 된다. 그리고 개인소득세를 개인소비세로 전환해야 전체적으로 일관된 조세체계를 형성하게 된다.

나. 포괄적 법인세(CBIT: Comprehensive Business Income Tax)

이 제도는 미국 재무성의 Office of Tax Policy(1992)에서 제안된 것으로서 집세와 로열티를 제외한 모든 자본소득을 개인소득세 최고세율로 한번만 과세함으로써 이자소득과 배당소득간의 과세 불균형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법인이든 비법인이든 상관하지 않고 사업소득은 기업단계에서 개인소득세 최고세율과 같은 세율로 한번 과세하고 개인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CBIT의 과세베이스는 전통적 법인세제하의 당기순이익에서 지급이자를 손비로 처리하지 않은 것과 같다. 다시 말해서 이자든 배당이든 개인에게 분배되기 이전의 소득에 기업단계에서 한번만 과세한다는 것이다.

---

61) King(1987) pp. 382~390 참조.

CBIT가 도입되면 세부담은 다음 표와 같이 변화된다. 이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CBIT가 도입되면 법인기업의 자기자본과 차입자본은 동일한 세금을 부담하며 사내유보에 대해서도 세부담의 차등이 없어진다. 그리고 비법인기업의 자본도 동일한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이자소득자나 비법인기업의 자본공

<표 Ⅴ-4> 전통적 법인세와 CBIT 하의 세부담 비교

자본소득 유형	전통적 법인세	CBIT
개인투자자		
법인기업소득		
배당	$\tau+(1-\tau)\theta$	$cbit$
유보	$\tau+(1-\tau)c$	$cbit+(1-cbit)c$
비법인기업소득	θ	$cbit$
이자소득	θ	$cbit$
집세 및 로열티	θ	θ
면세기관		
법인기업소득		
배당	τ	$cbit$
유보	τ	$cbit$
비법인기업소득	τ	$cbit$
이자소득	0	$cbit$
집세 및 로열티	0	0
외국인		
법인기업소득		
배당	$\tau+(1-\tau)WD$	$cbit$
유보	τ	$cbit$
비법인기업소득	WN	$cbit$
이자소득	WI	$cbit$
집세 및 로열티	WR	WR

주 : $cbit$=개인소득세 최고세율과 같음; WD, WN, WI, WR 등은 각각 법인소득배당, 비법인소득, 이자소득, 집세 및 로열티 등에 대한 외국인 원천징수세율을 의미한다.

자료 : Office of Tax Policy(1992), p. 42.

급자들 중 한계세율이 최고세율 이하인 사람들은 전보다 높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고 법인부문의 자본투자자들의 경우에는 한계세율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중과세의 조정으로 세부담이 현저히 줄어들지만 한계세율이 낮은 사람의 경우에는 세부담이 별로 줄어들지 않게 된다. 전통적 법인세의 문제 중 하나가 한계세율이 낮은 주주들은 자신들의 배당소득이나 자본이득에 대해서 지나치게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는 것인데 이러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표 Ⅴ-4>에서는 전통적 법인세와 CBIT하의 세부담이 비교되고 있다.

다. DIT(Dual Income Tax)

DIT(Dual Income Tax)제도는 글자 그대로 소득을 자본소득과 노동소득(또는 근로소득)으로 양분하여 자본소득은 낮은 율의 단일세율로 과세하고 근로소득은 누진세율로 과세한다는 것이다. Sorenson(1998)에 의하면 이 제도는 덴마크의 Niels C. Neilsen에 의해 1980년대 초에 제안된 것이다[62]. DIT의 이론적 근거는 자본의 공급이 노동의 공급보다 더 탄력적이므로 자본소득에 대한 세율이 낮은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Atkinson and Sandmo(1980) 등의 주장과 자본과 재화의 국제간 이동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자본에 대한 조세가 노동에 주로 전가될 것이라는 귀착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본소득에 대한 세율을 높이는 것이 공평을 이루지도 못하면서 자본의 유출을 통한 국내 후생의 감소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DIT는 1987년에 최초로 덴마크에서 도입되었고 1990년대 초에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에서 경쟁적으로 채택되었는데

62) Sorensen(1998, p.4)에 의하면 Neilsen교수는 1980년의 저서와 1982년 덴마크의 정부 위원회 보고서를 통해서 이 제도를 제안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은 조금씩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우선 모든 소득을 자본소득과 비자본소득(노동소득)으로 구분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 구분하기 전의 소득에 기본율의 과세를 실시한 뒤 자본소득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방법이 있고 처음부터 자본소득에는 낮은 기본율의 소득세만 부과하고 나머지소득에 대해서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법도 있다. 기본적인 공제 등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마이너스의 자본소득을 노동소득과 상계할 수 있는가 등 기술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둘 수 있다. 법인부문의 자본소득에 대해서 개인단계에서 다시 과세되지 않도록 임퓨테이션을 적용하는 것이 DIT의 순수한 모형이지만 이중과세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63].

노르웨이와 핀란드는 가장 순수한 DIT를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스웨덴의 경우에는 이중과세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덜 순수한 DIT라고 할 수 있다. 덴마크는 DIT를 가장 먼저 도입했으나 1995년에 국내의 정치적 압력 등으로 다시 과거의 시스템에 가깝게 되돌아가는 세제개편을 실시하였다.

DIT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첫째로 자본의 이동이 실제로 완전하지 않다는 점과 개인사업이나 소규모 법인의 경우 자본소득과 비자본소득을 구분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매우 어렵고 또 노동소득을 자본소득 형태로 전환시켜 조세회피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한다.

Cnossen(2000)은 EU의 자본소득세 조화의 대안으로 원천지과세원칙에 입각한 DIT를 제안하고 있다. 모든 자본소득은 EU 내의 모든 국가들이 통일된 단일 세율로 기업단계에서 과세하고 개인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 세제는 사실상 미국에서 제안되었던 CBIT와 유사한 형태를 갖게 된

63) 북유럽 4개국의 DIT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험에 대한 정보는 Sorensen(1994, 1998)과 Cnossen(2000)등에서 얻을 수 있다.

다. 다만 CBIT는 자본소득에 대해서 최고의 한계세율 적용을 제안한 반면 DIT는 낮은 세율의 적용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차이라고 할 수 있다. DIT는 국내적으로는 덴마크의 경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낮은 자본소득세율에 대한 정치적인 저항이 있을 수 있다. 반면 국제적으로는 자본유치를 위한 소위 유해한 조세경쟁에 휘말려 자본소득세의 인하 압력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국제적인 합의에 근거한 조세조화를 도모하는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라. ACE(allowance for corporate equity) 제도

ACE제도는 영국의 대표적 재정관련 연구소인 Institute for Fiscal Studies의 자본과세 연구모임에 의해서 1991년에 제안되었다[64]. 이 제도의 이름이 시사하는 것처럼 법인소득세의 베이스를 정의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에 대한 정상수익을 공제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법인세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요소세로서의 성격을 해소하여 자원배분의 왜곡을 줄이자는 것이다. 이 문제는 법인에 투입된 자본 중 차입에 의해서 조달된 자본과 자기자본간에 세부담의 차등이 존재하는 기존 제도의 문제를 극복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었다[65].

ACE제도의 내용을 좀 더 분명하게 말한다면 이것은 법인세 과세베이스에서 i^*E를 공제해 주는 것이다. 여기서 i^*는 자기자본에 대한 기회수익률을 나타내고 E는 자기자본을 나타낸다. ACE제도의 가장 중요한 이론적 의미는 이렇게 함으로써 법인소

64) IFS(1991)

65) Boadway and Bruce(1984)는 ACE제도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interest-adjusted business profit tax의 개념을 제안하였다.

득세가 특정한 부분의 특정한 생산요소에 과세되는 부분요소세의 성격에서 순수한 경제적 이윤에 과세하는 이윤세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순수한 경제적 이윤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가 자원배분을 왜곡시키지 않는 럼섬세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ACE제도는 이와 같이 자원배분을 왜곡시키는 전형적인 세제를 가장 효율적인 세제로 전환시킨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다.

법인세의 과세베이스가 되는 기업의 당기순이익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text{당기순이익} = wL + iB + \rho E + \delta K - wL - iB - dK = \rho E + (\delta - d)K$$

이 식에서

w = 평균인건비

L = 총노동투입량

i = 이자율(기회수익률)

B = 부채잔액

ρ = 자기자본에 대한 수익률

E = 자기자본

d = 세법상 감가상각률

K = 총고정자본

δ = 경제적 감가율(*economic depreciation rate*)

등을 각각 나타낸다.

이 식에서 기업의 세무회계상 감가상각률이 경제적 감가상각률과 같다면 당기순이익은 ρE 즉 자기자본에 귀속되는 요소소득과 일치한다. 이것이 법인세의 과세베이스이다.

같은 방법으로 경제적 이윤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이것은 당기순이익과 다르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 즉 당기순이익에서 자기자본에 대한 정상적 수익(iE)을 뺀 나머지가 경제적 이윤이 되는 것이다[66].

$$\text{경제적이윤} = wL + iB + \rho E + \delta K - wL - (i+\delta)K$$

$$= iB + \rho E - iK = iB + \rho E - i(E+B) = (\rho - i)E$$

이제 ACE제도의 의미는 매우 분명해진다. 과세베이스에서 i^*E를 공제해 주는 것이 ACE제도라고 설명한 바 있다. i^*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할지는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자본의 기회수익률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시장이자율(i)이라고 한다면 ACE가 도입되어 조정된 과세베이스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text{조정된 과세베이스} = \rho E + (\delta - d)K - iE$$

위의 식에서 만일 경제적 감가상각률과 세법상 감가상각률이 동일하다면 조정된 과세베이스는 바로 위에서 살펴보았던 순수한 경제적 이윤 $[(\rho - i)E]$과 같아짐을 알 수 있다.

순수한 경제적 이윤이란 경쟁적인 시장의 장기균형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적인 시장이 독과점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ACE제도하의 주된 과세대상은 독점이윤이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제도는 이론적으로 법인세의 문제를 가장 확실하게 해결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자원배분의 왜곡이 많은 부분요소세인 법인세를 럼섬세인 경제적 이윤에 대한 조세로 전환시켜 주기

66)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경제적 감가율과 세법상의 상각률이 같고 100%차입경영의 경우에는 다음의 식으로 경제적 이윤을 나타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E가 0이 되어 자기자본에 대한 수익률을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때문이다. 물론 감가상각제도가 경제적 감가상각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고 순수한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는 순수경쟁적인 시장의 경우 그 기대수입이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ACE제도는 법인세를 폐지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가져온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현실적으로 독점이윤을 얻는 기업이 많이 있어서 상당한 세수를 얻을 수 있다.

이 제도를 실제로 채택한 경험은 찾기 어렵다. 크로아티아에서의 1990년대 세제개혁에서 유사한 시도가 이루어졌다[67].

4. 우리나라에서의 개편논의와 외국 경험의 시사점

가. 개관

우리나라에서의 법인세 개편논의도 중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관점에서의 개편논의와 좀 더 단기적이고 당면시책적인 관점에서의 개편논의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두 가지가 엄밀하게 구분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중에는 법인세가 투자의 활성화와 수출 및 중화학 산업으로의 자본의 집중을 유도하기 위한 유인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법인세 관련 정책수단의 활용이나 이를 위한 개편들과 관련해서 이루어진 학술적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법인세와 관련된 정책적인 논의가 학계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중에 이루어졌던 투자유인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고 반성하면서 보다 효율적

67) Rose and Wiswesser(1998) p. 271 참조. 자기자본에 대한 이자를 법인세 베이스에서 공제하였다.

인 합리적이고 중립적인 유인구조를 추구해야 한다는 일련의 연구들이 이루어졌고 재무구조의 악화요인을 조세 변수들로 설명하여 법인세와 소득세의 개편방향을 찾아보려는 연구들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에는 한국조세연구원의 설립과 함께 법인세 개편에 관한 연구도 활성화되었고 또 매우 구체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개방화의 급진전에 따라 국제조세적인 관점에서의 제도 정비를 위한 연구와 개편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아울러 IMF사태 이후의 활발한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법인세 측면의 정비 필요성도 대두되어 이와 관련된 논의들이 이루어졌다[68].

최근에는 거시경제의 침체와 관련해서 법인세의 세율인하 혹은 폐지 등의 주장이 제기되었고 김성태・이인실・안종범・이상돈(2003), 전영준(2003), 김진수・박형수・안종석(2003) 등 CGE 모형을 이용하여 법인세제 개편, 특히 법인세율의 인하 등이 거시경제의 경제성장이나 계층간 세부담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분석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나. 법인세의 구조적 개편에 관한 논의

우리나라에서 법인세와 소득세의 통합문제를 제기한 선구적인 연구들은 장재식(1983), 최명근(1984), 최 광・하태형(1984) 등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연구들은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가 가져오는 경제적 왜곡효과보다는 세부담 불공평의 문제를 더욱 부각시켰다는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임퓨테이션방법 등을 소개하고 그러한 제도의 도입을 역설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자

68) 김유찬(1996, 1997), 김진수(1998), 김진수・김재진(2000), 김진수・황국재(2001), 손원익(1996) 등이 한국조세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추진되었던 기업구조정과 관련된 법인세 개편에 관한 연구들이다.

본소득세제 발전에 적지않은 기여를 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뒤에 법인세의 개편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보고서들에서 대부분 이 문제가 제기되었고 특히 세제발전심의회의 산하에 설치된 세제발전연구위원회의 연구보고서(1985, 1990)에도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 완화의 제안이 포함되어 있다.

1990년 세법개정에 처음 그로스업 방식의 임퓨테이션제도가 도입되었고 곽태원(1993)은 이것이 자본비용에 어떤 효과를 가져다주는지를 분석하였다. 김진수・김재진(2000)의 파트너십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도 법인세와 소득세의 통합과 관련성이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론적으로 파트너십 과세제도가 법인세와 소득세를 완벽하게 통합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소규모의 특수형태의 법인 외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이 연구의 주안점이 통합에 두어져 있지는 않다.

그 외에 곽태원(1998) 등에 의해서 미국의 근본적 세제개편에 관한 논의가 소개되면서 법인세제의 구조적 개편방향에 관한 논의들이 소개되었고 곽태원(2001)에서는 ACE제도가 소개되었다.

다. 우리나라 법인세제 개편에 관한 외국경험의 시사점

무엇보다도 선진국에서의 법인세를 포함한 자본소득세 개편논의의 추세는 공평보다는 효율에 초점을 둔 것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글로벌리제이션과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자본을 비롯한 주요 생산요소의 국가간 유치경쟁이 매우 중요한 자본소득세 정책의 여건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도 그동안 지속적으로 낮아져서 선진국들에 비해서 법정세율이 높지 않은 수준이고 이중과세조정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가 국제적인 자본

유치경쟁이나 국제무역에 중요한 걸림돌이 된다고는 말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아직도 법인세를 포함한 자본소득세를 소득재분배수단으로 주로 인식하는 의식에서는 조속히 벗어나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법인세율의 인하 문제가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투자활성화를 통한 경기회복에 초점을 두고 논의되었다. 이러한 관점은 바로 법인세가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의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잠재력에 대한 우려 때문에 소위 다음세대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부로부터 제기되고 있고 이러한 주장을 구체적으로 정책화하는 과정에서 법인세의 유인수단들이 다시 동원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법인세를 유인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어떤 정책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특히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강화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자본의 형성과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지 않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를 더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된다. 법인세를 비롯한 자본소득세 정책의 선택에서 이와 같은 기본인식이 필요하다는 점은 앞에서 살펴본 외국의 자본소득세 정책관련 논의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들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특히 EU와 미국 등 선진국에서의 근본적인 세제개편 논의의 중점이 자본소득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하고 이러한 논의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우리의 중장기적 세제개편의 방향을 모색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VI. 맺 음 말

이상에서 우리는 법인세의 의의와 법인세가 우리나라의 재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현재 법인세가 우리나라 재정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를 논의하였다.

이어서 법인세의 기본적인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귀착과 초과부담에 관한 이론적인 논의의 발전과정을 개관하고 이러한 이론에 근거한 실증적 연구동향을 살펴보았다. 법인세가 부분요소세로서 여러 가지 차원의 자원배분 왜곡을 가져온다는 1960년대의 연구결과는 지금까지 부정되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 그러한 왜곡효과가 매우 무거운 것이라는 실증적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법인세의 과세가 기업의 이윤에 과세하고 자본소득을 중과함으로써 소득분배의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이 옳지 않다는 연구결과들도 제시되었다.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를 포함하는 자본소득세가 경제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개발된 지표로 자본사용자비용 혹은 자본비용과 유효한계세율에 관한 연구들, 그리고 이러한 자본소득세제도가 기업의 여러 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특히 기업의 투자와 자본조달행태에 관한 연구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론적으로는 매우 정교한 분석기법들이 개발되었고 이러한 모형에 근거하여 매우 세련된 논의가 발전하였으나 실제의 통계자료를 이용한 실증적인 분석은 일관성 있는 결론을 도출하는 데 뚜렷하게 성공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국내에서의 연구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은 이 부분이었다.

이 부분에서 법인세가 기업의 위험부담 행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등 기업의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포괄적으로 다루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나아가서 법인세가 거시적으로 경제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도 다루지 못하였다. 법인세의 경제적 영향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미진한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법인세의 개편에 관한 논의들을 살펴보았다. 법인세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경제학자들에 의해서 제기된 이후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들이 있었고 많은 국가에서 그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방향으로의 개편이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완전한 개편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으며 세계경제 여건의 변화는 새로운 요구들을 추가하고 있다. 매우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편대안들이 제시되어 논의되고 있는데 제Ⅴ장에서는 이러한 논의도 부분적으로 소개하였다.

법인세에 관한 방대한 연구문헌을 짧은 기간 내에 만족할 만한 정도로 서베이하여 정리하기에는 필자의 역량이 너무 부족하였다. 본 연구가 법인세에 관한 공부를 시작하는 후학들에게 다소간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동시에 이러한 첫 작업을 발판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이며 또 균형 있는 서베이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곽태원,『감가상각제도와 자본소득과세』, 한국개발연구원, 1985.

곽태원,「우리나라 세제상의 투자유인과 그 경제적 효과」, 최 광 (편),『한국세제의 주요 정책과제와 개선방향』, 한국개발연구원, 1984. 6. pp. 65~121.

곽태원,「산업정책에 있어서 조세제도의 역할」,『한국개발연구』, 한국개발연구원, 1986 봄호(제8권 1호), pp. 77~97.

곽태원,「조세유인과 우리나라 법인기업의 재무구조」,『한국개발연구』, 한국개발연구원, 1988 겨울호.

곽태원,「부분그로스업 제도의 도입과 조달원천별 자본비용」,『재정논집』 제7집, 한국재정학회, 1993. 3, pp. 169~183.

곽태원,「최근 미국의 근본적 세제개편 논의와 그 함의」,『서강경제논집』 제27집 1호, 서강대학교 경제학연구원, 1998. 9, pp. 37~60.

곽태원,「ACE 제도의 이론적 의미와 자본비용 효과」,『재정연구』 제8권 제1호, 한국조세연구원, 2001. 12. pp. 1~15.

곽태원,『조세론』, 법문사, 2000.

곽태원・정승태,「조세정책과 법인기업 재무구조」,『공공경제』 제3권 2호,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1998, pp. 22~38.

국세청,『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국세청,『세정 100년 약사』, 1996.

김성태・이인실・안종범・이상돈,「KCGE 모형을 이용한 법인세 개편의 효과 분석」,『경제학연구』 제51집 제1호, 한국경제학회, 2003, pp. 5~34.

김유찬, 『과소자본 과세제도의 개편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6.
김유찬, 『기업합병 관련 과세제도의 개편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7.
김유찬, 『우리나라의 기업인수 제도 및 기업인수 관련 과세제도에 대한 평가와 개편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8.
김준영, 「자본비용과 투자의 Q모형」, 『재정논집』 제10집, 한국재정학회, 1996, pp. 191~221.
김진수, 『기업분할과 조세정책 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8.
김진수・김재진, 『파트너쉽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0.
김진수・황국재, 『합병관련 기업회계와 과세제도의 개편방향』, 한국조세연구원, 2001.
김진수・박형수・안종석, 『주요국의 법인세제 변화추이와 우리나라 법인세제의 개편방향』, 한국조세연구원, 2003.
나성린・안종범・원윤희, 「중소기업과련 법인세의 유효세율 분석」, 『공공경제』 제9권 제1호,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4, pp. 3~36.
남상우, 「이중금융구조하의 기업재무구조」, 『한국개발연구』, 1984 가을호, 한국개발연구원, pp. 55~68.
박기백・정재호, 『조세감면의 합리화와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3.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세제발전연구보고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연구분과위원회, 1985.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세제발전연구보고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소득과세제도분과위원회, 1990.
손원익, 『기업의 차입과 세제』, 한국조세연구원, 1996.
심상달・박인원, 「재정과 소득재분배」, 『재정논집』 제3집, 한국재정학회, 1989, pp. 95~118.
원윤희, 「유효한계세율의 측정을 통한 우리나라 자본소득과세 분석」,

『한국조세연구』 제11권, 한국조세학회, 1996, pp. 113~155.
원윤희・현진권, 「한국의 유효한계세율: 1960-1998년 기간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의 분석』, 제6권 제3호, 한국금융연구원, 2000.
유정호, 「무국경 시대의 국가경제 속성과 정부의 역할」, 『KDI 정책연구』 17권 4호, 1995 겨울, 한국개발연구원, pp. 3~62.
윤건영, 「자본소득과세와 자본의 배분」, 『한국조세연구』, 제4권, 한국조세학회, 1988, pp. 122~158.
윤건영, 「자본소득세 정책의 투자유인효과분석」, 『재정논집』, 제2집, 한국재정학회, 1988, pp. 261~288.
윤건영, 「증자소득공제와 재무구조 개선」, 『한국조세연구』, 제9권, 한국조세학회, 1994, pp. 92~127.
윤건영・김종웅, 「한국의 법인투자 유효한계세율」, 『공공경제』, 제2권, 한국공공경제학회, 1997.
윤건영・김종웅, 「동태적 일반균형 모형을 이용한 조세정책의 효율성 평가 : 자본소득세와 근로소득세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 제10권, 한국조세학회, 1995, pp. 37~79.
윤건영・임주영, 「조세지원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3.
이영기, 「기업금융의 외부효과와 조세정책 방향」, 곽태원・이계식(편), 『조세정책과 세제발전』, 한국개발연구원, 1986, pp. 233~274.
이인실・김성태・안종범・이상돈, 「법인세제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2002.
이준규・김진수, 「의제배당과세 과세제도의 개선방향」, 한국조세연구원, 2002.
장재식, 「법인소득과 배당소득의 이중과세조정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1983.
전영준, 「CGE 모형을 이용한 법인세의 성장 및 분배효과 분석」,

『경제분석』, 제9권 제2호, 한국은행, 2003, pp. 135～182.
주만수, 『기업의 재무구조와 법인원천소득에 대한 조세제도』, 한국경제연구원, 1994.
주만수, 「법인기업의 재무구조에 대한 조세제도의 비중립성」, 『한국조세연구』 제11권, 한국조세학회, 1996, pp. 77～110.
최 광, 『법인세 폐지를 제안한다』, 국가경영전략연구원, 2001.
최 광・하태형, 「한국기업재무구조 결정요인에 관한 이해 및 실증적 고찰」, 최 광(편), 『한국세제의 주요 정책과제와 개선방향』, 1984, pp. 187～205.
최 광・하태형, 「법인원천소득의 중복과세에 관한 이론 및 실증적 고찰」, 『한국개발연구』, 1984 여름호, 한국개발연구원, pp. 121～174.
최명근, 「법인원천소득의 과세문제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조정-」, 『조세의 공평과 효율』, 세경사, 1984.
최준욱, 『개방경제하의 조세정책: 경제개방이 자본소득세에 미치는 영향과 외국인 직접투자관련 조세정책 논의』, 한국조세연구원, 2002.
현진권, 『감가상각의 현황과 정책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4.
현진권, 『자산재평가제도의 평가와 개선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5.
현진권(편), 『조세관련 통계자료집』, 한국조세연구원, 2000.
현진권, 「법인세」, 최 광・현진권 (편), 『한국조세정책 50년, 제1권 조세정책의 평가』, 한국조세연구원, 1997, pp. 399～450.

Aaron, Henry J. and William G. Gale, (eds.) *Economic Effects of Fundamental Tax Reform*, The Brookings Institution, September 1996.
Aaron, Henry J. and Harvey Galper, *Assessing Tax Reform*, The Brookings Institution, 1985.

Abel, Andrew B., “Empirical Investment Equations: An Integrative Framework,”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12, 1980, pp. 39~91.

Allen F., A. Bernardo and I. Welch, “A Theory of Dividends Based on Tax Clienteles,” *Journal of Finance* 55, 2000, pp. 2499~2536.

Altshuler, R. and Alan J. Auerbach, “The Significance of Tax Law Asymmetries: An Empirical Investigation,”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5, 1990, pp. 61~86.

Atkinson, A. B., “The Distribution of the Tax Burden,” in J.M. Quigley and E. Smolensky(eds.) *Modern Public Finance*, 1994, pp. 13~49.

Atkinson, A. B. and A. Sandmo, “Welfare Implication of the Taxation of Savings,” *Economic Journal* 90, 1980, pp. 529~549.

Atkinson, A. B. and J. E. Stiglitz, *Lectures on Public Economics*, McGraw-Hill, 1980.

Auerbach, Alan J., “Share Valuation and Corporate Equity Policy,”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1, 1979a, pp. 291~305.

Auerbach, Alan J., “Wealth Maximization and the Cost of Capital,”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93, 1979b, pp. 443~446.

Auerbach, Alan J., “Tax Integration and the New View of the Corporate Tax: A 1980s Perspective,” *Proceedings of the National Tax Association*, 1981, pp. 21~27.

Auerbach, Alan J., “Taxation, Corporate Finance and the Cost of Capital,”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XXI, September 1983a.

Auerbach, Alan J., “Stockholder Tax Rates and Firm Attribute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21, 1983b pp. 107~127.

Auerbach, Alan J., “Taxes, Firm Financial Policy and the Cost of Capital: An Empirical Analysi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23, 1984 pp. 27~57.

Auerbach, Alan J., “The Theory of Excess Burden and Optimal Taxation,” in Auerbach, Alan J. and Martin S. Feldstein(eds.), *Handbook of Public Economics* Vol. 1(Amsterdam: North-Holland), 1985, pp. 61~127.

Auerbach, Alan J., “The Deadweight Loss from “Non-Neutral” Taxation,” *Journal of Public Economics* 40, October 1989, pp. 1~36.

Auerbach, Alan J. and K. A. Hassett, “Recent U.S. Investment Behavior and the Tax Reform Act of 1986: A Disaggregate View,” *Carnegie-Rochester Conference Series on Public Policy* 35, 1991, pp. 185~215.

Auerbach, Alan J. and J. R. Hines Jr., “Taxation and Economic Efficiency,” in Auerbach, Alan J. and Martin S. Feldstein(eds.), *Handbook of Public Economics* Vol. 3(Amsterdam: North-Holland), 2002, pp. 1347~1421.

Auerbach, Alan J. and J. M. Poterba, “Tax-loss Carryfowards and Corporate Tax Incentives,” in Martin Feldstein(ed.), *The Effects of Taxation on Capital Accumula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 pp. 157~183.

Ballard, Charles L., “The Marginal Efficiency Cost of

Redistribu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78, December 1988, pp. 1019~1033.

Ballard, Charles L., John B. Shoven and John Whalley, "General Equilbrium Computations of the Marginal Welfare Costs of Taxes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Economic Review* 75, March 1985a, pp. 128~138.

Ballard, Charles L., John B. Shoven and John Whalley, "The Total Welfare Cost of the United States Tax System: A General Equilibrium Approach," *National Tax Journal* 38, June 1985b, pp. 125~140.

Boadway, Robin and Neil Bruce, "A General Proposition on the Design of a Neutral Business Tax," *Journal of Public Economics* 24, 1984, pp. 231~239.

Bond, S., and C. Meghir, "Dynamic Invest Models and Firm's Financial Policy," *Review of Economic Studies* 61, 1994, pp. 197~222.

Bond, Stephen R., and Michael P. Devereux, "On the Design of a Neutral Business Tax under Uncertainty," *Journal of Public Economics* 58, 1995, pp. 57~71.

Bordignon, Massimo, Silvia Giannini, and Paolo Panteghini, "Reforming Business Taxation: Lessons from Italy?," *International Tax and Public Finance*, 8, 2001, pp. 191~210.

Boskin, Michael, "Taxation, Saving and the Rate of Interes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6(2), Part 2, April 1978, pp. S3~27.

Boulding, Kenneth, "The Incidence of a Profit Tax,"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34, No.3, September, 1944.

Bradford, David F., “Factor Prices May Be Constant, But Factor Returns Are Not,” *Economic Letters* 1, 1978 pp. 199~203.

Bradford, David F., “The Incidence and the Allocation Effects of a Tax on Corporate Distribution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5, 1981 pp. 1~22.

Bradford, David F., and the US Treasury Tax Policy Staff, *Blue Prints for Basic Tax Reform*, U.S. Treasury, 1984.

Break, George F., “The Incidence and Economic Effects of Taxation,” in A. Blinder et.al.(eds.) *The Economics of Public Finance*, Washington D.C. : The Brookings Institute, 1974, pp. 119~240.

Brown, E. Cary, “Business Income Taxation and Investment Taxation,” in Income, Employment and Public Policy: *Essays in Honor of Alvin H. Hansen*, W. W. Norton, 1948.

Brown, E. Cary, “The Corporation Income Tax in the Short Run,” *National Tax Journal*, Vol.2 No.3, September 1954.

Browning, Edgar K. and William R. Johnson, *The Distribution of the Tax Burden*,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1979.

Bruno, Sergio, “Corporation Income Tax, Oligopolistic Markets and Immediate Shifting: A Suggested Theoretical Approach,” *Public Finance* 25, 1970, pp. 363~378.

Caballero, R. J., “Aggregate Investment,” Taylor, John B. and Michael Woodford (eds.), *Handbook of Macroeconomics*, North Holland, 1999.

Carter Commission, *Report of the Royal Commission on Taxation*, Ottawa: Queen's Printer, 1966.

Chirinko, R. S. and R. Eisner, "Tax Policy in Major Macroeconomic Model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20, 1983 pp. 139~166.

Clark, J. M., "Business Acceleration and the Law of Demand,"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25, 1917, pp. 217~235.

Cnossen, Sijbren, "Must the Corporation Tax be Harmonised?" in Anthonie Knoester (ed.), *Tax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3, pp. 165~201.

Cnossen, Sijbren, "Reform and Coordination of Company Taxes in the European Union," in Sorensen, Peter B. (ed.), *Public Finance in a Changing World*, 1998, pp. 221~254.

Cnossen, Sijbren, "Taxing Capital Income in the Nordic Countries: A Model for the European Union?" in Cnossen, Sijbren(ed.), *Taxing Capital Income in European Union: Issues and Options for Reform*,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pp. 180~213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Report of the Committe of Independent Experts on Company Taxation*, Luxembourg, 1992.

Cragg, John G., Arnold C. Harberger and Peter Mieszkowski, "Empirical Evidence on the Incidence of the Corporation Income Tax,"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5, December 1967, pp. 811~821.

Cummins, J. G., K. A. Hassett and R. G. Hubbard, "A

Reconsideration of Investment Behavior Usings Tax Reforms as Natural Experiments,"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2, 1994, pp. 1~74.

DeAngelo, H. and R. W. Masulis, "Optimal Capital Structure under Corporat and Personal Taxation,"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8, 1980, pp. 3~29.

Dixit, A. K. and R. S. Pindyck, *Investment under Uncertaint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Eisner, R., "Tax Policy and Investment Behavior: Com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59, 1969, pp. 379~388.

Eisner, R., "Tax Policy and Investment Behavior: Further Com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60, 1970, pp. 746~752.

Eisner, R. and M. I. Nadiri, "Investment Behavior and Neoclassical Theory,"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50, 1968, pp. 396~382.

Eisner, R. and R. H. Strotz, "Determinants of Business Investment," in *Impacts of Monetary Policy*, studies prepared for the Commission on Money and Credit, Prentice-Hall, 1963.

Fazzari, S. M., R. G. Hubbard and B. C. Petersen, "Financing Constraints and Corporate Investment,"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1, 1988, pp. 141~195.

Feldstein, Martin, "Tax Incidence in a Growing Economy with Variable Factor Supply,"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88, 1974b, pp. 551~573.

Feldstein, Martin, "Tax Incidence in a Growing Economy with Variable Savings Rates," *Review of Economics Studies* 41, 1974a, pp. 505~513.

Feldstein, Martin and Charles Horioka, "Domestic Saving and International Capital Flows," *Economic Journal*, Vol 90, 1980, pp. 314~329.

Feldstein, Martin and Daniel Frisch, "Corporate Tax Integration: The Estimated Effects on Capital Accumulation and Tax Distribution of Two Integration Proposals," *National Tax Journal*, 30(1), March 1977, pp. 37~52.

Feldstein, Martin, Jerry Green and Eytan Sheshinski, "Corporate Financial Policy and Taxation in a Growing Economy,"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93, August 1979, pp. 411~432.

Fisher, I., *The Theory of Interest*, Macmillan, 1930.

Gersovitz, Mark, "The Effects of Domestic Taxes on Foreign Private Investment," in D. Newbery and N. Stern (eds.), *The Theory of Taxation for Developing Countries*,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pp. 615~636.

Gilchrist, S. and C. P. Himmelberg, "Evidence on the Role of Cash Flow in Reduced-Form Investment Equations,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36, 1995, pp. 541~572.

Gilchrist, S. and C. P. Himmelberg, "Investment Fundamentals and Finance," in Bernake, Ben and Julio J. Rotemberg (eds.), *NBER Macroeconomic Annual*, MIT Press, 1998, pp. 223~262.

Goolsbee, Austan, "Taxes, Organizational Form, and the Deadweight Loss of the Corporate Income Tax," NBER Working Paper 6173, September 1997.

Goolsbee, Austan, "Measurement Error and the Cost of Capital," *National Tax Journal* 53, 2000, pp. 215~228.

Goolsbee, Austan, "Taxes and the Quality of Capital,"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8(3-4), 2004, pp. 519~543.

Gordon, Robert J., "The Incidence of the Corporation Income Tax in Manufacturing, 1925-62," *American Economic Review* 57, September 1967, pp. 731~758.

Gordon, Robert J., "Taxation of Corporate Capital Income: Tax Revenues versus Tax Distortion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0, 1985, pp. 1~27.

Gordon, Roger H. and Jeffrey K. MacKie-Mason, "How Much Do Taxes Discourage Incorporation?," *Journal of Finance* 52, 1997, pp. 477~505.

Gordon, Roger H. and Jeffrey K. MacKie-Mason, "Tax Distortions to the Choice of Organizational Form," *Journal of Public Economics* 55, 1994, pp. 279~306.

Gordon, Roger H. and Jeffrey K. MacKie-Mason, "Why Is There Corporate Taxation In a Small Open Economy? The Role of Transfer Pricing and Income Shifting," in Feldstein, M., J. Hines, and R. Hubbard(eds.), *The Effects of Taxation on Multinational Corporation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5.

Gould, J. P., "Adjustment Cost in the Theory of Investment of the Firm," *Review of Economic Studies* 35, 1968, pp. 47~55.

Graham, J. R., "Debt and Marginal Tax Rate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41, 1996, pp. 41~73.

Hall, Robert E. and Alvin Rabushka, "The Route to a Progressive Flat Tax," *The Cato Journal*, Vol. 5, No.2, Fall 1985, pp. 465~476.

Hall, Robert E. and Dale W. Jorgenson, "Tax Policy and Investment Behavior," *American Economic Review* 57,

1967, pp. 391~414.

Harberger, Arnold C., "The Incidence of the Corporate Income Tax,"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0, June 1962, pp. 215~240.

Harberger, Arnold C., "Taxation, Resource Allocation, and Welfare," in *The Role of Direct and Indirect Taxes in the Federal Reserve System*,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4a, (Reprinted in Harberger, Taxation and Welfare, Little, Brown and Company, 1974).

Harberger, Arnold C., "The Measurement of Waste," *American Economic Review*, May 1964b, pp. 58~76.

Harberger, Arnold C., "Efficiency Effects of Taxes on Income from Capital," in M. Krzyzaniak(ed.), *Effects of Corporation Income Tax*, Detroit: Wayne State University Press, 1966.

Harberger, Arnold C., "The ABCs of Corporate Tax Incidence: Insight into the Open Economy Case," in *Tax Policy and Economic Growth*, Center for Policy Research, American Council for Capital Formation, 1995.

Hassett, A. Kevin and Glenn R. Hubbard, "Tax Policy and Business Investment," Auerbach, Alan A. and Martin Feldstein(eds.), *Handbook of Public Economics*, vol 3, 2002, pp. 1293~1343.

Hayashi, Fumio, "Tobin's Marginal q and Average q: A Neoclassical Interpretation," *Econometrica* 50, 1982, pp. 213~224.

Howrey E. Philip and Saul H. Hymans, "The Measurement and Determination of Loanable-Funds Saving,"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3, 1978, pp. 655~685.

Hulten, Charles R. and Frank C. Wykoff, "The Measurement of Economic Depreciation," in Charles R. Hulten(ed.), *Depreciation, Inflation, and the Taxation of Income from Capital*, The Urban Institute Press, 1981, pp. 81~125.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Equity for Companies: A Corporation Tax for the 1990s, A Report of the IFS Capital taxes Group," IFS Commentary 26, 1991.

Jensen, M., "Agency Cost of Free Cash Flow, Corporate Finance, and Takeovers," *American Economic Review* 76, pp. 323~329.

Jorgenson, Dale W., "Capital Theory and Investment Behaviour," *American Economic Review* 53(2), 1963, pp. 247~259.

Jorgenson, Dale W., "Introduction and Summary," in Jorgenson, Dale W. and Ralph Landau (eds.), Tax *Reform and the Cost of Capital*, Washington, D. C. : The Brookings Institution, 1993. pp. 1~56.

Jorgenson, Dale W and Martin A. Sullivan, "Inflation and Corporate Capital Recovery," in Charles R. Hulten(ed.), *Depreciation, Inflation, and the Taxation of Income from Capital*, The Urban Institute Press, 1981, pp. 171~238.

Jorgenson, Dale W. and Kun-Young Yun, *Tax Reform and the Cost of Capital*,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Jorgenson, Dale W. and Kun-Young Yun, "The Excess Burden of Taxation in the US," in Anthonie Knoester (ed.), *Tax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3, pp. 117~136.

Jorgensnon, Dale W. and Ralph Landau (eds.), *Tax Reform and the Cost of Capital*, Washington, D. C. : The

Brookings Institution, 1993.

Judd, K. L. and B. C. Petersen, "Dynamic Implicit Pricing and Internal Finance," *Journal of Economic Theory* 39, pp. 268~299.

Kaldor, Nicholas, *An Expenditure Tax*, London: Allen & Unwin, 1955.

Kanniainen, V, and J. Södersten, "Cost of Monitoring and Corporate taxation," *Journal of Public Economics* 55, 1994 pp. 307~321.

Kay, J.A. and Mervyn A. King, *The British Tax System*, Oxford University Press, 1978.(3rd edition, 1983)

King, Mervyn A., "Taxation and the Cost of Capital," *Review of Economic Studies* XLI, Jan 1974, pp. 21~35.

King, Mervyn A., "Taxation, Corporate Financial Policy, and the Cost of Capital, a Comment" *Journal of Public Economics* 4, 1975 pp. 271~279.

King, Mervyn, "The Cash Flow Corporate Income Tax," in Martin Feldstein(ed.), *The Effect of Taxation on Capital Accumulati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 pp. 377~400.

King, Mervyn A. and Don Fullerton(eds.), *The Taxation of Income from Capital: A Comparative Study of the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Sweden and West German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4.

Kotlikoff, Laurence J., "Taxation of Savings - A Neoclassical Perspective,"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22(4), December 1984, pp. 1576~1629.

Kotlikoff, Laurence J. and Lawrence H. Summers, "Tax Incidence," in Auerbach, Alan and Martin Feldstein

(eds.), *Handbook of Public Economics*, Volume II, 1987, pp. 1043~1092.

Krzyzaniak, Marion and Richard A. Musgrave, *The Shifting of the Corporation Income Tax*, Baltimore: Johns Hopkins Press, 1963.

Kwack, T., "Cost of Capital, Credit Rationing and Corporate Investment," in Choi K, K. Ito, T. Kwack, E. Tajika and Y. Yui, *Public Policy, Corporate Finance and Investment*, Institute of Developing Economies, 1985, pp. 111~132.

Kwack, T., "Role of Fiscal Incentives in Export-Led Economic Growth: The Korean Experience," in V. Tanzi(ed.), *Fiscal Policy in Open Developing Economies*, Washington, D.C.: IMF, 1990, pp. 218~229.

Kwack, T and K. Choi, "Tax Policy and Resource Allocation in Korea," in Jene Kwon (ed.), *Korean Economic Development*, Greenwood Publishing Group, 1990, pp. 247~262.

Kwack, T. and I. You, "Tax Incentives and Economic Development," in G. Perry, J. Whalley and McMahon (eds.), *Fiscal Reform and Structural Change in Developing Countries*, Vol 2, Macmillan Press Ltd., 2000, pp. 287~309.

Lucas Jr., R. E., "Adjustment Cost and the Theory of Suppl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5, 1967, pp. 321~334.

McLure, Charles E. Jr., "General Equilibrium Incidence Analysis: The Harberger Model After Ten Year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4, 1975, pp. 125~161.

McLure, Charles E. Jr., "Tax Incidence, Macroeconomic Policy and Absolute Price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82, May, 1969, pp. 254~267.

McLure, Charles E. Jr., "The Theory of Tax Incidence with Imperfect Factor Mobility," *Finanzarchiv* 30, 1971, pp. 27~48.

McLure, Charles E. Jr., *Must Corporate Income Be Taxed Twice*?,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1979.

Meade Committee, *The Structure and Reform of Direct Taxation*, Allen and Unwin, 1978.

Mieszkowski, Peter M., "On the Theory of Tax Incidenc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5, June 1967, pp. 250~262.

Mieszkowski, Peter M., "Tax Incidence Theory: The Effects of the Taxes on the Distribution of Income,"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7, December 1969, pp. 1103~1124.

Miller, Merton, "Debt and Taxes," *Journal of Finance* 32, 1977, pp. 261~275.

Mitchel, Daniel, "Making Sense of Competing Tax Reform Plans," Backgrounder Update No. 268, The Heritage Foundation, September, 1996.

Mitchel, Daniel, "Which Tax Reform Plan is Best for America," Backgrounder No. 1055, The Heritage Foundation, September, 1995.

Modigliani, Franco and Merton Miller, "The Cost of Capital, Corporate Finance, and the Theory of Invest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48, June 1958, pp. 261~297.

Musgrave, Richard A., and Peggy B. Musgrave, *Public Finance in Theory and Practice*(2nd edition), McGraw

Hill, 1976.

Musgrave, Richard A., *The Theory of Public Finance*, McGraw Hill, Inc. 1959.

Mutti, John and Harry Grubert, "The Taxation of Capital Income in an Open Economy: The Importance of Resident-Nonresident tax Treatment," *Journal of Public Economics* 27, 1985, pp. 291~309.

Myers, S.C., "Determinants of Corporate Borrowing,"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5, pp. 147~175.

National Commission on Economic Growth and Tax Reform, *Unleashing America's Potential: A pro-growth, pro-family tax system for the 21st century*, 1996

OECD, *Revenue Statistics 1965-2001*, Paris, 2002.

OECD, *Taxing Profits in a Global Economy: Domestic and International Issues*, Paris, 1991.

Office of Tax Policy(US Department of Treasury), *Integration of the Individual and Corporate Tax Systems: Taxing Business Income Once*,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January 1992.

Pechman, Joseph A. and Benjamin A. Okner, *Who Bears the Tax Burden*?, The Brookings Institution, 1974.

Pechman, Jpseph A., *Federal Tax Policy*, The Brookings Institution, 1977.

Pechman, Joseph A., *Who Pay the Taxes, 1966-85*?, The Brookings Institution, 1985.

Poterba, J. M. and Laurence H. Summers, "The Economic Effects of Dividend Taxation," in E. Altman and M. Subrahmanyam(eds.), *Recent Advances in Corporate Finance*, Richard D. Irwin, 1985, pp. 227~284.

Rose, Manfred, and Rolf Wiswesser "Tax Reform in Transition Economies: Experiences from the Croatian Tax Reform Process of the 1990s," in Sorensen, Peter B. (ed.), *Public Finance in a Changing World*, 1998, pp. 257~278.

Salinger, M. A. and L. H. Summers, "Tax Reform and Corporate Investment: A Microeconomic Simulation Study," in M. Feldstein(ed.), *Behavioral Simulation Methods in Tax Policy Analysi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3, pp. 247~287

Seligman, Edwin R.A., *Essays in Taxation*(10th ed), (New York: Macmillan Company, 1931), Fisrt Edition published in 1895. Reprinted 1969 by Augustus M. Kelly Publishers, New York.

Shoup, Carl, "Incidence of the Corporation Income Tax: Capital Structure and Turnover Rates," *National Tax Journal*, Vol.1 No.1, March 1948.

Shoven, John B.,"The Incidence and Efficiency Effects of Taxes on Income From Capital,"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4, December 1976, pp. 1261~1284.

Shoven, John B. and J. Whalley, "A General Equilibrium Calculation of the Effects of Differential Taxation of Income from Capital in the U.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 1972, pp. 281~321.

Sinn, H.-W., *Capital Income Taxation and Resource Allocation*, Amsterdam: North-Holland, 1987.

Sinn, H.-W., "Taxation and the Cost of Capital: the 'Old' View, 'New' View and Another View," in D. Bradford (ed.) *Tax Policy and the Economy*, Vol. 5, MIT

Press, 1991, pp. 25~54.

Sorensen, Peter B., "From the Global Income Tax to the Dual Income Tax: Recent tax Reforms in the Nordic Countries," *International Tax and Public Finance* 1, 1994, pp. 57~79.

Sorensen, Peter B., "Changing Views of the Corporate Income Tax," *National Tax Journal, June* 1995, 48(2), pp. 279~294.

Sorensen, Peter B., "Recent Innovations in Nordic Tax Policy: From Global Income tax to the Dual Income Tax," in Sorensen, Peter B.(ed.), *Tax Policy in the Nordic Countries*, 1998, pp. 1~27.

Sorensen, Peter B., "Neutral Taxes of Shareholder Income: A Norwegian Tax Reform Proposal," CESIFO Working Paper No. 1036, 2003.

Summers, Lawrence H., "Tax Policy an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 Jacob A. Frenkel (ed.) *International Aspects of Fiscal Policies*, Chicago and London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8, pp. 349~380.

Summers, Lawrence H., "Tax Policy and Corporate Investment: A q-theory Approach,"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1, 1981, pp. 67~127.

Stiglitz, Joseph E., "Taxation, Corporate Financial Policy, and the Cost of Capital," *Journal of Public Economics* 2, 1973 pp. 1~34.

Stiglitz, Joseph E. and A. Weiss, "Credit Rationing in Markets with Imperfect Inform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71, pp. 393~410.

Tanzi, Vito, "Forces That Shape Tax Policy," in Herbert

Stein (ed.), *Tax Policy in the Twenty-First Century*, New York: John Wiley & Sons, 1988, pp. 266~277.

Tobin, James, "A General Equilibrium Approach to Monetary Theory," *Journal of Money*, Credit and Banking 1, 1969, pp. 15~29.

Treadway, A., "Adjustment Cost and Variable Imports in the Theory of the Competitive Firm," *Journal of Economic Theory* 2, 1970, pp. 329~347.

US Department of Treasury, *Blue Prints for Basic Tax Reform*,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7.

Uzawa, H., "Time Preference and the Penrose Effect in a Two-Class Model of Economic Growt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7, 1969, pp. 628~652.

Webber, Carolyn and Aaron Wildavsky, *A History of Taxation and Expenditure in the Western World*,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86.

Zodrow, George R., and Peter Mieszkowski, "Introduction: The Fundamental Question in Fundamental Tax Reform," in Zodrow and Mieszkowski(eds.), *United States Tax Reform in the 21st Century*, Cmabridge University Press, 2002, pp. 1~24.

<국문요약>

법인소득과세의 이론과 현실
- 국내외의 연구성과 개관 -

곽 태 원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에서 지난 반세기 동안 이루어진 법인소득과세와 관련된 이론적 및 실증적 연구성과들을 고찰하고 정리하여 향후 우리나라 법인세 관련 연구와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먼저 법인세의 의의와 성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법인세 제도와 그 역할을 개관하였다. 자본소득세로서의 법인세의 의의를 정리하고 우리나라에서의 법인세의 도입과 주요 제도의 변화 그리고 법인세제도가 담당해 왔던 경제적·재정적 역할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우리나라 재정에서 법인세가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살펴보고 주요 선진국의 경우와 비교하였다.

이어서 법인세의 기초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초과부담과 귀착에 관한 연구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먼저 이론적 연구들을 고찰하고 실증적인 연구결과들을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자본비용과 유효한계세율에 관한 연구성과들을 고찰하고 정리하였다. 법인소득세를 중심으로 하는 자본소득과세에 관한 연구 중 가장 활발했던 분야가 유효한계세율과 이러한 조세들로 말미암은 자본비용효과에 관한 연구였다. 당연히 매우 풍부한 이론적 및 실증적 연구 문헌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자본비용과 유효한계세율의 문제는 법인소득과세가 경

제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도 함께 다루어졌다. 특히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가 기업의 투자와 자본조달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연구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법인세의 근본적 개편과 관련된 논의를 검토하였다. 특히 법인세 개편의 장기적 과제라고 할 수 있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통합 등 구조적 개편과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자본소득세의 근본적 개편안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논의들이 주는 우리나라 법인세 개편에 대한 시사점들을 찾아보았다.

<Abstract>

Theory and Practice of Corporation Income Tax : A Survey

Taewon Kwack

This monograph was motivated to provide a comprehensive but relatively compact survey of academic and policy researches in the area of corporate income taxation to be used mainly by young scholars interested in the economics of taxation, scholars who have not majored in the area but have to survey the topic rapidly and tax policy developers.

In the first part, we summarized the economic characteristics of the corporation income tax. We also described the major changes of the tax in Korea for the last half century and its major fiscal and economic roles. Corporation tax incentives were heavily utilized in Korea as industrial and macroeconomic policy tools in the 1960s and 1970s and in recent years its revenue generating role is much emphasized. In the following chapter, theoretical and empirical studies on the incidence and excess burden of the corporation taxation were surveyed for the last

half century. Next part is composed of the surveys of studies on the cost of capital and effective tax rates. We have a great number of important literature on this topic. The cost of capital or effective tax rates are tools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corporation income tax policies on economic behavior of firms. Our survey was focused on firms' investment behavior and financial behavior. Quite a few empirical researches in Korea were also reviewed in this part.

Finally, researches, experiences and debates on corporation tax reform were reviewed. The traditional integration issue and policy experiences in several countries were reviewed. Then we described and evaluated more recent reform proposals including Cash-Flow Corporation Tax, CBIT, DIT and ACE. We concluded our work by discussing the future of the corporation income tax in the world as well as in Korea.

<저자약력>

곽태원

서강대 경제학과 경제학 학사
Harvard 대학교 경제학 박사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
서울시립대학 세무학과
조세학회 및 공공경제학회 회장
현,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법인소득 과세의 이론과 현실
-국내외의 연구성과 개관-

2005년 8월 26일 인쇄
2005년 8월 31일 발행

저 자 곽태원
발행인 최용선
발행처 한국조세연구원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번지
전화 : 2186-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日 제21-466호
조판및 인 쇄 일 지 사

ⓒ 한국조세연구원 2005

ISBN 89-8191-295-5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값 6,000원